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545-01

2014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2014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 10.

연 구 기 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책 임 자 :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교수)
공 동 연 구 원 : **유성상**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수)
박병진 (한양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김영중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연 구 보 조 원 : **오현수**
최고야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요약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 제2장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는 다소 미흡함. 하지만 대학의 환경은 교수, 학생 간의 관계 속에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음. 게다가 대학은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측면과 사회로 나가는 관문의 측면이 있음. 따라서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높음.

○ 유엔에서는 제2차 세계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교육체계내에서의 인권교육을 강조한 바 있음.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도 대학 내의 인권교육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시점임.

○ 본 조사보고서에서는 대학의 인권과목 개설현황 조사와 이에 대한 분석, 대학(원)생 인권교육 설문조사 및 인권과목 교·강사에 대한 설문조사, 해외 사례 수집을 통한 인권교육 발전방향 도출을 시도함.

제3장 2013-2014년 전국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 인권교과목이란 대학에 개설된 교과과정 중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인권과 관련된 직무교육이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강의를 의미함.

- 보편적 인권교육은 기본소양으로서의 인권교육을 의미하며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과 구분됨. 여기서 ‘보편적’이란 인권의 발달에 관한 기존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논쟁(철학적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그리고 정치현실주의)과는 무관하고,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의 의의, 인권

의 내용, 인권신장을 위한 참여의 필요성을 주요 학습내용으로 담고 있는 교과목을 의미함.

○ 본 연구에서는 과목의 제목을 통한 1차 분류와 함께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지침으로서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함. 제목을 통해 인권과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사과목들에 대해서는 이 강의 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인권 교과목 여부를 확인함. 완전히 인권과목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 없는 일부 과목들(예를 들어, 인권과 관련된 강의나 학습내용이 2주 내외로 포함된 강의 등)에 대해서는 인권 관련 교과목으로 분류하여 인권 교과목과 구분함. 최종적으로 '인권 교과목'은 최소한 7주이상의 기간에 걸쳐 그 교과 내용이 직접적으로 인권 지식(인권의 세부 내용과 인권의 발달과정 및 인권조직 등), 인권의식, 인권행동,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목으로 경험적 정의를 구체화함.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4. 5. 12 ~ 5. 23 (1차 조사), 5. 26 ~ 6. 3 (2차 조사)
- 조사방법 : 서면조사(전자공문)
- 조사대상 :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총 365개 대학교

* 2012년 조사 시에는 조사대상 대학이 총 432개교였지만, 본 조사에서는 이중 인권교육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67개 대학을 제외한 365개 대학을 조사대상대학으로 선정함.

○ 조사 대상 인권관련 교과목의 범위

가. 교과목에 '인권'이나 '기본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

예시) 기본권론, 현대사회와 인권 등

나. '평화', 'NGO', '시민사회'라고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

예시) 시민사회론 등

다.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와

관련된 교과목

예시) 장애인복지론 등

○ 교과목 리스트를 수집한 결과, 총 6,654개의 교과목이 수집되어 1차적으로 교과목명을 기준으로 인권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제외한 2,787개의 과목을 선정함. 이 과목에 대하여 해당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일일이 대조하고 해당과목의 수업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강대학의 동일 과목 혹은 유사과목의 수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083개의 과목을 분석대상으로 삼음.

○ 총 1,058개의 강의계획서(이중에는 104개의 매우 양호하지 않은 계획서도 포함)와 명시된 교과목명을 중심으로 ‘인권 과목’과 ‘인권 관련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강의계획서가 완비된 교과목을 일일이 대조해본 결과, “00 인권”, “인권과 00” 식의 교과목명을 가진 과목은 거의 대부분 ‘인권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제시한 모든 과목은 우선 크게 ① 일반인권/사회 관련 ② 법/범죄 관련 ③ 여성 관련 ④ 다문화/소수자 관련 ⑤ 평화/전쟁/정치 관련 ⑥ 사회복지 관련 과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이 중에서 인권 관련 내용이 2주 이상 포함된 과목을 ‘인권 관련 교과목’으로 선정함. ‘인권 교과목’은 ‘인권관련 교과목’ 중 교과목 이름이 ‘00 인권’ 과 같은 것으로 전체가 인권 내용을 주제로 하는 교과목을 포함하고, 인권 관련 내용이 절반(7주) 이상인 교과목을 선정함.

○ 280개의 ‘여성학’관련 과목에서 160개 과목은 강의계획서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강의 내용들이 매우 유사하였음.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강의 내용들은 주로 성에 따른 차별/차이, 성문화, 성희롱, 성폭력, 노동불평등, 결혼 및 기타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인권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었음. 반면에, ‘사회복지’ 관련 과목에서는 대부분의 강의들이 소수자와 관련된 일반 복지 이론 및 방법론, 영양 산

업 관련 등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음. 해당과목들은 ‘인권 과목’ 또는 ‘인권 관련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본 부류에서 제외함.

○ 조사대상 총 365개 대학 중 307개 대학이 회신함. 회수율은 84%임. 각 대학의 인권 혹은 인권관련과목에 대한 명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 회수율이 응답대학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답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정확한 지표는 아니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음.

○ 2013-2014년 전국 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을 통헤볼 때, 응답대학 중 이 교과목을 최소 하나 이상 개설한 비율은 57%이며, 개설 학교당 평균 6.22개의 교과목이 개설됨.

- 국공립대학(교)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비율은 국공립대학(교) 중 방송통신대학 100%, 종합대학 87%, 교육대학 70%, 특수대학 60%, 전문대학 44% 순으로,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의 개설비율이 낮았음.

- 사립대학(교)의 경우 개설비율은 사이버대학 72%, 종합대학 70%, 전문대학 29% 순으로 전문대학의 개설비율이 낮았음.

○ 개설과목을 6개의 대분류와 59개의 소분류로 세분화함. ‘인권 관련 교과목’을 학문영역별로 살펴보면 여성 관련 226과목, 법·범죄 관련 218과목, 사회복지 관련 217 과목, 인권일반·사회 관련 174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139과목, 평화·전쟁·정치 관련 109과목 순으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개설되어 있는 ‘인권 관련 교과목’을 대학/대학원별로 살펴보면 대학(학부과정) 835과목, 대학원(석·박사 과정) 248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대학은 ‘인권 관련 교과목’ 중 여성 관련 과목(24%), 대학원은 법·범죄 관련 과목(32%)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 전공별로 개설되어 있는 ‘인권 관련 교과목’ 은 사회계열 449과목, 법학계열 234과목, 교양 교과 231과목, 교육/사범계열 75과목, 기타 계열 34과목, 의약/간호계열 26과목, 인문계열 20과목, 예체능계열 7과목, 신학계열 4과목, 경영계열 3과목 등 사회계열(41%)에서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비중이 가장 높았음.

○ 과목 성격별로 분류해 본 바에 의하면, 전공선택 53%, 전공필수 8%, 교양선택 36%, 교양필수 2%, 기타 및 무응답 1%로 선택교과가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됨.

○ 인권 관련 교과목의 교·강사는 학교 내부 65%, 학교 외부 33%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인권 관련 교과목의 교과목별 학생 수는 10명 미만 11.7%, 10명 이상 30명 미만 27.5%, 30명 이상 50명 미만 25.9%, 50명 이상 100명 미만 23.8%, 100명 이상 9.3%였음.

○ 2013-2014년 전국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비율은 응답대학의 31%이며, 개설 학교당 평균 6.60개의 교과목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이를 전체 응답대학교로 환산하면, 평균 2.08개에 불과함.

- 사립대학의 경우는 1.70과목이며 국공립대학은 이보다 조금 많은 3.83과목으로 나타남. 국공립대학(교)의 ‘인권 교과목’ 개설비율은 44%이며, 개설 대학별로 평균 8.63개 교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됨. 단 한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대학이 전체의 56%였음. 사립대학(교)의 ‘인권 교과목’ 개설비율은 29%이며, 개설 대학별로 평균 5.93개의 교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됨. 사립대학의 인권과목 미개설 비율은 무려 71%에 달함.

○ 국공립대학(교)의 개설비율을 대학유형별로 세분화해보면 ‘인권 교과목’ 개설비율은 방송통신대학 100%, 교육대학 60%, 종합대학 45%, 전

문대학 22%, 특수대학 20% 순이며, 상대적으로 전문대학과 특수대학의 개설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개설되어 있는 ‘인권 교과목’을 59개 세부 학문영역별로 나누어 보면, 법·범죄 관련 160과목, 사회복지 관련 116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109과목, 인권일반·사회 관련 105과목, 평화·전쟁·정치 관련 82과목, 여성 관련 62과목 순으로 ‘인권 교과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됨.

○ 개설되어 있는 ‘인권 교과목’은 대학(학부과정) 471과목, 대학원(석·박사 과정) 163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대학은 사회복지 관련 및 법·범죄 관련 과목의 개설 비율(21%)이 높고, 대학원은 법·범죄 관련 과목(38%)의 개설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전공별로 개설되어 있는 ‘인권 교과목’은 사회계열 211과목, 법학계열 186과목, 교양 교과 119과목, 교육/사범계열 56과목, 기타 계열 24과목, 의약/간호계열 18과목, 인문계열 14과목, 신학계열 3과목, 예체능계열 2과목, 경영계열 1과목 등 사회계열(33%)과 법학계열(29%)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 비중이 가장 높았음.

○ 인권교과목을 성격별로 분류해 본 바에 의하면, 전공선택 51%, 전공필수 8%, 교양선택 37%, 교양필수 2%, 교직이수 0%, 기타 및 무응답 2%로 선택교과가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됨.

○ 인권 교과목의 교·강사는 학교 내부 71%, 학교 외부 27%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음. ‘인권 교과목’의 교과목별 학생 수는 10명 미만 14%, 10명 이상 30명 미만 28%, 30명 이상 50명 미만 21%, 50명 이상 100명 미만 25%, 100명 이상 9% 으로 조사됨.

○ 대학교 조사자는 대체적으로 재정지원의 부족, 전문인력, 강사의 부족, 인권관련 강의 교재의 부재, 인권 관련 강좌에 대한 정보 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국내 및 외국의 인권사례집이나, 다양한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고 함.

○ 각 대학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으로 판단했지만 분석에서 제외된 교과목들은 크게 ①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련 ② 법 및 정책 관련 ③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 관련 ④ 사회복지 관련 ⑤ 상담 및 심리 관련 ⑥ 연구방법, 교수법 및 실습 관련 ⑦ 전공 일반 관련 ⑧ 정치, 시민사회 및 국제관계 관련 ⑨ 젠더 및 가족 관련 ⑩ 종교 및 선교 관련 ⑪ 철학 및 윤리 일반 관련 ⑫ 특수 및 교육 일반 관련 ⑬ 기타 과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분석에서 제외된 교과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 1,929 과목, 특수 및 교육 일반 관련 1,258과목,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 관련 754과목, 연구방법 · 교수법 및 실습 관련 361과목, 상담 및 심리 관련 278과목 등임.

○ 2013-2014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을 2011년과 단순 비교하면, 개설대학의 비율이 14%(43%→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과목 수는 558개(525개→1,083개) 증가하였고, 개설대학별 교과목 수도 2.25개(3.97개→6.22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국공립대학만을 조사한 2008년 조사와 비교할 때, 개설대학 비율은 32.1%(32.1%→75.0%), 개설대학별 교과목 수는 6.13개(2.94개→8.07개) 증가하여, 국공립대학의 경우 개설대학 수나 교과목 수가 3배 이상 확대됨.

○ 2013년 2학기 ~ 2014년 1학기 현재 개설 중인 교과목이 존치될 경우, 2014년 2학기 191개 대학교가 895개 인권 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기에 인권 교과목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제4장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

○ 대학의 인권과목 실태뿐만 아니라 인권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어진 연구기간 내에 일종의 예비조사적 성격을 띤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실시됨.

○ 조사개요

- 표본: 서울 소재 10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및 대학원생 621명에 대한 편의표집
- 조사기간: 2014년 5월 15일- 6월 11일

○ 최종 응답자 621명 중 남학생이 42.6%이고 여학생이 55.4%였으며, 대학생이 89.4% 그리고 대학원생이 6.6%였음. 연령의 분포는 19세에서 29세까지가 95%이고 30세 이상이 약 5%였음.

○ ‘세계인권선언’을 부분적으로나마 읽어 본 학생은 59.6%이나 전혀 읽어보지 않은 학생도 40여 %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 헌법의 인권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정도 되지만, 헌법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비율도 20%에 이름. 한국의 인권존중 상태는 존중(29.5)보다 존중되지 않음(33.4%)로 높게 인식되고 있음. 끝으로 해당대학의 인권존중 상태는 존중이 39.9%로 존중되지 않음(15.6%)보다 높게 나타남.

○ 대학 내에서 대체로 심각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몇 가지 점에서는 다른 사항보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수로부터는 성적과 성별에 의한 차별을 약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됨. 학생회 간부로부터의 차별(19.6%)로 상대적으로 높으며, 나이에 의한 차별이 16.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다른 요인에 비하여 의견표현의 자유(22.1%)나 의견묵살의 경험(24.3%)은 약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교육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2.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대학 전 인권교육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72%) 진행되어 다른 인권기관으로부터의 교육은 대부분 없는 편이었음.

○ 학생 개인수준에서의 인권과목의 수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과목 이하가 45.4%로 절반 정도 되었고 2-3과목이 22.9%로 나타남. 평균 2과목 정도를 수강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응답한 학생의 다수가 현재 인권과목을 수강한 학생임을 고려할 때, 수강과목의 수는 결코 많지 않은 것이라 볼 수 있음.

○ 교육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포함되는 내용 중 일부 순서를 살펴보면, 남녀평등(50.2%)> 법 앞의 평등(42.4%)> 소수자의 권리(36%)> 표현의 자유(36%)> 생명권 차별금지(33.6%)의 순서였음.

○ 학생들의 입장에서 강의에 꼭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순서는 소수자의 권리(32%)> 표현의 자유(30.8%)> 법앞의 평등, 프라이버시의 보호(각 28.2%)>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27.8%)> 사회적 약자보호와 민주주의(27.4%) 등이었음.

○ 강의에 활용된 방법은 다양하나 효과적이라고 답한 방법은 관련동영상 시청(22.2%)> 강의(21.8%)> 관련인물 초청(17.2%)> 팀프로젝트 발표(13.7%) > 현장학습(12.3%) > 세미나식(7.4%)이었음.

○ 강의를 통한 효과는 인권내용의 숙지와 인권의식의 향상 그리고 인권존중의식 등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강의를 들은 후에 인권관련 행동에의 참여 역시 약간이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 참여보다는 관여의 깊이가 낮은 행동부터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났음.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46.6%이고 불만족도는 3.9%였음.

○ 인권관련 강의의 수강신청의 용이함에 대해서는 53.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9%였음. 인권강의를 더 수강할 계획에 대해서는 44.8%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1%였음.

○ 강의 방식에 대해서는 교양강좌로 강의의 수를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함. 인권관련 전공강의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이 43.4%, 반대가 15.4%임. 정규교과 이외의 인권강좌의 확대에도 55.8%의 찬성을 보여 인권강좌의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제5장 교·강사 대상 설문조사

○ 현재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는 인권교육을 하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기존에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했던 교수 및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됨. 교수나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교육의 수요자로서 학생에 대한 조사와는 달리 공급자로서 교수 혹은 강사가 인권교육에서 느끼는 점 혹은 인권교육을 한 경우 그 실태에 대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조사와는 다소 다른 의미가 있음.

○ 조사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인권과 관련한 강의를 한 번이라도 개설하고 강의한 교수나 강사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관련 강의로 법, 복지, 청소년, 노인, 인권일반 등으로 구분함.

○ 설문조사는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들의 개설 과목, 강의방식, 평가방식, 강의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이메일로 질문지를 배부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교수·강사들의 연락처를 수집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기 중에 연구과제가 시작되어서 대상자 섭외에 애

로점이 있었음.

○ 조사대상은 국내 대학에서 인권과 관련한 교과목을 3년 내에 1과목 이상 강의한 교수나 강사 35명으로 함. 이메일 조사나 전화 조사를 통해 설문에 의미 있는 응답을 한 인원은 총 30명이었음. 조사대상자 중 5명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응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표시함. 이 5명 중에는 대학에서는 인권관련 강의를 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답장으로 그러한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도 있었음.

○ 국제법에 규정된 인권목록을 토대로 조사대상자에게 인권관련 강의에 포함되었던 내용들을 조사함. 국제인권법이나 인권사상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강의를 개설한 교수의 경우에는 생명권 차별금지, 자유와 개인의 안보, 고문금지, 법적구제, 법 앞의 평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공평한 재판권, 무죄추정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거주, 이전의 자유, 결혼 및 가족구성권, 가족의 보호 및 지원,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참여권리, 표현의 자유, 사회보장권, 근로 3권, 교육권, 아동보호, 난민지위, 의무교육, 민주주의, 소수자의 권리, 사형금지, 생존권, 장애인의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권 등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과목 내에 담고 있었음.

○ 교육대학에서 사회과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의 경우에는 인권관련 내용을 일부로 한정하여 강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음. 즉 위 과목 담당 교수는 자유와 개인의 안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프라이버시 보호, 결혼 및 가족구성권,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동보호, 소수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개설된 과목 내에 인권관련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었음.

○ 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한 과목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임. 이 과목에는 생명권 차별금지, 자유와 개인의 안보, 고문금지, 법적구제, 법 앞의 평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무죄추정

원칙,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참여권리, 표현의 자유, 사회보장권, 근로3권, 교육권, 의무교육, 민주주의, 소수자의 권리, 사형금지, 환경권,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문제가 포함되었으며, 특별히 원자력 발전으로부터의 안전권도 그 내용에 포함됨.

○ 조사 응답자 중 일부 몇몇 교수와 강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의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관련동영상 시청, 현장학습, 팀프로젝트와 발표, 세미나, 관련인물 초청 등을 가미한 경우, 팀프로젝트와 발표만을 가미한 경우, 관련 동영상 시청 및 팀프로젝트와 발표를 가미한 경우, 관련인물 초청만을 가미한 경우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음. 대학원의 경우에는 세미나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남.

○ 강의에서 활용된 교재로는 저서 및 논문, 정부자료, 신문 및 방송, 시민단체 자료,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등이 있었음.

○ 학생들의 강의참여에 대한 평가로 응답자 중 50%는 ‘상당히 그렇다’고 답한 반면, ‘매우 그렇다’는 25%, ‘보통이다’는 13%로 대체적으로 인권강의 담당 교·강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 응답자 중 50%(15명)가 학교나 시민단체 지원 부족 등으로 현장학습이 어렵다는 점을 인권관련 과목 강의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었음. 또한 교과목의 운영에 대한 문제로서 수강인권이 너무 많다거나 강의실이 너무 좁다는 점을 든 경우(12명)도 있었음. 기타 의견으로 교과목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도 보였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강의주제와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등을 의견으로 준 경우도 보였음.

○ 설문 응답자 중 23명(75%)은 어떠한 형태로든 인권관련 교과목의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시함. 특별히 교육대학에서의 인권과목

추가 개설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도 보임.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의견도 제시됨.

○ 대학에서 지원해야 할 점으로 설문 응답자 대부분은 인권교과목을 교양 필수로 지정하거나 혹은 과목개설을 확대하는 등 인권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학생들에게 듣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임.

○ 대학에서 교과목 개설과 함께 재정적 혹은 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 특히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이나 인권위, 교과부 등에서 외부강사 초청에 필요한 강사료 등 재정적 지원, 토론식 수업에 필요한 자재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임.

○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 들은 국가정책적으로 대학교육에서 인권교과목 개설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높음을 강조함. 그 이유로는 인권이 시민사회의 기초를 이룬다는 점을 강조한 경우, 취업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됨. 인권교육법의 제정 자체를 촉구하는 의견, 인권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임.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할 점으로 우선 응답자 중 대다수는 대학이 인권교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권고할 것이 필요하다는 점들. 특별히 공모제 등을 통한 인권에 대한 관심확대나 홍보를 강조한 경우나 인권교재 개발 등을 통한 지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음.

○ 강사의 경험이나 인권교육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됨.

○ 대학 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응답자 들은 교과목의 확대와

의무화, 비용지원, 교재 지원 등을 의견으로 제시함.

제6장 인권교육 관련 해외사례

○ 해외 사례 조사는 주로 영미쪽 국가를 대상으로 함.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평의회 등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한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대학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음.

○ 시카고대학의 인권프로그램은 현세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인간의 존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탐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 시카고 대학의 인권교과과정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학제간 관심사를 동료 교수 및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시카고 대학의 인권 프로그램 과정은 인권을 다양한 규정, 주제 및 지역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인권인턴십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국내 또는 국외의 주요 기관들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 과정은 세미나, 워크샵, 강의, 영상물을 통해 교육적으로 캠퍼스와 더 넓은 커뮤니티 간의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인권인턴십프로그램은 시카고대학의 학생들이 현실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심사, 주제, 지역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하고 모든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임. 이 프로그램은 직전 가을학기에 접수를 받아 진행되며 현재는 여름학기마다 각각 3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해외인권기구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고 함.

○ 소규모로 진행하는 인권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제, 역사, 비교적인 관점에서 인권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중

의 전공과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함. 소규모 인권과정은 졸업생들이 인권 보호를 위한 직업(예를 들면 방송, 영화제작, 법률가, 의료분야, 교사, 정책분석가, 정부 또는 정부간 기구에 종사)에 초점을 맞춘 것임.

○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적 의료는 사회적 의료의 핵심 이슈와 문제점에 대하여 학습하는 과목임. 사회력은 어떻게 병리학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무엇이 실제 현대 의학에 윤리를 고려하도록 압박하고 있는가? 정치·경제·역사적 경향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 다른 집단간 질병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의료기관의 새로운 추세가 어떻게 사회의 대다수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학습함. 이 과정은 아이티, 페루, 러시아, 멕시코 및 미국의 사회의료 실무가로 종사하는 의사 및 의료인류학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됨.

○ 시카고 대학교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라는 과목은 각 국가들과 국제 사회가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다루는데 취한 서로 다른 접근방법과 이전의 독재국가가 민주주의·법치국가를 근간으로 한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 학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인권정책 카 센터에는 대형참사대응실무 프로젝트, 인신매매와 현대 노예제도, 젠더, 물과 위생, 과거사 정리, 교육, 라틴아메리카 등 다양한 주제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법 임상실습과정은 학생들이 인권보호기관에서 인권변호사와 협업을 하거나 미국내·외의 비정부기관에서 실무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실무수습을 하는 학생들은 1) 테러와의 전쟁에서 국내안보, 2) 정보와 표현의 자유, 3) 성차에 기반한 폭력, 여성과 성적소수자의 권리, 4) 원주민의 권리, 5) 법적인 능력과 권한, 6) 교육권, 7) 효율적인 배상을 받을 권리, 8) 입법개혁에 관한 권리, 9) 생명권과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10) 중동에서의 인권, 11) 국제형사재판과 관할, 1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13) 토지법

과 주거의 자유, 14) 인권보호와 이행을 위한 이행적 정의(과거사)/책임, 15) 건강과 의료관련 권리, 16) 난민의 권리와 같은 분야에서 실습을 하고 있음.

○ 미국 인권교육자들의 모임(HRE USA)은 미국내 인권교육(HRE)의 광범위하고 열정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구축된 인간의 존엄,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음. HRE USA는 구성원이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대학, 기관 같은 공식 혹은 비공식 교육공간의 HRE로 통합하고, 2) 연방 혹은 주의 교육정책, 기준, 과정, 학제에 HRE를 포함할 것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과 지원을 하고 있음. 특히 사전·재직중 교사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서비스와 HRE의 자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HRE의 매년 세미나에서는 주로 미국내 인권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함.

○ 인권교육협회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있는 개인, 비정부기구, 정부간 기구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1) 과정 및 자료개발 보조, 2) 전문가그룹 훈련, 3) 교육훈련자료 정보제공, 4) 기타 관련 연구 및 평가, 5) 인권교육지킴이와 교육자의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제공·수행하고 있음.

제7장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향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효과가 있음. 따라서 인권교과목을 확대하고 교양 필수로 지정하는 등 대학생 전체가 인권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됨. 물론 이러한 노력은 국가정책적 측면, 국가인권위원회가 해야 하는 역할 등으로 구분될 수 있겠지만, 특히 대학차원에서는 인권관련 교과목을 단순히 확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권을 강의할 수 있는 교

수나 강사도 충원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대학의 과반수 정도는 인권관련 과목이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고,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인권은 다양한 방면에 여러 부분에 걸쳐있는 개념이지만, 인권의 다양성은 인권교과목 개설에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인권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과목개설이 필요함.

○ 일반 교양에서는 인권의 역사, 범죄와 인권, 국가와 인권 등 사회 전반 혹은 인권 전반에 걸친 사항을 주로 내용으로 삼는 과목들의 개설이 필요하고, 전공 부분에서는 예컨대 복지와 관련하여 노인과 인권, 청소년과 인권, 복지와 인권 등의 과목이나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와 인권, 인권교육방법론 등이 개설될 필요가 있음.

○ 다수가 수강하는 이론 강의와 소수가 참여하는 토론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물적인 설비를 갖추는 필요성이 있음. 특정 관련 사안에 대해 외부 강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지원한다거나, 인권관련 교재나 자료의 제작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인권관련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강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지원 등의 재정적인 지원도 학교 차원에서 요구됨.

○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 불과함. 물론 이 대학의 인권센터는 학교 자체의 재정적 지원이나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서 그 재원을 조달하고 있음. 인권센터는 단순히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기구 또는 상담기구의 수준이 아니라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서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과목개설 여부를 협의하며, 교육방법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학 본부 자체에서 인권에 대해 관심과 물적, 인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인권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현장참관이나 인권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은 단순한 강의보다 더 효과적인 면이 있음.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에 지원이 필요함.

○ 대학이 현재 추구하는 가치가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으로 인해 사회가 점차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임. 이러한 시기에 대학 평가시에 입학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위주의 평가요소만을 반영한다면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은 소원해질 것임. 따라서 대학을 평가하는 요소로 정책 차원에서 인권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요구됨.

○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공식적인 제도화는 인권교육의 법제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음. 인권교육의 법제화는 단일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과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인권교육 내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들 수 있음.

○ 비정부단체는 국가를 감시하고 국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활성화가 더욱 요구됨. 대학 인권교육과 관련된 단체를 만들 경우에 단체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재정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도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인권교육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인권의식 향상이나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 내에 인권관련 교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게다가 인권과 관련한 교과목의 다양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음. 대학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은 사회에 바로 적용되기 마련임.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을 내용으로 하

는 과목들을 모든 대학생들이 수강하고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 총괄하고 있는 기구로서 대학의 인권교육에 대해 지금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관련 교과목을 필수적인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 예를 들어 경찰, 군인, 의료, 복지, 교육 분야 등에 대해서는 인권과 전공을 연관지어 이를 전공필수과목의 형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에 지정 권고를 하는 것이 필요함.

○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보다는 동영상이나 관련인물 초청강의, 팀프로젝트 발표 등 강의와 혼합된 형식의 수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시각적인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때 많지 않고, 게다가 검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음.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영화제를 연다거나, 혹은 인권관련 동영상 등을 제작·지원하는 형식으로 동영상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홍보하거나 인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예를 들어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모은 자료집을 제작한다거나, 대학에서 인권관련 강의를 하는 교·강사가 인권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취합하여 전달해 주거나, 토론회, 팀프로젝트 등 다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대학수준에 맞는 인권교재 개발, 범죄와 인권, 소수자와 인권, 여성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등 특화된 주제에 대한 인권교재 개발, 인권관련 법규 모음집 제작 및 배포도 대학의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인권교육일반, 기본권,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아울러 추진되었으면 함.

○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도 혹은 재정지원을 통한 인권교육 중심의 기구를 만들고 활성화하면 전체 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 나아가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여 대학총장 및 기획처장 등 대학 운영의 주체가 되는 인사들과 함께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거나, 대학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강사들을 모아서 강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인권교육 강화노력도 인권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해 인권과 관련한 전문 강사 양성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인권관련 교과목 교·강사들을 활용하여 조충고생,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목 차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방법	3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4
제2장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9
1. 인권의 의의	9
2. 인권의 내용	11
3. 인권의 특성	13
4. 인권교육의 특성	18
5. 인권교육의 필요성	21
6.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23
제3장 2013-2014년 전국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 27	
1. 대학교 인권교육교과목의 정의 및 이와 관련된 문제점	27
2. 조사 개요	28
1) 배경 및 취지	28
2) 조사개요	29
3) 조사 대상 인권관련 교과목의 범위	29
4) 인권과목과 인권관련 과목의 확인	30
3. 조사 결과	32
1) 조사대상 대학 중 회수율	32
2)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33
가. 개설현황 개요	33
나. 대학 유형별 개설현황	34
다. 인권 관련 교과목의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35
라. 대학/대학원별 개설현황	39
마. 전공별 개설현황	41
바. 과목성격별 개설현황	42
사. 교·강사 및 학생 현황	42

3)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43
가. 개설현황 개요	43
나. 대학 유형별 개설현황	44
다. '인권 교과목'의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45
라. 대학/대학원별 개설현황	49
마. 전공별 개설현황	50
바. 과목성격별 개설현황	52
사. 교·강사 및 학생 현황	52
4) 대학교 건의 및 요청사항	54
가. 재정지원 관련	54
나. 교·강사 관련	54
다. 인권교육자료 관련	54
라. 정책, 제도 개선 관련	54
마. 조사 관련	55
바. 기타	55
4. 인권 관련 교과목에서 제외된 교과목 현황 분석	55
1) 조사대상 대학에서 제출한 총 과목 수	55
5. 인권 및 인권 관련 교과목의 개설 추이 분석	58
1) 연도별 개설 추이	58
2) 2014년 2학기 개설 전망	60

제4장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	61
1. 조사개요	61
2. 조사결과 분석	63
1) 인권지식 및 의식 / 태도와 행동 / 침해 경험	63
가. 인권에 관한 지식	63
나. 인권침해 경험	65
2) 인권교육 경험	66
3) 인권관련 강의 수강 실태	67
4) 인권 관련 강의의 교육내용과 방법	68
5) 교육 효과	71
6) 기타, 개선사항	73
3.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인권지식 및 의식의 차이 분석	74

1) '세계 인권 선언'을 읽어본 경험	74
2) 헌법의 인권 내용 인지	76
3)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	77
4) 타인의 권리보다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동의	79
5) 한국의 인권 존중 상태	80
6) 대학의 인권 존중 상태	82

제5장 교·강사 대상 설문조사 84

1. 조사개요	84
1) 표본	84
2) 조사방법	84
3) 조사내용	85
2. 조사결과 분석	85
1) 응답자 특성	85
2) 인권관련 강의 경험 및 개설 강의명, 인권관련 내용 포함 주수	86
3) 인권관련 강의에 포함된 내용	88
4) 강의 방식과 교재, 평가방법	90
5) 인권관련 교과목 강의시 어려움	92
6) 대학 내 인권과 관련한 강의나 프로그램 추가 개설 필요성	94
7) 대학 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98
가. 대학에서 지원해야 할 점	99
나.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점	101
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할 점	104
라. 기타	108
8) 대학 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점	109
9) 그 밖에 대학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점	112

제6장 인권교육 관련 해외사례 114

1. 대학에서의 인권강의 편성 및 강의계획서	114
1) 시카고 대학교의 인권관련 교과목 모음	114
2) 하버드 대학교 - 사회적 의료 강의계획서	123
3) 시카고 대학교 -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124

2. 대학 내 인권관련 기구에서 운영중인 교육 프로그램	124
1) 하버드 케네디 스쿨, 인권정책에 대한 카(Carr) 센터	125
2) 옥스퍼드 대학교 평생교육부	126
3)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	130
3. 인권교육 관련 자료 및 의견교환을 위한 모임	130
1) 미국 인권교육자들의 모임	130
2) 인권교육협회	132

제7장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133**

1. 대학에서 지원해야 할 점	133
1) 교양측면의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133
2) 전공측면의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133
3) 인권관련 교과목 운영상 지원	134
4) 인권센터 건립을 통한 인권중심 대학 구축	135
2.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점	136
1)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법제화	136
2)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138
3) 인권친화적 대학 교육정책 추진	138
4)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139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할 점	139
1) 인권관련 교과목 필수과목 지정 권고	139
2) 인권관련 자료 정리 및 교재 개발	141
3) 인권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142
4)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및 인권강사 양성	143

<부록 1 - 인권관련 강의계획서>	145
<부록 2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학생용 설문지>	229
<부록 3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교·강사용 설문지>	241

표 목 차

[표 III-1] 개설 인권 관련 교과목의 학문영역별 분류	32
[표 III-2]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서 회수율	33
[표 III-3] 2013-2014년 전국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34
[표 III-4] 2013-2014년 국공립대학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34
[표 III-5] 2013-2014년 사립대학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35
[표 III-6] 2013-2014년 전국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의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35
[표 III-7] 2013-2014년 국공립대학(교)의 인권 관련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38
[표 III-8] 2013-2014년 사립대학(교)의 인권 관련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39
[표 III-9] 대학/대학원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39
[표 III-10] 대학/대학원의 인권 관련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40
[표 III-11] 대학/대학원의 인권 관련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41
[표 III-12] 2013-2014년 전국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	44
[표 III-13] 2013-2014년 국공립대학의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	44
[표 III-14] 2013-2014년 사립대학의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	45
[표 III-15] 2013-2014년 전국대학교 인권 교과목의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46
[표 III-16] 2013-2014년 국공립대학(교)의 '인권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48
[표 III-17] 2013-2014년 사립대학(교)의 '인권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49
[표 III-18] 대학/대학원의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	49
[표 III-19] 대학/대학원의 '인권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50
[표 III-20] 대학/대학원의 인권 관련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51
[표 III-21] 인권 관련 교과목 조사에서 제외된 교과목 현황	56
[표 III-22] 인권 관련 교과목 조사에서 제외된 교과목의 영역별 분류	57
[표 III-23] 개설 인권 관련 교과목의 영역별 분류	58
[표 III-24] 2012, 2013-2014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비교	59
[표 III-25] 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 연도별 추이	59
[표 III-26] 2008, 2013-2014년 국공립대학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비교	60
[표 III-27] 2014년 2학기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예정 현황	60
[표 IV-1] 조사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61
[표 IV-2] 조사응답자의 학교 관련 특성	63
[표 IV-3] '세계인권선언'을 읽어 본 경험	64
[표 IV-4] 헌법의 인권 내용에 대한 인지	64
[표 IV-5]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	64

[표 IV-6] 타인의 권리보다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동의	65
[표 IV-7] 우리나라 및 대학의 인권존중	65
[표 IV-8] 인권침해 경험	65
[표 IV-9] 대학 입학 전 인권교육 받은 경험	66
[표 IV-10] 대학 입학 전 인권교육 장소 (복수응답)	66
[표 IV-11] 인권관련 강의 수강 실태	67
[표 IV-12] 수강한 인권 과목 수	68
[표 IV-13] 인권 강좌 수강 계기	68
[표 IV-14] 수강한 인권 강의의 내용	69
[표 IV-15] 인권 강좌 내 인권 관련 내용의 비중	69
[표 IV-16] 강의 내용과 전공과의 관련성	70
[표 IV-17] 인권 관련 강의에 포함 희망 내용	70
[표 IV-18] 인권 강의에 활용된 강의 방법(복수응답)	70
[표 IV-19] 인권 강의에 효과적인 강의 방법	70
[표 IV-20] 수강한 인권 강의의 교강사 수	70
[표 IV-21] 수강한 인권 강의의 강의 방법	71
[표 IV-22] 수강한 인권 강의의 평가 방법	71
[표 IV-23] 인권강의 수강 후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72
[표 IV-24] 인권 강의 수강 후 사회활동 참여	72
[표 IV-25] 인권 관련 강의의 대학 인권 개선 효과	72
[표 IV-26] 인권 강의에 대한 만족도	72
[표 IV-27] 인권 강의에 만족하는 이유 (복수응답)	72
[표 IV-28] 인권 관련 강의의 수강신청 용이함 및 수강계획	73
[표 IV-29] 인권 강좌의 확대	73
[표 IV-30] 주요 특성별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본 경험 여부	75
[표 IV-31] 주요 특성별 헌법의 인권 내용 인지 여부	76
[표 IV-32] 주요 특성별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	78
[표 IV-33] 주요 특성별 타인의 권리보다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동의	79
[표 IV-34] 한국의 인권 존중 상태	81
[표 IV-35] 귀 대학의 인권 존중 상태	82
[표 V-1] 인권관련 강의명과 인권관련 내용 포함 주 수	87
[표 V-2] 인권관련 강의 활용 교재	91
[표 V-3] 인권관련 강의 평가방법	92

그림 목 차

[그림 III-1] 인권 관련 과목 성격별 현황	42
[그림 III-2] 인권 관련 교과목의 교·강사 현황	42
[그림 III-3] 인권 관련 교과목 수강 학생 현황	43
[그림 III-4] 인권 교과목 성격별 현황	52
[그림 III-5] 인권 교과목의 교·강사 현황	53
[그림 III-6] 인권 교과목 수강 학생 현황	53

제1장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인권교육은 초·중·고·대학을 포함한 전 연령과 전 사회에 걸친 중요한 주제이다. 인권교육은 사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개인들이 타인의 삶을 존중하고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게다가 우리 사회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이어지는 입시체제 내에서 인권 교육은 실질적인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인식제고의 측면이 아니라 단순히 형식적인 측면이 강했다(구정화 1997: 96, 박효정·유성상 2006). 이는 대학생의 인권의식 수준 저하와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부족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3).

최근 군대나 경찰, 의료기관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사고 역시 인권교육과 무관하지 않다. 군에 입대하는 연령층의 대다수가 대학재학 중 또는 대학졸업 후에 해당하고, 경찰이나 의료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들 역시 대학을 거쳐서 자기 직종에 종사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전문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고등교육기관의 역할 중 인권교육이 갖는 의미는 클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학교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해서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그것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이용교 1999, 설규주 2005, 김숙자 2008 등). 반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는 근래에 이르기까지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 물론 대학은 초·중등학교보다 교육여건이 자유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든 교육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 보다는 대학 내 인권의식의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단

기과제로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할 필요성이 있다(임재홍 2008: 58).

게다가 대학의 환경이 교수, 학생 간의 관계 속에서 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는 점과, 특히 대학이 우리 사회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의 시급성은 더욱 강조된다. 특히 앞에서 이미 강조한 바를 포함하여 업무상 인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법조, 교육, 의료, 상담 및 사회복지, 경찰 등의 영역으로 진출할 예정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은 그 외의 영역보다는 자신의 영역 내의 세부적인 인권교육이 요구된다.

인권의 중요성 증대에 발맞추어 인권교육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도 발전해 왔다. 유엔에서는 1995년 인권교육에 대해 논의한 이래 2004년 12월에는 유엔총회결의를 통해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한 바 있다. 제1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05-2009)은 초중등학교과정 내의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춘 반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5)은 고등교육체계 내에서의 인권교육 및 교사, 교원, 공무원, 법집행관, 군인 등에 대한 인권교육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흐름에 부응한다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의 인권교육 특히 고등교육의 체계 중 일부인 대학 내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해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매년 대학교 인권교과목 개설현황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하지만 대상 교육기관의 협조율이 낮고 협조되지 않은 기관의 현황분석이 어려운 점, 깊이 있는 분석에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의 한계가 있다.

본 조사보고서는 대학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의 실태를 분석하고 나아가 지향해야 할 모델을 제시하여 대학생 및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신의 권리에 대한 지각을 높임과 동시에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창조적인 지식

의 개발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연구방법

인권은 여러 분야가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므로 방법론에 있어서 다각도의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진은 우선 대학의 인권실태에 대한 기존의 조사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인권교육과 관련한 자료, 초·중등교육을 비롯한 사회에서의 인권교육과 관련한 자료 등을 분석하였다. 인권교육은 사회전반에 걸쳐 여러 단계에서 진행되는 만큼 이들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대학교육에서 인권교육이 갖는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관련 문헌으로는 인권교육 관련 각종 보고서 및 발간물, 논문 등을 포함하였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전국 365개 대학의 교양 및 전공과정에서의 인권교과목 개설상황과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각 특성에 따라 분석하였다. 특히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들 중 일부를 추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교육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특수대학원(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등)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양성과정이나 특수대학(경찰대학, 각군 사관학교 등) 등에서의 인권교육과정 및 그 내용을 전수조사를 통해 기존 보고서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위한 해외의 사례도 살펴보고 한다. 다만,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 본 중간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는 못하였다.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는 기회의 균등, 문화다양성, 장애인, 차별, 고용, 여성문제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정책 및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매년 정부에 학내 인권현황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아시아권 대학들과 연계한 인권프로그램 공동으로 추진하기도 하며, 인

권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기도 하는 등 학내 인권의 증진뿐만 아니라 인권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 주요 대학들은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우에는 '인권강의안내서(Human Rights Course Guide)'발간이나 해외인권연구, 인권공동체와의 네트워킹 등을 통해 체계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왔으며, 호주의 시드니 대학교도 자체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 왔다. 인권을 권리의 측면에서 보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면서 대학교육을 글로벌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며 또 중요하다.

3.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체적으로 아동, 청소년의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 즉 초·중등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어떠한 교육을 하여야 할 것인가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인권교육에 대한 논의는 임용수(1994)가 '인권의 교육학적 의의와 인권교육에 대한 고찰'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구정화(1997)의 '사회과교육에서 인권교육의 방향에 관한 연구' 등이 발표되면서 그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근래의 인권교육관련 연구로는 실태와 관련하여 이용교(1999), 설규주(2005), 김숙자(2008) 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열에 비하면 인권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연구는 의외로 적은 편이었으며, 실태나 현황, 부분적인 인권교육방법론 외에는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인다. 또한 조태원(2010), 이재호(2008: 338), 허수미(2008: 1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제한된 수의 인권교육 자료만을 인용하여

논문 초반부터 이론적 고찰 부분에서만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나달숙(2011)의 연구는 프랑스, 독일, 미국과 같은 해외의 인권교육 현황과 우리나라의 현황을 짚어보고 국제기구 차원에서의 인권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고찰하였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대학의 인권교육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하여 조금씩 그 내용을 확장시켜 가고 있는 중이다. 대학의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임재홍(2008)은 인권변호사 양성과 관련한 인권교육에 초점을 맞추고 하버드 로스쿨의 인권교육 프로그램과 컬럼비아 대학교의 인권교육 프로그램, 미네소타 대학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분석한 바 있다. 하버드 로스쿨은 Harvard Law Student Advocates for Human Rights와 같은 학생기구들과 협력관계를 지속하고 확대하면서, 인권관련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인권관련보고서의 출간, 인권관련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인권전문가 양성 및 연구지원을 하고 있다(임재홍 2008: 60, 61). 컬럼비아 대학은 인권 NGO나 정부기관에 인턴십을 보내거나, 인권연구소 설립, 심포지엄, 학회, 강의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인권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인권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임재홍 2008: 76이하). 하지만 임재홍은 위와 같은 연구에 있어서 주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만 할 뿐 문제점이나 보완점, 인권교육의 재원조달에 있어서 정보 등에 관해서는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특정 분야에서 인권교육에 관한 최근의 연구로는 유병열(2012)의 ‘학교 인권교육 강화 및 교사의 인권교육 역량 증진에 관한 연구’가 있다. 유병열은 이 연구에서 학교폭력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과 실천을 새로이 할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인권교육의 강화 방안 중 하나로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예비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실제로 그는 서울대 사범대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관련 조사를 하였는데 단 1개의 인권 관련 강좌만 개설되어 있었고, 교직과정에서도 인권 또는 인권교육이 직접 다루어지는 경우를 찾

아보기 힘들었다고 한다. 전공과정에서는 일부 과목에서 인권 또는 인권 교육이 다루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히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봄. 유병 열은 교사의 인권인식 향상을 위해 교사 양성과정에서의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와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양천수(2013)는 ‘인권교육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과제’에서 인권교육의 양적확대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인권교육이 형식화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교육법 제정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이 논문은 인권교육법 제정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만 논증할 뿐 구체적으로 초, 중등교육, 대학교육 등 교육체계 내에서 인권교육법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교육의 연구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보고서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인권교육, 공공분야 인권교육,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최근의 ‘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2011)’, ‘인권교육 10개년 행동계획안 개발연구(2011)’, ‘평생학습에서의 인권교육 접목방안 연구(2008)’, ‘인권관점에서 다문화교육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08)’, ‘인권교육 평가도구 개발연구(2008)’, ‘인권친화적 초·중등학교 인권교육 내용 체계화 연구(2007)’, ‘인권교육 개념 및 방향 정립 모색 연구(2005)’ 등을 들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2009)의 실러버스 모음집은 대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함과 동시에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게 되므로 그 내용도 다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대학의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찾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07년 조사에서는 설문조사 내용의 대상이 되었던 총 434개 대학 중 235개 대학이 응답을 하였으며, 그 중 58개 대학에서 113개의 인권관련 강좌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국가인권위원회

2009: 4). 하지만 2007년 당시에는 이와 같이 강좌를 개설하고 있는 학교의 숫자가 많지 않았으며, 강좌개설 학과 역시 법과대, 사회과학대 등에 편중되어 있었다. 강의계획서의 내용에 있어서도 여성, 청소년, 독재, 장기수, 주한미군, 전쟁,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 형사절차, 장애인, 동성애, 외국인노동자, 비정규직, 북한인권, 국제인권법, 과거청산 등 각 대학별로 강의내용 역시 다양해지는 추세였다.

2013년의 국가인권위원회 실러버스 모음집에서는 대학에서 인권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이전 년도와 비교하여 점점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결과에서는 조사대학 434개 교 중 306개의 대학이 회신을 하였으며 이 중 132개교에서 525개의 인권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이는 2007년과 비교하여 매우 향상된 수준이며, 2011년과 비교하더라도 교과목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한다(164개->525개; 국가인권위원회 2012: 4). 인권관련 교과목의 확대도 두드러졌는데 교육학, 국제관계학, 사회복지, 여성학, 다문화 등 인권교육에서 일부를 이루던 것이 하나의 과목으로 등장한 것이 특징적 이었다. 하지만 위 모음집에서는 과목이 다양화되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 대학마다 서로 다른 내용을 교육하고 있으며, 현재의 강의나 교육방법이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 밖의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심영희(2009)의 ‘인권 친화적 대학문화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국가인권위원회 정책보고서)’, 류지현·허창영(2008), ‘대학생의 인권의식에 대한 요인분석 및 인권태도의 인식수준’, 문미희(2005), ‘예비교사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염형국(2009), ‘로스쿨에서의 공익인권법 교육 활성화 방안’, 임경수(2012), ‘초·중등 사회과 교사의 법과 인권교육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임재홍(2010), ‘대학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등이 있다.

심영희의 연구(2009)는 대학생의 일반적 인권의식이 낮은 수준에 머

물러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는 중·고등학교 때의 인권교육이 대학교 때의 인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의미 있는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학 내 인권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기구가 대학 당국과 독립하여 존재하여야 함을 역설한다.

제2장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1. 인권의 의의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이러한 사람답게 살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 한다. 인권이란 다시 말해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인권은 누구나 인간이라면 갖는 권리이며,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권리이다. 인간은 자신의 정체성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자율성을 확보해 나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위해 누구에게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인권을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가면서 바라는 것, 희망하는 것, 요구하는 것들을 권리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00; 11).

인권은 투쟁을 통해서 점점 그 권리가 확장되어 왔다. 그러한 투쟁을 인권운동이라 하는데, 이러한 운동을 통해 인권의 내용은 새로워지고 점점 다양화 되었다(박민정: 11).

명문화된 인권은 영국의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서는 군주와 귀족간의 약정서로서 국가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장한 최초의 명문화된 문서로 평가된다. 1628년의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에서는 의회의 승인없이 과세를 하는 것이 금지하는 것과 신체의 자유가 규정되었다. 종교의 자유, 신체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 등이 1674년의 인민협정(Agreements of the people)에 규정되었다. 1679년의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은 인민협정의 결함을 보완하면서 보다 더 강화된 형태의 인신보호제도가 보장되었다. 1689년의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는 국왕이 의회의 승인없이 조세를 부과하지 못하

게 함과 동시에 법률의 효력정지나 상비군 설치도 금지하였다. 또한 위 권리장전에는 청원권과 언론의 자유 보장, 신체의 자유 보장 등의 규정이 있었다(김철수 2008; 89).

1776년 미국의 인권선언은 전형적인 인권선언이라 평가된다. 버지니아 권리장전(1776.6)에서는 행복추구권, 생명의 자유, 재산권, 저항권, 신체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등이 천부불가양의 자연권으로 선언되었다. 그 후 독립선언(1776.7)에서는 천부인권, 생명,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었고, 또한 국가에 대한 저항권도 인정되었다(김철수 2008; 90).

1789년의 프랑스 인권선언은 ‘인간 및 시민의 권리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선언에서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소유권 보장과 함께 평등권이 양도불가능하고 침해할 수 없는 자연권으로 규정되었다. 이 선언은 1891년 9월의 프랑스 헌법에도 채용되었다. 1793년 6월에 제정된 프랑스 헌법은 “헌법 및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으로 모두 35개조로 구성되었다. 그 후 이 헌법은 1795년 8월 제공화국 3년 헌법의 인권선언으로 대체되었고, 이후로 인권사상의 퇴조를 보이다가 1958년 제공화국 헌법에서 부활하게 되었다.

현대사회의 특징으로는 다양성과 다원성을 들 수 있다. 과거에 서유럽과 미국에서는 시민을 특정국가의 민족문화를 체득하고 장애가 없는 백인남성으로 규정했다(최현 2009: 109). 따라서 이 범주 외의 장애인이나 유색인종, 여성, 동성애자들은 시민에 속하지 못했으며, 시민이 가지는 권리를 누릴 수 없었다.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 속에서 이러한 시민이 가지는 권리도 역시 변화해야만 했다. 결국 이러한 시민사회의 변화는 다양성과 다원성의 개념에 부합하는 새로운 인권개념의 필요성을 앞당겼다. 인권의 개념 속에는 이러한 문화적, 인종적 다양성을 포함하면서도 문화적인 상대성을 가지는 특성이 내포되게 되었다. 흔히 21세기를 지구촌 사회, 세계화 사회라고 한다. 이러한 세계적인 흐름은 인권의 개념을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상황을 해결 할 수 있는 공동체적 개념으로서 뿐만 아니라 문화적 상대성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공동체적 개념으로 전환하게 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2. 인권의 내용

인권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면서 점점 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가는 특징을 가진다. 인권은 자연권적 성격 뿐만 아니라 실정법적인 면에서 기본권이라는 형태로 실현되고 있다. 인권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 될 수 있다(Vasak, K. 박홍규 역 1986).

제1세대 인권은 자유권 중심의 인권이다. 이는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며,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유재산의 권리, 투표의 자유,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종교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자유권 중심의 인권은 영국의 권리장전(1689), 프랑스 인권선언(1789) 등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인권의 사상적 기원은 자유주의적 정치철학과 계몽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주로 제1세대 인권은 민주주의 구현과 시민사회의 효과적인 조직에 수반되는 기본적인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한다. 또한 제1세대 인권은 그 성격상 국가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적극적인 의미가 아닌 소극적 방어권의 성격이 있다. 경제활동이 강조되던 당시의 상황에서 평등이란 단순히 평등하게 자유를 누린다는 의미 외에, 사회적 혹은 경제적 평등까지는 요구되지 않았다. 결국 이로 인해 제2세대 인권이 등장하게 되었다.

제2세대 인권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 세력의 확대에 인하여 자본주의 국가들이 느낀 위기에서 출발한다. 자본주의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사

회권이다.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은 사회권으로서 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제22조부터 제27조).

제2세대 인권은 노동의 권리, 최소한의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 최소한의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휴식과 여가의 권리,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권리,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즉 내용상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주로 담고 있다. 물론 제1세대에서 나온 인권의 개념은 당연히 여기에 포함된다.

제2세대 인권은 사회 민주주의, 사회주의, 사회운동 등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제1세대 인권의 소극성과는 달리 국가의 능동적,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제1세대 인권이 국가에 대한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제2세대 인권은 국가에 의한 자유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제3세대 인권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발전된 인권의 개념이 서구사회를 지배하는 백인 남성 자본가 계급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3세계 국가, 여성, 유색인종, 소수민족 등의 민족 해방운동이나, 흑인 민권운동, 여성의 페미니즘 운동 등이 성행하였는데, 이들 운동의 특징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 혹은 세계사회에서의 보편적인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운동에 따라 발전하게 된 인권이 바로 제3세대 인권이다.

제3세대 인권은 개발에 대한 권리, 평화에 대한 권리, 자원·과학, 기술·정보·문화 등 인류 공동의 자산에 공동으로 참여할 권리, 인도적 조력을 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 연대적, 공동체적인 권리가 그 주요 내용을 이룬다. 제3세대 인권은 개인적인 권리의 측면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측면이 강하므로 이전 세대의 인권과는 다른 성격을 갖는다. 물론 이 세대의 인권이 개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히려 지역사회나 사회 또는 국가에 해당되는 사항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 제3세대 인권은 조약이나 협정 등을 통해 성문화되어 가는 단계이지만,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인권은 강조되어 온 바와 같이 역사적인 산물로 법의 영역 내에서 보 완되고 있다. 인권의 내용도 국가 내에서의 내용이 국가 간, 세계적 관점 에서 관심이 필요한 인권으로 그 의미와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3. 인권의 특성

인권이 인류 전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미 보편성을 내포하고 있다. 오늘날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에 이의를 제기하 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이권을 가져야 하는 근거들 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 왔고, 이러한 담론에서 공통적으 로 다음과 같은 점을 추출할 수 있다(이동희 2003: 82).

우선 인권의 보편성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인권의 형식적 보편성이 갖는 폐해를 극 복하기 위해 거기에 상대적인 의미를 부과하고자 하는 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인권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인권은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점에서 보편적이라 한다. 이러한 명제 는 인권이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 령다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전제가 성립해야만 이 명제가 타당하다 고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명제는 자연법적·자유주의적 시각에서 찾을 수 있다. 자연법이란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보편타당한 규범을 말한다. 자연법의 근거는 자연이나 이성에 있다. 자연법은 일종의 권리 혹은 정의의 철학체계로서 특정 사회의 규율이나 관습 혹은 전통으로부

터 추론되기 보다는 모든 인간의 자연, 즉 품성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의 품성은 이성으로 설명된다(박은정 1987: 63).

고대 그리스에서 알렉산드로스 치하의 헬레니즘 문명으로 변화되는 시점에 자연법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스는 소규모의 동질적인 집단에 불과했지만, 알렉산드로스라는 대규모의 전혀 다른 집단 속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의한 질서에서 벗어나 보다 인간 본성에 충실한 질서관을 가지게 됨으로써 자연법이라는 관념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질서관은 인간은 공통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는 형제 같은 존재로서 모두 비슷한 하나의 인간일 따름이라는 유적(類的) 유대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이봉철 2003: 110). 당시 스토아 학파는 인간이 인종이나 지위 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형제처럼 평등하다는 관념이 제시되고 있었다(Sabine 1973: 155, 이봉철 2003: 115에서 재인용).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홉스는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생물체로서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 특유의 권리 혹은 인간의 자유는 그 어디에도 양도할 수 없다'고 했으며(Donnelly 1983: 89, 이봉철 2003: 134에서 재인용), 푸펜도르프는 자연법은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았다(백봉흠 1983: 22).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고유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자연법적 측면에서 인간의 평등관에 존엄성이 더해 진 것은 자연스러웠다. 인간은 잠재적으로 존엄성을 평등하게 갖기 때문에 결국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다. 자연법에서의 인간의 평등관은 오늘날에도 인권의 보편성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작용된다. Freeman이 세계인권선언에 표현되어 있는 UN헌장의 인권 개념을 자연권 개념을 현대적으로 부활시킨 것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Freeman 2004: 65).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도 인간은 평등한 존재로 여겨진다. 여기서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제도나 정치적 실천의 평가

기준이 개인의 자유를 촉진하거나 조장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보는 신념체계를 말한다(Ryan 1999: 292; 문지영 2004: 172 재인용). 자유주의에서는 자유를 인간의 본성으로 본다.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의 정당화 근거는 자연법상 자연에서 자유로 옮겨 간다. 자유를 갖는 개인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 누구의 권위에도 구속되거나 간섭당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판단하며, 그 행위에 따른 책임도 스스로 가지게 된다. 자유주의적 시각에서 보면 인간은 자유롭고 자율적인 면에서 최고의 존엄성을 갖는다(이봉철 2003: 132-133). 인간이 존엄한 근거는 인간의 자율성에서 찾을 수 있고, 인간의 자율성은 스스로의 자유와 다른 사람과의 평등이 보장되어야만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자연법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은 그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그 근거면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자연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 하지만, 자유주의적 시각에서는 자율적인 개인을 인간의 존엄성보다 우선시 한다. 하지만 자연법적 시각과 자유주의적 시각은 인간의 존엄성을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도출한다는 점,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이 상호 관련성을 갖는다는 점, 인권을 서구의 역사적 체험의 결과로 보고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물론 이러한 인권의 보편성에 대하여는 회의와 반론의 과정을 거쳐 왔다. 오늘날과 같은 인권의 상대적 보편적 가치로서의 특성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확립되어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의 주된 비판은 인권이 서구에서 출발하였으므로 전 세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과 인권이 기반하고 있는 자유주의 자체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이 있다.

문화다원주의의 입장에서는 인권의 서구 문화적인 바탕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즉 이러한 입장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은 인간의 차이를 무시한 것으로 보편성이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국가들이 인권담론을 형성하면서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인권의 보편성이란 문화제국주의를 위한 하나의 이데올로기적 위장술에 불과하다고 한다(Freeman

2005: 142). 서구식 인권개념은 다른 세계의 문명적 특수성을 배제하고 있으며, 단지 특수한 개념에 불과하다고 본다(정영선 2000: 2).

일부 유교 문화권에서도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이들 역시 인권의 보편성이 특정 지역 내에서 지역 나름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를 포괄하는 상대적인 시각에서 재해석되어야 한다고 본다. 예를 들어 아시아권 내에서의 인권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 수준의 권위주의는 필요하다고 한다. 그들은 경제적 성장이 이루어진 후에야 인권문제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무분별한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이 지역 내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자국의 인권문제에 대한 서구의 간섭이 곧 내정간섭이라 주장한다. 즉, 아시아의 국가들에서는 아직 경제성장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에 대한 보장 자체가 그만큼 덜 중요시되며 서구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한다(정영선 2000: 80).

하지만 문화상대주의란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피부색이나 신장, 두개골의 모양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하나라는 확신에 근거하고 있다(한경구 2002: 26). 문화상대주의는 인간의 본성이 기본적으로 동일하다는 데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상대주의를 근거로 인권의 보편성을 비판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지역적 특수성에 기반하고 있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은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현대에 있어서 인권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보편적인 권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다만 이를 보장하는 방식만이 다를 뿐이다. 이러한 면에서 인권은 보편성을 가진다.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가 과도하게 개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인간 공동체가 추구하여야 할 공동선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이러한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인권 역시 그러한 맹점을 갖는다고 한다(Waldron 1987: 151, 166-209; Mulhall and Swift 1996; Freeman 2005: 148에서 재인용). 공동체주의 입장에서는

자유주의적 인권은 권리를 개인에게 속박시키고 개인을 세계에 중심에 놓아서 인간의 이기심만을 강화하여 왔다고 본다. 개인주의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집단간, 국가간, 종교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인류 통합이 저해되어 왔다는 것이다(정영선 2000: 218).

공동체 주의자들은 공동체와 인권의 개념이 본질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그 논의를 전개한다. 그러나 로크의 경우에도 이미 자유주의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공동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Gewirth 1996; Freeman 2005: 148에서 재인용), 공동체가 나약한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인권 개념의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Freeman 2005: 148), 인권 개념 속에 공동체가 들어 있지 않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일깨워준다. 우선 인권 개념은 서구의 문화를 대변하고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율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인권을 실천하는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요구는 인권이 상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인권은 단순히 개인을 넘어 공동체 내에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가치라는 점이다.

인권은 물론 보편적이다. 하지만 여기서의 보편적이라는 의미는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천되는 보편성을 의미한다. 또한 이 보편성이라는 의미 내에는 각양각색의 구체적인 개인들을 고려한 인간의 개별적 특수성에 열려 있는 보편성으로(이봉철 2003: 40), 논쟁과 실천 속에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는 '상대적 보편성'이다(정영선 2000: 222). 인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이다(하경수 2004: 159).

4. 인권교육의 특성

교육은 인간이 자신의 개인적·사회적 경험의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교육을 통해 더욱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있다. 이러한 교육 중 인권과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인권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인권교육이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습득을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와 더불어 다른 사람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행동하기 위해 필요한 행동양식, 기술, 태도,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데에 있지 않다. 인권교육에는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 즉 공동체의 존엄한 삶을 위해, 전체 인류의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인권의 옹호와 방어를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적극적인 개념까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방법 또한 인권을 보장하는 쪽을 지향하고 있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학습뿐만 아니라, ‘인권을 위한’ ‘인권을 실천하는’ 인권 자체의 교육이며 인권교육의 최종적인 목적인 인권적 태도를 갖고 ‘인권을 문화적으로 실천’하는 데에 있다(박상준 2003: 124).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도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이 선언을 마음 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계인권선언 제6조 2항에서는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강화하는데 나가야 한다”라고 서술하여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9조 1항에는 아동교육의 목표로 “인격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잠재력의 최대계발과 인권과 기본적 자유 유엔헌장에 규정된 원칙

존중”을 지향하며 제2조에는“당사국은 이 협약의 원칙과 규정을 적절하고 적극적인 수단으로 성인과 아동 모두에게 널리 알릴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엔나세계인권회의에서는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비엔나 선언·행동계획의 78항부터 82항에 걸쳐 인권교육의 중요성과 원칙들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인권교육의 특성은 실증 연구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인권문제와 관련된 지식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지식에 따라 인권 옹호행위를 실천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한 인권교육은 구체적인 인권 친화적 행위를 활성화시켜 주지 못한다고 한다(박상준 2003: 124). 따라서 인권문제가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할 필요가 있고, 인권침해상황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행위성향 중심의 인권교육은 인권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인권 친화적 행위를 체험하고 연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물론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청각자료를 통한 간접체험이나 토론의 형태도 유의미하다. 간접체험에는 인권과 관련된 영화와 사진, 신문기사, 역사적 사건과 인물, 시민단체 및 유네스코자료집 등이 사용될 수 있다(박상준 2003: 129).

인권교육의 위와 같은 특성, 즉 권리로서의 인권교육, 인권교육의 맥락성/현장성, 참여적 과정으로서의 인권교육과 더불어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관점, 인권친화적 교육환경조성, 사회체제의 변화를 지향하는 특성들을 고루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특성에 비추어 인권교육의 재정립을 요구하는 견해도 있다. 그 첫 번째는 인권교육을 기본적인 권리를 가르치는 교육임과 동시에 학습자들에게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인권교육이 학교교육에서 공통필수적인 교육의 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인권교육의 현장성과 맥락성 반영을 위해 학습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는 학교 내에 인권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인권교육이 사회적 약자의 관점과 사회구조적 조망을

채택하여 지도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이종태 외 2005: 74).

위의 견해는 대체적으로 대학교육에도 적용할 수 있다. 우선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으로서 인권과 관련된 제반 논점들이 들어있는 강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전공 강의의 내용도 마찬가지로 관점에서 인권과 관련한 전공분야의 사항들이 녹아들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권의 보편성이 인권교육의 보편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모든 권리들을 찾아 강제적으로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대학의 학문의 자율을 해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보다는 변화하는 인권의 상황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교양이나 전공 측면의 다양한 강의가 개설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점에서 위의 견해와는 차이를 갖는다. 물론 대학의 인권강의에 있어서도 학습자들의 적극적 참여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은 살아 숨쉬는 권리이고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대상의 고통을 느낄 수도 자신이 가지는 권리의 참다운 가치를 체험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에서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체험을 수반한 교육이 될 필요가 있다. 대학 인권교육의 내용면에서도 다문화, 소수자 존중을 위한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적 약자의 관점이나 사회구조적 조망이 필요하다.

헌법상 기본권은 반드시 인권의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본권은 인권에 바탕을 두고 인간의 권리를 실현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기 때문에 기본권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은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인권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법 뿐만 아니라 철학, 사회학, 과학 등 모든 학문영역과 문화적인 상대성까지 포함하는 복잡하고 매우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헌법이라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만 인권교육의 목적이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지엽적인 면이 있다.

구정화(2004)는“지금까지 민주화 과정에 있던 우리사회에서는 인권에

대한 논의가 정치적인 논리에 밀려 중요하게 취급되지 못했고 그 내용에서도 한 개인의 삶을 포괄하는 민주주의적인 시민 삶의 윤리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위임받은 정부가 헌법에 따라 보장해 주는 기본권 측면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으나 인권은 포괄적인 인간의 권리이며 개인이 소유하고 누리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하며 기본권 측면에서 인권을 논의하기에는 한계점을 갖는다고 한다.

따라서 인권교육의 내용은 법적인 측면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의 인권교육은 법적 특면에 치우쳐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이 점은 인권교육이 인권에 대한 침해에 대응하는 법률적인 면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사실 중요한 점은 인권개념의 출발점이 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측면에서의 보호에서 출발했고, 인권을 침해하는 기관이나 법률을 비판하는 데에 있다는 점이다. 인권은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법적 장치가 없거나, 법에 호소하더라도 인권침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경우에 더 중요성을 갖는다.

법 교육 중심의 인권교육이 갖는 기능위주의 인권교육의 한계는 통합적으로 인권적 문화형성을 강조하는 인권에의 접근방식에 의해 극복할 수 있다(허수미 2009: 167). 인권을 이해하는 데는 인권의 정치뿐만 아니라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분야에서의 연구도 필요하다.

5.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권교육에 의해 개인의 보편적 권리가 존중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이는 국가적, 개인적 차원에서 성장의 원동력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유교적 문화, 혈연과 지연 등 공동체 중심의 사회·문화적 분위기, 오랜 군부 독재정권 지배 등으로 인해 경직된 사회풍토 속에서 개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침해되거나 억압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에 대한 인권교육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통합은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고 경쟁과 더불어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의 형성을 위해서 또한 개인의 다양성과 인권의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둘째, 인권교육은 인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상황에 놓인 사회구성원들에 대해 공감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즉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발달은 문화적, 언어적, 민족적, 환경적으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되고 그들의 인권 존중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여 다문화·세계화 사회에서 전 인류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지구적 시민으로서의 의식 형성에 밑거름이 된다.

셋째,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의 형성에 도움을 주어 인간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인권교육은 인권존중 의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를 개선·예방하는데 도움을 준다. 인권에 대한 명확한 지식·가치·태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인권침해를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것보다 인권교육을 통해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성숙한 인권문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인권의식의 함양과 홍보, 사회적 제도의 구축과 확산, 인권 문화의 확대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인권교육을 행한다면 사회구성원 모두 자신의 인권존중과 타인의 인권존중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형

성하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은 다소 생소한 상황이다. 그 이유는 초, 중등학교와는 달리 이미 성인이 된 사람들에게 인권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개념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함으로 인해 대학교에서 인권교육에 대해 구체적인 교육계획을 세우려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생각된다. 사회적으로 인권을 둘러싼 해석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데다가, 대학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논쟁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치부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현재 우리나라 대학은 인권교육과는 거리가 먼 환경에 놓여 있다. 특히 민주화 이후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기조는 신자유주의를 추종하고 있다. 대학정책에서의 신자유주의는 급속하게 변화된 지식기반사회를 토대로 하여, 교육받은 사람들과 그들의 지식이 가장 중요한 전략자원으로 삼는다. 대학은 이러한 지식이 주도하는 경제의 노동시장에 부응하기 위해 선진화된 교육과 훈련이라는 시스템을 제공한다.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서 교육시스템은 교수중심에서 지식전달의 객체인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 중의 하나가 직장경력에 필요할 때마다 비학위과정으로 제공되는 현실교육이나 학생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이다(J.J. 두데스텝 2004, 43-48; 임재홍 2010: 33).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 하에서 대학교육은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무한 경쟁사회에서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비자인 학생을 최대한 많이 모집해야 하고, 교과과정은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배치해야 하며, 졸업 후의 삶을 위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결국 각 대학들은 취업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강의 중심의 교과목 편성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대학의 환경 속에서 인권교육이 제 자리를 찾기는 쉽지 않은 현실이다(임재홍 2010: 34-35).

초중등교육과정의 단계의 학생은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고 자기 생활을 설계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입시를 목표로 하는 경쟁 위주의 교육문화에서는 당연하다. 그러나 대학 이후부터는 주체적 생활과 세계관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 대학의 초기 생활이 개인의 인생관, 생활철학, 대인관계 및 인권의식에 큰 영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이 단계에서의 인권교육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임재홍 2010: 36)

더불어 대학생활에서의 인권교육이나 인권체험은 사회생활에 연장되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대학 졸업과 동시에 다양한 직업분야에서 활동하게 된다. 대학에서는 각 분야에 진출하게 될 전문가를 배출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어느 분야에서 활동하던지 인권과 관련된 환경에 맞닿을 수 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와 지식이 요구된다. 예컨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인권지식과 감수성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는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인권지식과 감수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직업 활동 수행을 인권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직업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신들의 직업 활동 수행에 있어서 인권교육, 특히 자신들의 직업 영역에서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인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은 보다 성숙된 전문사회 인력으로 기능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류지현/허창영: 182-183, 임재홍 2011: 57).

사회생활에 있어서 개개인의 존중은 단순의 이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의 문제로 다루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구정화

2009: 1-12). 또 인권교육은 현재의 기본권 교육을 넘어서 공동체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식과 기능, 태도와 정서적인 측면까지 포함하는 법, 정치, 사회문화, 경제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허수미 2009: 151-181).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인권교육의 방향은 전체적인 사회를 통합하는 사회 각 분야의 모습들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학은 교과목 개설, 연구 및 교육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이라는 목적을 위해 내·외부적인 제약 없이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이 가능한 곳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하지만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임재홍 2010).

인권강좌 역시 인권일반이론과 학문의 계열이나 전공의 특성을 감안한 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인권강좌가 개설된 대학의 경우를 보더라도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에 인권과목이 주로 개설되어 있고 교육대학원이나 사범대학 등에는 거의 인권강좌가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있다.

특히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에서의 인권교육 실태를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인권관련 강좌는 거의 개설되어 있지 않고, 헌법관련 강좌에서 기본권 관련 내용 이해와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일부 소개되어 있는 것이 불과하다고 한다(임경수 2012: 64). 또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인권변호사의 양성을 위해 인권강좌가 다수 개설되어 있는 로스쿨의 경우에도 내실 있는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공익인권법을 전공한 전임교원이 없으며, 변호사시험제도로 인해 강의수요도 높지 않다고 한다(채형복 2011: 31-64).

거기에 더해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은 정규과목 외에 대학차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그 내용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

을 들 수 있다. 현재 성희롱 예방교육과 성매매예방교육은 각각 여성발전기본법(제17조의2)과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의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동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기관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그 실시가 의무로 되어 있다. 이 교육은 서울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최초 실시한 이후 2012년 인권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인권전반에 대한 교육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렇듯 대학 인권교육에는 넓게 보면 정규로 개설된 강의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인권교육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규 강의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정규 형태의 강의 외에는 일회성 특강이나, 인권기구와 학교가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강좌 등 많은 형태의 강의를 있기 때문에 취합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형태의 강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외에 대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번 조사보고서에서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인권에 대한 태도는 성별, 전공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인권교육의 중요성, 인권보호의 인지, 참여활동에 대한 인식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권교육을 설계할 때에는 전공영역과 인권에 대한 관련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교육 내용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류지현·허창영 2008: 175-201). 인권교육은 세 가지 차원에서 논의 될 수 있다. 인권에 대한 교육으로서 역사, 문건, 정책, 자신의 권리에 대한 교육과 인권을 위한 교육으로서 인권의 수용,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의 관점 적용, 인권을 통한 교육으로서 교육자체의 인권적 방식의 적용이 바로 그것이다(Lister 1984). 대학의 인권교육을 활성화 시키고 그 내용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인권교육 정규 강좌 개설, 인권교육 관련 법률 마련 등 인권교육 제도화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전문 인력 양성 및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정책적으로 중시되어야 한다(임재홍 2010: 33-60, 나달숙 2011: 85-121).

제3장 2013-2014년 전국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1. 대학교 인권교육교과목의 정의 및 이와 관련된 문제점

1) 대학교 인권교과목의 정의 시 고려 사항

대학에서의 인권교육에 대한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권교과목개설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권교과목을 분류해낼 경험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를 명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교과목이란 대학에 개설된 교과과정 중 특정학과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인권과 관련된 직무교육이 아닌 일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목적으로 개설된 강의를 의미한다. 보편적 인권교육은 기본소양으로서의 인권교육을 의미하며 직무교육으로서의 인권교육과 구분된다. 여기서 ‘보편적’이란 인권의 발달에 관한 기존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관한 논쟁(철학적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그리고 정치현실주의)과는 무관하고, 보편적 권리로서 인권의 의의, 인권의 내용, 인권신장을 위한 참여의 필요성을 주요 학습내용으로 담고 있는 교과목을 의미한다. 따라서 보편적 인권교육과목이란 사회복지관련 과목이나 법학교육과 같이 특정 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직업 및 직무교육이 아닌 전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개설된 과목을 말한다.

한편, 인권교과목을 정의함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는 대학에 개설된 과목들 중 인권과 관련된 유사교과과목을 어떻게 인권과목과 구분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실제 대학에 개설된 과목 중 인권과 관련된 다수의 교과목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로 법학과에서 개설되고 있는 헌법과 기본권과 같은 과목이외의 다수과목이나, 사회과학계열대학에서 성장하고 있는 NGO와 시민사회론, 사회불평등과 계급, 국제사회와 NGO와 같은 교과목들이다. 이와 함께 전국의 대학들에는 인권교육과 유사한 교육, 인권교육과 유사한 개념이면서도 오히려 인권교육 개념의 이해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과목들도 다수가 개설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성교육, 도덕교육, 법교육, 시민교육과 같은 제목이나 이와 유사한 제목을 단 교과목들이 이에 해당되고 이들 과목에 대한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인권의식의 고양이나 체화보다는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관련된 사회복지학이나 사회복지학과, 청소년학과 등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포함할 것인가 여부, 법학과의 과목 중 인권과 관련된 것은 인권과목에 포함하고, 사회복지학과의 대다수의 과목은 인권관련과목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여성학, 노인학, 청소년학과 같은 구체적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와 문화적 다원성에 기초한 다문화사회론과 같은 교과목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실제 분류과정에서 대두되었다.

이러한 경험적 분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목의 제목을 통한 1차 분류와 함께 실제 강의를 진행하는 지침으로서 강의계획서를 수집하여 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였다. 제목을 통해 인권 교과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유사과목들에 대해서는 이 강의 계획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인권과목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완전히 인권 교과목에 해당한다고 확정할 수 없는 일부 과목들(예를 들어, 인권과 관련된 강의나 학습내용이 2주 내외로 포함된 강의 등)에 대해서는 인권관련과목으로 분류하여 인권과목과 구분하였다. 최종적으로 인권 교과목은 최소한 7주이상의 기간에 걸쳐 그 교과 내용이 직접적으로 인권 지식(인권의 세부 내용과 인권의 발달과정 및 인권조직 등), 인권의식, 인권행동, 인권신장을 위한 적극적 참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과목으로 경험적 정의를 구체화하였다.

2. 조사 개요

1) 배경 및 취지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를 통해 대학교 인권교육 현황을 파악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인권교육에 대한 대학관계자들의 인식을 점진적으로 증진시키고자 노력해 왔다. 또한 UN이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을 통해 고등교육기관 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해옴에 따라 이행 기간 내 대학교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이 요청되는 상황이다. 이에, 2013-2014년 대학교 인권교육의 정확한 현황과 인권교육 확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개발, 그리고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국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4. 5. 12 ~ 5. 23 (1차 조사), 5. 26 ~ 6. 3 (2차 조사)
- 조사방법 : 서면조사(전자공문)
- 조사대상 : 전국 국공립 및 사립대학(교) 총 365개 대학교

* 2012년 조사 시에는 조사대상 대학이 총 432개교였지만, 본 조사에서는 이중 인권교육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67개 대학을 제외한 365개 대학을 조사대상대학으로 선정하였다.

** 본 조사에서 제외된 대학: 폴리텍 대학(25개), 전공대학(6개), 사내 대학(7개), 원격대학(대학), 원격대학(전문), 신학대학원, 각종대학(구세군 대학) 등.

3) 조사 대상 인권관련 교과목의 범위

인권교과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각 대학의 수업교과목 관리자의 연락처

를 파악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교과목 명단 및 강의계획서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가. 교과목에 ‘인권’이나 ‘기본권’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

예시) 기본권론, 현대사회와 인권 등

나. ‘평화’, ‘NGO’, ‘시민사회’라고 명시되어 있는 교과목

예시) 시민사회론 등

다. 여성, 노인, 청소년,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와 관련된 교과목

예시) 장애인복지론 등

4) 인권과목과 인권관련 과목의 확인

위의 내용을 기초로 한 교과목 리스트를 수집한 결과, 총 6,654개의 교과목이 수집되어 1차적으로 교과목명을 기준으로 인권과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과목을 제외한 2,787개의 과목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 과목에 대하여 해당과목의 수업계획서를 일일이 대조하고 해당과목의 수업계획서가 없는 경우에는 설강대학의 동일과목 혹은 유사과목의 수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1,083개의 과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 대상과목을 다시 수집된 총 1,058개의 강의계획서(이중에는 104개의 매우 양호하지 않은 계획서도 포함)와 명시된 교과목명을 중심으로 ‘인권 과목’과 ‘인권 관련 과목’으로 구분하였다. 강의계획서가 완비된 교과목을 일일이 대조해본 결과, “00 인권”, “인권과 00” 식의 교과목명을 가진 과목은 거의 대부분 ‘인권 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제시한 모든 과목은 우선 크게 ① 일반인권/사회 관련 ② 법/범죄 관련 ③ 여성 관련 ④ 다문화/소수자 관련 ⑤ 평화/전쟁/정치 관련 ⑥ 사회복지 관련 과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인권 관련 내용이 2주 이상 포함된 과목을 ‘인권 관련 교과목’으로 선정하였다. ‘인권

교과목'은 '인권관련 교과목' 중 교과목 이름이 '00 인권' 과 같은 것으로 전체가 인권 내용을 주제로 하는 교과목을 포함하고, 인권 관련 내용이 절반(7주) 이상인 교과목을 선정하였다.

한편, 강의계획서를 분석해본 결과, 대부분의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론 등과 같이 시민사회와 인권이 밀접하게 연결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과목들은 최초의 기대와는 다르게 인권과목으로 분류할 수 없었다. 예외적으로 강의계획서에 2주 혹은 7주 이상을 인권과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경우는 각각 '인권 관련 과목', '인권 과목'으로 분류하였다. 마찬가지로 '현대사회와 윤리문제'와 같은 외형상 '인권 관련 과목'처럼 보이는 과목들도 인권과는 무관한 경우가 있었다.

280개의 '여성학'관련 과목에서 160개 과목은 강의계획서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대체로 강의 내용들이 매우 유사하였다.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강의 내용들은 주로 성에 따른 차별/차이, 성문화, 성희롱, 성폭력, 노동 불평등, 결혼 및 기타 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인권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반면에, '사회복지' 관련 과목에서는 대부분의 강의들이 소수자와 관련된 일반 복지 이론 및 방법론, 요양 산업 관련 등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해당과목들은 '인권 과목' 또는 '인권 관련 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본 부류에서 제외하였다.

[표 III-1] 개설 인권 관련 교과목의 학문영역별 분류

연번	영역	인권 및 인권관련 과목
1	인권일반 · 사회	인권의 이해, 현대사회와 인권, 인권사회학,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환경과 인권, 시민사회와 NGO, 사회계층과 불평등, 인권과 교육, 인권과 NGO, 기타 인권
2	법 · 범죄	법과 인권, 국제인권법, 기본권론, 헌법, 노동법, 범죄와 인권, 이민법과 인권, 공익인권법, 피해자학,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군인/경찰/검찰, 사회보장법, 시민사회와 법, 기타 관련과목
3	여성	여성학, 법여성학, 현대사회와 여성, 여성과 인권, 기타 여성관련 과목
4	다문화 · 소수자	다문화사회의 이해, 국제이주와 난민, 북한사회와 탈북자 인권, 아동/청소년 인권, 장애와 차별 탐구, 노인문제연구, 기타 다문화 과목
5	평화 · 전쟁 · 정치	인권과 국제정치, 전쟁과 평화,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시민정치론
6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여성복지론, 노인복지론, 다문화복지론, 가족복지론, 지역사회복지론, 노동복지정책론, 사회문제론,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이해, 교정복지론, 교육복지론

- 조사의 한계 : 조사 비협조 대학(58개 대학) 및 강의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은 인권 관련 교과목에 대한 검토는 본 조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3. 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대학 중 회수율

먼저 조사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상대학 중 개설과목을 통보해준 대학의 비율을 회수율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확인해보았다. 그 결과, 조사대상 총 365개 대학 중 307개 대학이 회신하였는데 그 회수율은 84%이다. 물론 각 대학의 모든 인권 혹은 인

권관련과목에 대한 명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 회수율이 응답대학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답해왔는지를 확인할 수 정확한 지표는 아니라 할 수 있는 한계는 있다.

[표 III-2]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서 회수율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소계	종합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특수대학	특별법법인	소계	종합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대상대학	365	59	32	10	1	9	6	1	306	155	130	2	19
회신대학	307	56	31	10	1	9	5	0	251	128	105	0	18
회수율	84%	95%	97%	100%	100%	100%	83%	0%	82%	83%	81%	0%	95%

2)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가. 개설현황 개요

2013-2014년 전국 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을 통해볼 때, 응답대학 중 이 교과목을 최소 하나 이상 개설한 비율은 57%이며, 개설 학교당 평균 6.22개의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이를 다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국공립대학(교)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비율은 75%이며, 개설 대학별로 평균 8.07개 교과목이 개설되었으며, ② 사립대학(교)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비율은 53%이며, 개설 대학별로 평균 5.64개의 교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 2013-2014년 전국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회신대학	307	56	251
개설학교	174	42	132
개설비율	57%	75%	53%
개설교과목 수	1,083	339	744
개설대학별 교과목 수	6.22	8.07	5.64

나. 대학 유형별 개설현황

국공립대학(교)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비율은 국공립대학(교) 중 방송통신대학 100%, 종합대학 87%, 교육대학 70%, 특수대학 60%, 전문대학 44% 순으로, 상대적으로 전문대학의 개설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4] 2013-2014년 국공립대학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종합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특수대학	특별법법인
회신대학	56	31	10	1	9	5	0
개설학교	42	27	7	1	4	3	N/A
개설비율	75%	87%	70%	100%	44%	60%	N/A
개설교과목 수	339	275	29	14	11	10	N/A

사립대학(교)의 경우 개설비율은 사이버대학 72%, 종합대학 70%, 전문대학 29% 순으로 전문대학의 개설비율이 낮았다.

[표 III-5] 2013-2014년 사립대학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구분	전체	사립대학(교)			
		종합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회신대학	251	128	105	0	18
개설학교	132	89	30	N/A	13
개설비율 (%)	53%	70%	29%	N/A	72%
개설교과목 수	744	578	137	N/A	29

다. 인권 관련 교과목의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개설과목을 6개의 대분류와 59개의 소분류로 세분화하였다. 이를 통해 ‘인권 관련 교과목’을 학문영역별로 살펴보면 여성 관련 226과목, 법·범죄 관련 218과목, 사회복지 관련 217 과목, 인권일반·사회 관련 174 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139과목, 평화·전쟁·정치 관련 109과목 순으로 사회복지 관련 과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국공립대학(교)은 법·범죄 관련 85과목, 여성 관련 63과목, 인권일반·사회 관련 62과목, 사회복지 관련 52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42과목, 평화·전쟁·정치 35과목 순으로 파악되었다.

② 사립대학(교)은 사회복지 관련 165과목, 여성 관련 163과목, 법·범죄 관련 133과목, 인권일반·사회 관련 112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97과목, 평화·전쟁·정치 74과목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6] 2013-2014년 전국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의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연번	대분류	소분류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1	인권일반·사회	인권의 이해	23	8	15
		현대사회와 인권	31	11	20

		인권사회학	11	3	8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7	1	6
		사회적 이슈와 인권	14	11	3
		환경과 인권	1		1
		시민사회와 NGO	56	16	40
		사회계층과 불평등	3		3
		인권과 교육	11	6	5
		인권과 NGO	7	3	4
		기타 인권	10	3	7
		소계	174	62	112
2	법 · 범죄	법과 인권	63	19	44
		국제인권법	21	7	14
		기본권론	66	28	38
		헌법	28	9	19
		노동법	3	2	1
		범죄와 인권	13	10	3
		이민법과 인권	2		2
		공익인권법	3	2	1
		피해자학	7	3	4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군인, 경찰, 검찰	6	2	4
		사회보장법	1		1
		시민사회와 법			
		기타	5	3	2
소계	218	85	133		
3	여성	여성학	113	32	81
		여성과 법률	55	17	38
		현대사회와 여성	51	13	38
		여성과 인권	7	1	6
		기타			
소계	226	63	163		
4	다문화 · 소수자	다문화사회의 이해	97	31	66
		국제이주와 난민			

		북한사회와 탈북자 인권	14	6	8
		아동, 청소년 인권	7	2	5
		장애와 차별 탐구	11	3	8
		노인문제연구	5		5
		기타	5		5
		소계	139	42	97
5	평화 · 전쟁 · 정치	인권과 국제정치	37	9	28
		전쟁과 평화	61	23	38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6	1	5
		시민정치론	5	2	3
		소계	109	35	74
6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론	46	10	36
		아동복지론	40	8	32
		청소년복지론	17	2	15
		여성복지론	13	5	8
		노인복지론	43	9	34
		다문화복지론	4	1	3
		가족복지론	1	1	
		지역사회복지론	5		5
		노동복지정책론	3	1	2
		사회문제론	3		3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	14	7	7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이해	27	7	20
		교정복지론			
		교육복지론	1	1	
		기타			
		소계	217	52	165
전체			1,083	339	744

③ 국공립대학(교)의 학문영역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은 국공립대학교 중 종합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학문영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인권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대학은 다문화 · 소수자 관련(66%), 전문대학은 사회복지 관련(73%), 특수대학은 법 · 범죄 관련 과목(80%)의 개설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7] 2013-2014년 국공립대학(교)의 인권 관련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구 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종합 대학	교육 대학	방송통신 대학	전문 대학	특수 대학	특별법 법인
인권일반 · 사회	62 (18%)	54 (20%)	2 (7%)	4 (29%)	1 (9%)	1 (10%)	N/A
법 · 범죄	85 (25%)	68 (25%)	4 (14%)	5 (36%)	0 (0%)	8 (80%)	N/A
여성	63 (19%)	57 (21%)	2 (7%)	2 (14%)	1 (9%)	1 (80%)	N/A
다문화 · 소수자	42 (12%)	21 (8%)	19 (66%)	1 (7%)	1 (9%)	0 (0%)	N/A
평화 · 전쟁 · 정치	35 (10%)	33 (12%)	2 (7%)	0 (0%)	0 (0%)	0 (0%)	N/A
사회복지	52 (15%)	42 (15%)	0 (0%)	2 (14%)	8 (73%)	0 (0%)	N/A
계	339 (100%)	275 (100%)	29 (100%)	14 (100%)	11 (100%)	10 (100%)	

④ 사립대학(교)의 학문영역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은 사립대학교 중 종합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학문영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인권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나 전문대학은 72%로 사회복지 과목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III-8] 2013-2014년 사립대학(교)의 인권 관련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구분	전체	사립대학(교)			
		종합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인권일반 · 사회	112 (15%)	103 (18%)	2 (1%)	N/A	7 (24%)
법 · 범죄	133 (18%)	128 (22%)	4 (3%)	N/A	1 (3%)
여성	163 (22%)	151 (26%)	8 (6%)	N/A	4 (14%)
다문화 · 소수자	97 (13%)	67 (12%)	25 (18%)	N/A	5 (17%)
평화 · 전쟁 · 정치	74 (10%)	70 (12%)	0 (0%)	N/A	4 (14%)
사회복지	165 (22%)	59 (10%)	98 (72%)	N/A	8 (28%)
계	744 (100%)	578 (100%)	137 (100%)		29 (100%)

라. 대학/대학원별 개설현황

개설되어 있는 ‘인권 관련 교과목’을 대학/대학원별로 살펴보면 대학(학부과정) 835과목, 대학원(석·박사 과정) 248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9] 대학/대학원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대학	835	232	603
대학원	일반대학원	122	57
	전문대학원	66	35
	특수대학원	60	49
소계	248	107	141

대학은 ‘인권 관련 교과목’ 중 여성 관련 과목(24%), 대학원은 법 · 범죄 관련 과목(32%)의 비율이 가장 높다.

① 대학은 여성 관련 197과목(24%), 사회복지 관련 185과목, 법·범죄 관련 139과목, 인권일반·사회 관련 132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100과목, 평화·전쟁·정치 관련 82과목 순으로 조사되었다.

② 대학원은 법·범죄 관련 79과목(32%), 인권일반·사회 관련 42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39과목, 사회복지 관련 32과목, 여성 관련 29과목, 평화·전쟁·정치 27과목 순으로 조사되었다.

③ 대학원의 편제별로 보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경우 교과목 분야 별로 고르게 인권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반면, 전문대학원의 경우 법·범죄 관련(73%) 과목의 개설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의 커리큘럼 상 기본권 관련 수업이 많은 것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III-10] 대학/대학원의 인권 관련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구분	전체	대학	대학원			
			소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인권일반·사회	174 (16%)	132 (16%)	42 (17%)	22 (18%)	6 (9%)	14 (23%)
법·범죄	218 (20%)	139 (17%)	79 (32%)	24 (20%)	48 (73%)	7 (12%)
여성	226 (21%)	197 (24%)	29 (12%)	18 (15%)	3 (5%)	8 (13%)
다문화·소수자	139 (13%)	100 (12%)	39 (16%)	23 (19%)	6 (9%)	10 (17%)
평화·전쟁·정치	109 (10%)	82 (10%)	27 (11%)	16 (13%)	1 (2%)	10 (17%)
사회복지	217 (20%)	185 (22%)	32 (12%)	19 (16%)	2 (3%)	11 (18%)
계	1,083 (100%)	835 (100%)	248 (100%)	122 (100%)	66 (100%)	60 (100%)

마. 전공별 개설현황

전공별로 개설되어 있는 ‘인권 관련 교과목’은 사회계열 449과목, 법학계열 234과목, 교양 교과 231과목, 교육/사범계열 75과목, 기타 계열 34과목, 의약/간호계열 26과목, 인문계열 20과목, 예체능계열 7과목, 신학계열 4과목, 경영계열 3과목 등 사회계열(41%)에서의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비중이 가장 높다.

① 국공립대학(교)의 전공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은 사회계열(38%), 법학계열(29%), 교육/사범계열(16%), 교양 교과(11%), 인문계열(3%), 기타 계열(2%), 예체능계열(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② 사립대학(교)의 전공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은 사회계열(43%), 교양 교과(26%), 법학계열(18%), 기타 계열(4%), 교육/사범계열 및 의약/간호계열(3%), 신학계열 및 인문계열(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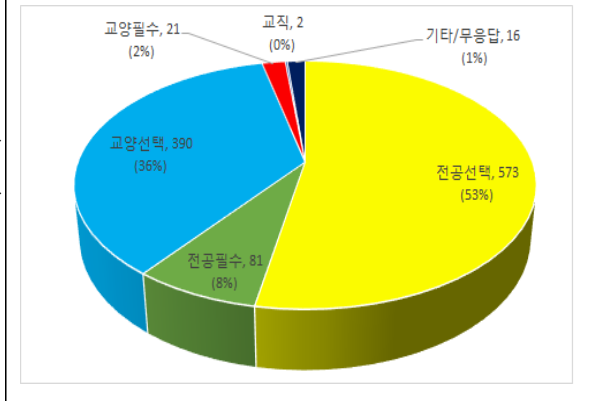
[표 III-11] 대학/대학원의 인권 관련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경영계열	3 (0%)	0 (0%)	3 (0%)
교육/사범계열	75 (7%)	53 (16%)	22 (3%)
기타	34 (3%)	6 (2%)	28 (4%)
법학계열	234 (22%)	97 (29%)	137 (18%)
사회계열	449 (41%)	130 (38%)	319 (43%)
신학계열	4 (0%)	0 (0%)	4 (1%)
예체능계열	7 (1%)	4 (1%)	3 (0%)
의약/간호계열	26 (2%)	1 (0%)	25 (3%)
인문계열	20 (2%)	10 (3%)	10 (1%)
교양	231 (21%)	38 (11%)	193 (26%)
계	1,083 (100%)	339 (100%)	744 (100%)

바. 과목성격별 개설현황

교과목 성격별로 분류해 본 바에 의하면, 전공선택 53%, 전공필수 8%, 교양선택 36%, 교양필수 2%, 기타 및 무응답 1%로 선택교과가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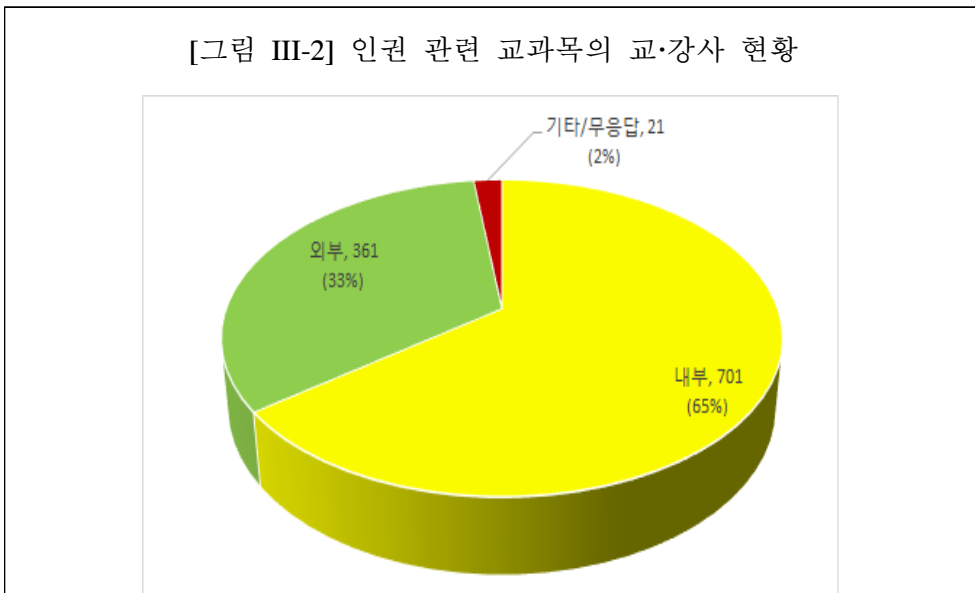
[그림 III-1] 인권 관련 과목 성격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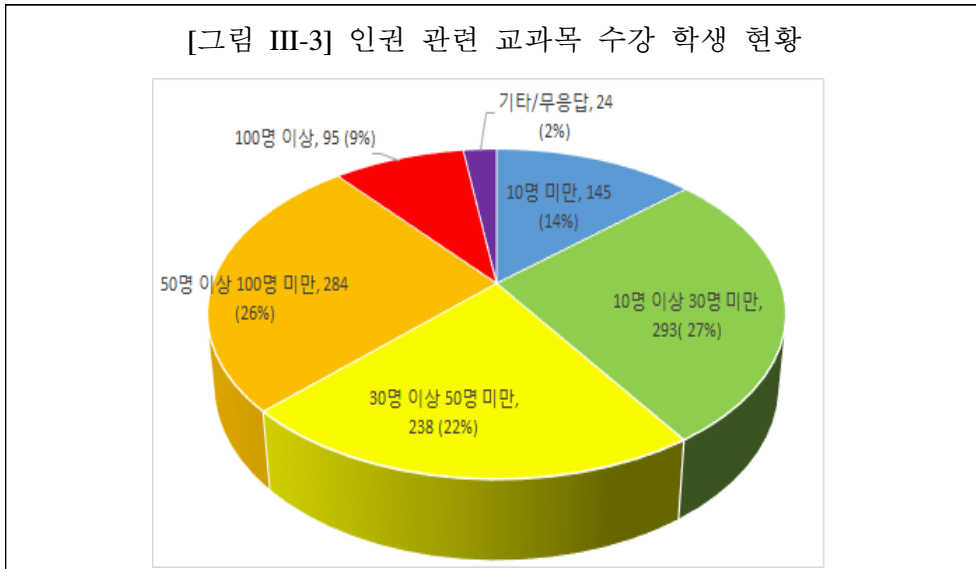
사. 교·강사 및 학생 현황

① 인권 관련 교과목의 교·강사는 학교 내부 65%, 학교 외부 33%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2] 인권 관련 교과목의 교·강사 현황



② 인권 관련 교과목의 교과목별 학생 수는 10명 미만 11.7%, 10명 이상 30명 미만 27.5%, 30명 이상 50명 미만 25.9%, 50명 이상 100명 미만 23.8%, 100명 이상 9.3% 으로 조사되었다.



3)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

가. 개설현황 개요

2013-2014년 전국 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비율은 응답대학의 31%이며, 개설 학교당 평균 6.60개의 교과목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전체 응답대학교로 환산하면, 평균 2.08개에 불과하다.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과목이 겨우 2개에 불과한 형편임을 알 수 있다. 이를 전체 조사대학 365개를 고려할 경우 인권과목 개설수는 1.74개로 급감함을 알 수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는 1.70과목이며 국공립대학은 이보다 조금 많은 3.83과목으로 나타났다. 전국대학 평균 2과목 미만의 인권과목 개설수와 강좌 당 평균 25명의 수강학생수를 고려해볼 경우, 우리나라 대학의 인권교육의 후진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① 국공립대학(교)의 ‘인권 교과목’ 개설비율은 44%이며, 개설 대학별로 평균 8.63개 교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단 한과목도 개설하지 않은 대학이 전체의 56%에 해당하고 있다.

② 사립대학(교)의 ‘인권 교과목’ 개설비율은 29%이며, 개설 대학별로 평균 5.93개의 교과목이 개설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립대학의 인권과목 미개설 비율은 무려 71%에 달한다.

[표 III-12] 2013-2014년 전국대학교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회신대학	305	54	251
개설학교	96	24	72
개설비율	31%	44%	29%
개설과목 수	634	207	427
개설대학별 과목 수	6.60	8.63	5.93
대학별 개설과목 수	2.07	3.83	1.70

나. 대학 유형별 개설현황

국공립대학(교)의 개설비율을 대학유형별로 세분화해보면 ‘인권 교과목’ 개설비율은 방송통신대학 100%, 교육대학 60%, 종합대학 45%, 전문대학 22%, 특수대학 20% 순이며, 상대적으로 전문대학과 특수대학의 개설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3] 2013-2014년 국공립대학의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종합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특수대학	특별법법인
회신대학	52	31	10	1	9	5	0
개설학교	24	14	6	1	2	1	N/A
개설비율	44%	45%	60%	100%	22%	20%	N/A
개설교과목 수	207	165	22	12	5	3	N/A

사립대학(교)의 경우 개설비율은 종합대학 36%, 사이버대학 33%, 전문대학 19% 순으로 전반적으로 ‘인권 교과목’의 개설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II-14] 2013-2014년 사립대학의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

구분	전체	사립대학(교)			
		종합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회신대학	251	128	105	0	18
개설학교	72	46	20	N/A	6
개설비율 (%)	29%	36%	19%	N/A	33%
개설교과목 수	427	324	90	N/A	13

다. ‘인권 교과목’의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표 III-15>는 개설되어 있는 ‘인권 교과목’을 59개 세부 학문영역별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법·범죄 관련 160과목, 사회복지 관련 116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109과목, 인권일반·사회 관련 105과목, 평화·전쟁·정치 관련 82과목, 여성 관련 62과목 순으로 ‘인권 교과목’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① 국공립대학(교)는 법·범죄 관련 65과목, 인권일반·사회 39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30과목, 평화·전쟁·정치 28과목, 사회복지 관련 27과목, 여성 관련 18과목 순으로 조사되었다.

② 사립대학(교)는 법·범죄 관련 95과목, 사회복지 관련 89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79과목, 인권일반·사회 66과목, 평화·전쟁·정치 관련 54과목, 여성 관련 44과목 순으로 조사되었다.

전체적으로 사립대학이 국공립대학에 비해서 해당 소분류과목에 대한 개설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립대학의 경우 인권과목의 다양성이 국공립에 비하여 더 낮다고 할 수 있다.

[표 III-15] 2013-2014년 전국대학교 인권 교과목의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연번	대분류	소분류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1	인권일반·사회	인권의 이해	19	6	13
		현대사회와 인권	31	11	20
		인권사회학	11	3	8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7	1	6
		사회적 이슈와 인권	10	7	3
		환경과 인권	1		1
		시민사회와 NGO	1		1
		사회계층과 불평등			
		인권과 교육	10	6	4
		인권과 NGO	7	3	4
		기타 인권	8	2	6
		소계	105	39	66
2	법·범죄	법과 인권	59	17	42
		국제인권법	19	6	13
		기본권론	55	27	28
		헌법	9	4	5
		노동법			
		범죄와 인권	13	10	3
		이민법과 인권			
		공익인권법	1		1
		피해자학	2	1	1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			
		군인, 경찰, 검찰			
		사회보장법			
		시민사회와 법			

		기타	2		2
		소계	160	65	95
3	여성	여성학	2	1	1
		여성과 법률	53	16	37
		현대사회와 여성			
		여성과 인권	7	1	6
		기타			
		소계	62	18	44
4	다문화 · 소수자	다문화사회의 이해	86	25	61
		국제이주와 난민			
		북한사회와 탈북자 인권	2	2	
		아동, 청소년 인권	3		3
		장애와 차별 탐구	10	3	7
		노인문제연구	4		4
		기타	4		4
		소계	109	30	79
5	평화 · 전쟁 · 정치	인권과 국제정치	21	5	16
		전쟁과 평화	59	22	37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2	1	1
		시민정치론			
		소계	82	28	54
6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론	14	4	10
		아동복지론	30	7	23
		청소년복지론	8		8
		여성복지론	3	1	2
		노인복지론	23	4	19
		다문화복지론	2	1	1
		가족복지론	1	1	
		지역사회복지론	1		1
		노동복지정책론	2	1	1
		사회문제론	1		1
		복지국가 및 복지정책	8	3	5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의 이해	23	5	18
	교정복지론			
	교육복지론			
	기타			
	소계	116	27	89
전체		634	207	427

국공립대학(교)의 학문영역별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을 보면 종합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학문영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인권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대학은 다문화·소수자 관련, 전문대학은 사회복지 관련 과목의 개설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6] 2013-2014년 국공립대학(교)의 ‘인권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종합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특수대학	특별법법인
인권일반·사회	39 (19%)	32 (19%)	2 (9%)	4 (33%)	0 (0%)	1 (33%)	N/A
법·범죄	65 (31%)	55 (33%)	4 (18%)	5 (42%)	0 (0%)	1 (33%)	N/A
여성	18 (9%)	15 (9%)	0 (0%)	2 (17%)	0 (0%)	1 (33%)	N/A
다문화·소수자	30 (14%)	15 (9%)	14 (64%)	1 (8%)	0 (0%)	0 (0%)	N/A
평화·전쟁·정치	28 (14%)	26 (16%)	2 (9%)	0 (0%)	0 (0%)	0 (0%)	N/A
사회복지	27 (13%)	22 (13%)	0 (0%)	0 (0%)	5 (100%)	0 (0%)	N/A
계	207 (100%)	165 (100%)	22 (100%)	12 (100%)	5 (100%)	3 (100%)	N/A

사립대학(교)의 경우 종합대학과 사이버대학은 학문영역별로 비교적 고르게 ‘인권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으며, 전문대학은 사회복지 관련 과목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17] 2013-2014년 사립대학(교)의 ‘인권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구분	전체	사립대학(교)			
		종합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사이버대학
인권일반 · 사회	66 (15%)	59 (18%)	2 (2%)	N/A	5 (38%)
법 · 범죄	95 (22%)	94 (29%)	0 (0%)	N/A	1 (8%)
여성	44 (10%)	44 (14%)	0 (0%)	N/A	0 (0%)
다문화 · 소수자	79 (19%)	50 (15%)	25 (28%)	N/A	4 (31%)
평화 · 전쟁 · 정치	54 (13%)	54 (17%)	0 (0%)	N/A	0 (0%)
사회복지	89 (21%)	23 (7%)	63 (70%)	N/A	3 (23%)
계	427 (100%)	324 (100%)	90 (100%)	N/A	13 (100%)

라. 대학/대학원별 개설현황

개설되어 있는 ‘인권 교과목’ 은 대학(학부과정) 471과목, 대학원(석·박사 과정) 163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대학원이 76, 전문대학원이 50 그리고 특수대학원이 37개의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표 III-18] 대학/대학원의 ‘인권 교과목’ 개설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대학	471	132	339
대학원	일반대학원	76	34
	전문대학원	50	24
	특수대학원	37	30
소계	163	75	88과목

대학은 사회복지 관련 및 법 · 범죄 관련 과목의 개설 비율(21%)이 높고, 대학원은 법 · 범죄 관련 과목(38%)의 개설 비율이 높다.

① 대학은 사회복지 관련 101과목, 법·범죄 관련 98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84과목, 인권일반·사회 관련 75과목, 평화·전쟁·정치 관련 62과목, 여성 관련 51과목 순으로 파악되었다.

② 대학원은 법·범죄 관련 62과목, 인권일반·사회 30과목, 다문화·소수자 관련 25과목, 평화·전쟁·정치 20과목, 사회복지 15과목, 여성 관련 11과목 순으로 파악되었다.

③ 대학원의 편제별로는 보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경우는 비교적 고르게 ‘인권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반면, 전문대학원의 경우 법·범죄 관련 교과목(76%)의 개설 비중이 매우 높다. 전문대학원의 경우 절대 다수가 법학대학원임을 고려하면 이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표 III-19] 대학/대학원의 ‘인권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구분	전체	대학	대학원			
			소계	일반 대학원	전문 대학원	특수 대학원
인권일반·사회	105 (17%)	75 (16%)	30 (18%)	17 (22%)	6 (12%)	7 (19%)
법·범죄	160 (25%)	98 (21%)	62 (38%)	20 (26%)	38 (76%)	4 (11%)
여성	62 (10%)	51 (11%)	11 (7%)	3 (4%)	2 (4%)	6 (16%)
다문화·소수자	109 (17%)	84 (18%)	25 (15%)	15 (20%)	1 (2%)	9 (24%)
평화·전쟁·정치	82 (13%)	62 (13%)	20 (12%)	13 (17%)	1 (2%)	6 (16%)
사회복지	116 (18%)	101 (21%)	15 (9%)	8 (11%)	2 (4%)	5 (14%)
계	634 (100%)	471 (100%)	163 (100%)	76 (100%)	50 (100%)	37 (100%)

마. 전공별 개설현황

전공별로 개설되어 있는 ‘인권 교과목’ 은 사회계열 211과목, 법학계열 186과목, 교양 교과 119과목, 교육/사범계열 56과목, 기타 계열 24과목, 의약/간호계열 18과목, 인문계열 14과목, 신학계열 3과목, 예체능계열 2과목, 경영계열 1과목 등 사회계열(33%)과 법학계열(29%)에서의 ‘인권 교과목’ 개설 비중이 가장 높다.

① 국공립대학(교)의 전공별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은 법학계열(39%), 사회계열(28%), 교육/사범계열(18%), 교양 교과(9%), 인문계열(4%), 기타 계열(2%)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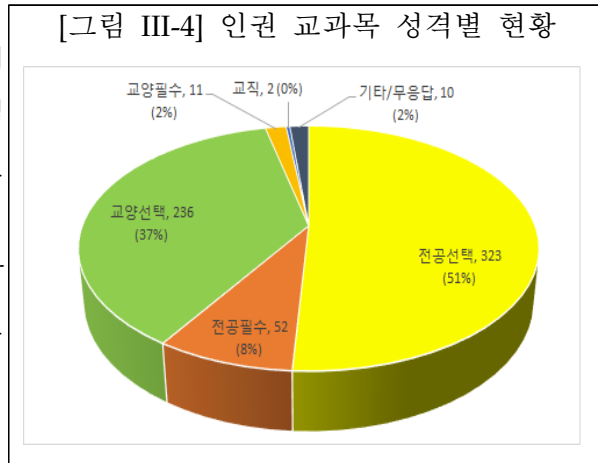
② 사립대학(교)의 전공별 ‘인권 교과목’ 개설 현황은 사회계열(36%), 법학계열(25%), 교양 교과(24%), 기타 계열(5%), 교육/사범계열 및 의약/간호계열(4%), 신학계열 및 인문계열(1%)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0] 대학/대학원의 인권 관련 교과목 학문영역별 개설현황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경영계열	1 (0%)	0 (0%)	1 (0%)
교육/사범계열	56 (9%)	38 (18%)	18 (4%)
기타	24 (4%)	4 (2%)	20 (5%)
법학계열	186 (29%)	81 (39%)	105 (25%)
사회계열	211 (33%)	57 (28%)	154 (36%)
신학계열	3 (0%)	0 (0%)	3 (1%)
예체능계열	2 (0%)	1 (0%)	1 (0%)
의약/간호계열	18 (3%)	0 (0%)	18 (4%)
인문계열	14 (2%)	8 (4%)	6 (1%)
교양	119 (19%)	18 (9%)	101 (24%)
계	634 (100%)	207 (100%)	427 (100%)

바. 과목성격별 개설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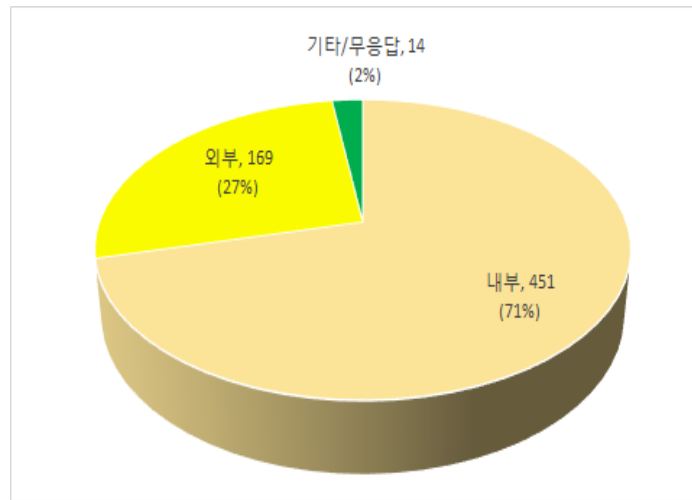
교과목 성격별로 분류해 본 바에 의하면, 전공선택 51%, 전공필수 8%, 교양선택 37%, 교양필수 2%, 교직 이수 0%, 기타 및 무응답 2%로 선택교과가 압도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사. 교·강사 및 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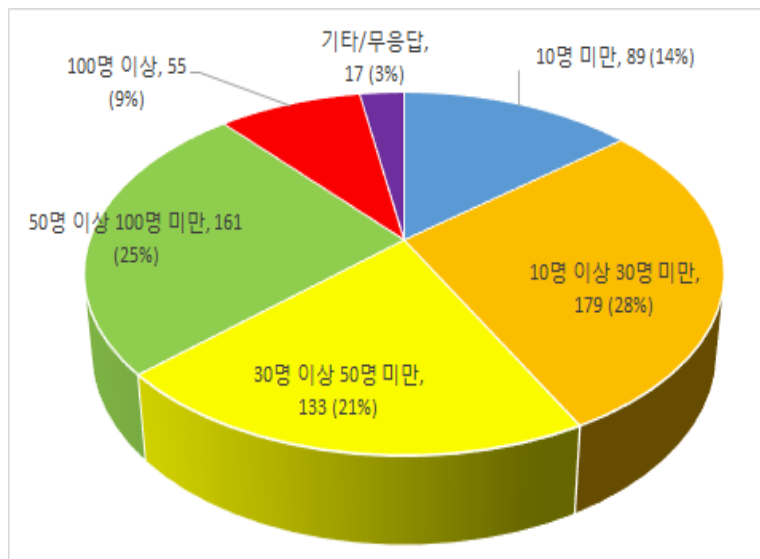
① ‘인권 교과목’의 교·강사는 학교 내부 71%, 학교 외부 27%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5] 인권 교과목의 교·강사 현황



② ‘인권 교과목’의 교과목별 학생 수는 10명 미만 14%, 10명 이상 30명 미만 28%, 30명 이상 50명 미만 21%, 50명 이상 100명 미만 25%, 100명 이상 9%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III-6] 인권 교과목 수강 학생 현황



4) 대학교 건의 및 요청사항

대학으로부터 제안된 요청사항들을 개별 대학명을 포함하여 재정지원, 교강사, 인권교육자료, 정책 및 제도개선 및 조사 등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가. 재정지원 관련

- 인권 강좌 확충을 위해 강좌 개설시 재정적인 지원 필요하다(대신대)
- 다문화 정책 추진과 관련한 예산지원의 총액은 막대하나 대학의 다문화 교육과 관련된 지원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공주대)

나. 교·강사 관련

- 전문 인력 부족 및 인력정보의 부족하다(동남보건대)
- 강의 전문 인력의 부족하다(동신대)
- 대학교 내 인권 관련 강좌를 담당할 전문 인력 부족하다(부천대)
- 지방이라 교·강사 섭외가 어렵다(충북대)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 인권 관련 강사를 파견하여 인권교육을 강화하였으면 한다(한라대)

다. 인권교육자료 관련

- 인권 관련 강의 교재의 부재, 국내 및 외국의 인권사례집 필요하다(동신대)
- 복지제도의 이론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현상에 관한 부분도 수업에 필요하지만, 사회현상에 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다(여주대)

라. 정책, 제도 개선 관련

- 인권 관련 강좌에 대한 정보 부족하다(대전보건대)
- 다양한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이 필요하다(안동대)
- 학문적 관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학과(사회학)의 교과목

과 내용이 유사하여 신규강의개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회복지학적 관점에서 약자에 대한 인권옹호 및 사회복지 개입이 충분히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신규 강의 개설 요청 시 이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충남대)

마. 조사 관련

- 사회복지학과 및 특수교육학부 등의 학과(부)의 경우는 전공교과목이 거의 인권과 관련한 과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전공을 제외한 교양부분에서 조사하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위덕대)

바. 기타

- 인권 관련 교육 및 행사에 학교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필요하다(남서울대)

4. 인권 관련 교과목에서 제외된 교과목 현황 분석

1) 조사대상 대학에서 제출한 총 과목 수

- 1차 조사(5. 12 ~ 5. 23) 및 2차 조사(5. 26 ~ 6. 3)에서 조사에 회신한 307개 대학에서 제출한 ‘인권 관련 교과목’은 총 6,654 과목이다.

- 이 중 대학에서 제출한 인권 관련 교과목 목록과 강의계획서 검토를 통해 5,571과목을 인권과 무관한 과목으로 분류하였다.

[표 III-21] 인권 관련 교과목 조사에서 제외된 교과목 현황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회신대학	307	56	251
제출한 교과목 수	6,654	1,183	5,471
인권 관련 교과목 수	1,083	339	744
제외된 교과목 수	5,571	844	4,727
제출한 교과목 중 제외된 교과목의 비중	84%	71%	86%

- 각 대학에서 ‘인권 관련 교과목’으로 판단했지만 분석에서 제외된 교과목들은 크게 ① 문화, 예술 및 스포츠 관련 ② 법 및 정책 관련 ③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 관련 ④ 사회복지 관련 ⑤ 상담 및 심리 관련 ⑥ 연구방법, 교수법 및 실습 관련 ⑦ 전공 일반 관련 ⑧ 정치, 시민사회 및 국제관계 관련 ⑨ 젠더 및 가족 관련 ⑩ 종교 및 선교 관련 ⑪ 철학 및 윤리 일반 관련 ⑫ 특수 및 교육 일반 관련 ⑬ 기타 과목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III-22] 인권 관련 교과목 조사에서 제외된 교과목의 영역별 분류

연번	영역	교과목 예시
1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영미청소년문학, 청소년문화, 여성의 삶과 미술, 아동미술
2	법 및 정책	민법총칙, 소비자보호와 법,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
3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	노인신체건강, 다문화간호, 아동발달, 노인케어학, 여성과 몸
4	사회복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장애인의 이해, 노인복지론, 케어복지론
5	상담 및 심리	상담이론과 실제, 청소년심리학, 아동심리 및 상담, 노인상담
6	연구방법, 교수법 및 실습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청소년지도방법론, 상급노인간호학실습
7	전공 일반	사회학개론, 다문화사회의 이해, 미래사회의 이해
8	정치, 시민사회 및 국제관계	NGO 전략경영, 민주주의와 선거, 시민교육, 비영리조직론
9	젠더 및 가족	여성과 사회, 가족과 젠더, 행복한 삶과 가족, 여성과 일
10	종교 및 선교	청소년치유사역, 기독교여성사, 목회윤리, 청소년설교
11	철학 및 윤리 일반	인간관계론, 현대사회와 윤리, 인간의 가치탐색, 간호윤리
12	특수 및 교육 일반	여성교육론, 청소년발달, 청각장애아교육, 특수아교육
13	기타	여성과 리더십, 청소년 리더십, 여성과 IT, 여성커리어개발

- 분석에서 제외된 교과목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관련 1,929과목, 특수 및 교육 일반 관련 1,258과목,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 관련 754과목, 연구방법·교수법 및 실습 관련 361과목, 상담 및 심리 관련 278과목 등의 순으로 개설되어 있다.

①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특수 및 교육 일반 관련(37%), 사회복지 관련(17%),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 관련(16%)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② 사립대학(교)의 경우 사회복지 관련(38%), 특수 및 교육 일반 관련(20%),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 관련(13%)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 이러한 결과는 인권 관련 내용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수업은 모두 인권 관련 교과목으로 인식하는 대학들의 인식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권 교과

목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을 상당 부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III-23] 개설 인권 관련 교과목의 영역별 분류

영역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문화, 예술 및 스포츠	147	22	125
법 및 정책	64	15	49
보건의료 및 재활치료	754	134	620
사회복지	1929	145	1784
상담 및 심리	278	33	245
연구방법, 교수법 및 실습	361	77	284
전공 일반	17	6	11
정치, 시민사회 및 국제관계	199	40	159
젠더 및 가족	117	18	99
종교 및 선교	53		53
철학 및 윤리 일반	341	31	310
특수 및 교육 일반	1258	314	944
기타	53	9	44
계	5,571	844	4,727

5. 인권 및 인권 관련 교과목의 개설 추이 분석

1) 연도별 개설 추이

2013-2014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현황을 2011년과 단순 비교하면, 개설대학의 비율이 14%(43%→5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교과목 수는 558개(525개→1,083개) 증가하였고, 개설대학별 교과목 수도 2.25개(3.97개→6.22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4] 2012, 2013-2014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비교

구분	2012년	2013-2014	증감
개설대학 비율	43%	57%	△14%
교과목 수	525개	1,083개	558개
개설대학별 교과목 수	3.97개	6.22개	2.25개

2002년 조사결과와 비교할 때, 개설비율은 32.7%(24.0%→56.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개설대학별 교과목 수도 4.74개(1.47개→6.22개)로 증가하여 4배 이상 신장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5] 대학교 인권 관련 교과목 연도별 추이

구분	개설대학 수	개설비율 (%)	개설과목 수	회신 대학/대상 대학 (회수율)
2002년	43	24.0	63	179/215 (83%)
2003년	49	60.1	71	81/245 (32%)
2007년	58	24.7	113	235/434 (54%)
2008년	17	32.1	50	53/53 (100%) ※ 국공립대학
2011년	76	45.0	164	169/433 (39%)
2012년	132	43.0	525	306/434 (71%)
2013-2014년	174	56.7	1,083	307/365 (84%)

국공립대학만을 조사한 2008년 조사와 비교할 때, 개설대학 비율은 32.1%(32.1%→75.0%), 개설대학별 교과목 수는 6.13개(2.94개→8.07개) 증가하여, 국공립대학의 경우 개설대학 수나 교과목 수가 3배 이상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III-26] 2008, 2013-2014년 국공립대학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비교

구분	2008	2013-2014	증감
개설대학 비율 (%)	32.1%	75.0%	△42.9%
교과목 수	50개	339개	289개
개설대학별 교과목 수	2.94개	8.07개	6.13개

2) 2014년 2학기 개설 전망

2014년 2학기에는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과목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① 2013년 2학기 ~ 2014년 1학기 현재 개설 중인 교과목이 존치될 경우, 2014년 2학기 191개 대학교가 895개 인권 관련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할 예정이기에 인권 교과목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② 국공립대학(교)은 38개 대학교 206개 교과목, 사립대학(교)은 153개 대학에서 689개 교과목을 개설 예정임을 밝혔다.

[표 III-27] 2014년 2학기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 예정

구분	전체	국공립대학(교)						사립대학(교)			
		소계	종합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	특수대학	소계	종합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추가 개설 대학 수	191	38	24	6	1	4	3	153	85	55	13
개설 예정 교과목 수	895	206	164	20	12	5	5	689	459	177	53

제4장 대학(원)생 대상 설문조사

1. 조사개요

대학의 인권과목 실태뿐만 아니라 인권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어진 연구기간 내에 일종의 예비조사적 성격을 띤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시간과 재원의 한계로 서울에 소재한 대표적인 대학들을 편의표집하고 비교목적 상 인권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과 타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들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진행된 설문조사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표본: 서울 소재 10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및 대학원생 621명에 대한 편의표집

- 조사기간: 2014년 5월 15일- 6월 11일

표본의 특성을 요약하면, 최종 응답자 621명 중 남학생이 42.6%이고 여학생이 55.4%였으며, 대학생이 89.4% 그리고 대학원생이 6.6%였다. 각 학년별 비율도 거의 유사하게 분포되어있으며, 군역을 필한 비율이 30%에 해당하였다. 연령의 분포는 19세에서 29세까지가 95%이고 30세 이상이 약 5%였다. 국공립대학에 재학하는 비율이 12.8%이고 사립대학에 재학비율이 87.2%로 나타났다. 무리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국대학의 구성요소들을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 조사응답자의 개인적 특성

구분		응답자 수 (%)
성별	남자	270 (42.6)
	여자	351 (55.4)
국적	대한민국	600 (94.6)

	기타	21 (3.4)
연령	19세 이하	17 (2.7)
	20~24세	425 (67.0)
	25~29세	138 (21.8)
	30세 이상	33 (5.2)
군필 여부	비해당 및 여자	348 (54.9)
	미필	95 (15.0)
	면제	5 (0.8)
	현역제대	146 (23.0)
	방위산업체 근무	4 (0.6)
	공익근무 및 보충역	18 (2.8)
종교	개신교	110 (17.4)
	불교	45 (7.1)
	가톨릭	58 (9.1)
	기타	377 (59.5)
	무교	15 (2.4)
부모의 직업	농축수산업 및 광업	5 (0.8)
	판매서비스직	52 (8.2)
	생산, 기능, 노무직	32 (5.0)
	자영업	132 (20.8)
	사무직	121 (19.1)
	전문, 관리, 경영직	111 (17.5)
	주부	5 (0.8)
	공무원, 군인	103 (16.2)
	무직, 퇴직	18 (2.8)
	기타	15 (2.4)
가정의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	8 (1.3)
	150만원 미만	25 (3.9)
	150~300만원	88 (13.9)
	300~500만원	143 (22.6)
	500~1000만원	164 (25.9)
	1000~1500만원	31 (4.9)
	1500만원 이상	28 (4.4)
	모르겠다	117 (18.5)

[표 IV-2] 조사응답자의 학교 관련 특성

구분		응답자 수 (%)
학계	학부 과정	567 (89.4)
	대학원 과정	42 (6.6)
대학	국공립	81 (12.8)
	사립	549 (86.6)
전공	공학계열	93 (14.7)
	인문계열	74 (11.7)
	사회계열	108 (17.0)
	자연과학계열	16 (2.5)
	교육/사범계열	53 (8.4)
	예체능계열	40 (6.3)
	법학계열	99 (15.6)
	경영계열	100 (15.8)
	예술계열	22 (3.5)
	기타	4 (0.6)
학년	1학년	141 (22.2)
	2학년	146 (22.7)
	3학년	126 (19.6)
	4학년	153 (24.1)
	대학원 과정	42 (6.6)

2. 조사결과 분석

1) 인권지식 및 의식 / 태도와 행동 / 침해 경험

가. 인권에 관한 지식

최종적으로 인권교육의 목표는 인권에 관한 지식과 참여의 증진을 통해 인권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의 참여태도와 참여행동의 고취라 하겠다. 따라서 현재 대학생들의 인권지식

및 의식, 태도와 행동 그리고 인권경험(침해와 차별과 같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인권에 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였다. ‘세계인권선언’을 부분적으로나마 읽어 본 학생은 59.6%이나 전혀 읽어보지 않은 학생도 40여 %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헌법의 인권 내용에 대한 인지 정도는 대체로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0% 정도 되지만, 헌법 내용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비율도 20%에 이르고 있다. 한국의 인권존중 상태는 존중(29.5)보다 존중되지 않음(33.4%)로 높게 인식되고 있다. 끝으로 해당대학의 인권존중 상태는 존중이 39.9%로 존중되지 않음(15.6%)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IV-3] ‘세계인권선언’을 읽어 본 경험

구분	대부분 읽어 봄	부분적으로 읽어 봄	전혀 읽어보지 않음
응답자 수 (%)	83 (13.1)	295 (46.5)	252 (39.7)

[표 IV-4] 헌법의 인권 내용에 대한 인지

구분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응답자 수 (%)	104 (16.4)	402 (63.4)	102 (16.1)	22 (3.5)

[표 IV-5]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

질문 내용	응답자 수 (%)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잘 모르고 있다	전혀 모르고 있다
한국사회의 인권상황	23 (3.6)	398 (62.8)	197 (31.1)	11 (1.7)
다른 나라나 국제 인권상황	5 (0.8)	239 (37.7)	345 (54.4)	40 (6.3)
귀 대학의 인권상황	12 (1.9)	151 (23.8)	406 (64.0)	60 (9.5)

[표 IV-6] 타인의 권리보다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동의

구분	매우 동의	다소 동의	중간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응답자 수 (%)	116 (18.3)	363 (57.3)	95 (15.0)	43 (6.8)	12 (1.9)

[표 IV-7] 우리나라 및 대학의 인권존중

질문 내용	응답자 수 (%)					
	매우 존중	다소 존중	중간	별로 존중되지 않음	전혀 존중되지 않음	모르겠다
한국의 인권 존중	12 (1.9)	175 (27.6)	220 (34.7)	186 (29.3)	26 (4.1)	11 (1.7)
귀 대학의 인권 존중	27 (4.3)	226 (35.6)	190 (30.0)	85 (13.4)	14 (2.2)	88 (13.9)

나. 인권침해 경험

대학 내에서 심각한 차별은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몇 가지 점에서는 다른 사항보다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로부터는 성적과 성별에 의한 차별을 약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생회 간부로부터의 차별(19.6%)로 상대적으로 높다. 나이에 의한 차별이 16.3%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른 요인에 비하여 의견표현의 자유(22.1%)나 의견묵살의 경험(24.3%)은 약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IV-8] 인권침해 경험

질문 내용	응답자 수 (%)			
	전혀 없다	한두번 정도	세네번 정도	다섯번 이상
교수로부터의 가정배경에 의한 차별	586 (92.4)	39 (6.2)	5 (0.8)	0 (0.0)
교수로부터의 성별에 의한 차별	421 (66.4)	160 (25.2)	36 (5.7)	13 (2.1)
교수로부터의 성적에 의한 차별	406 (64.0)	153 (24.1)	53 (8.4)	18 (2.8)
교수로부터의 학생회 간부 여부에 의한 차별	510 (80.4)	86 (13.6)	30 (4.7)	4 (0.6)
교수로부터의 외모에 의한 차별	541 (85.3)	63 (9.9)	19 (3.0)	5 (0.8)

의견 표현의 자유 침해	494 (77.9)	97 (15.3)	25 (3.9)	13 (2.1)
의견전달 목살	480 (75.7)	102 (16.1)	24 (3.8)	22 (3.5)
종교행사 강요	530 (83.6)	47 (7.4)	10 (1.6)	42 (6.6)
동아리 활동 제약	556 (87.7)	55 (8.7)	14 (2.2)	5 (0.8)
외부 집회 참여 제한	585 (92.3)	27 (4.3)	13 (2.1)	5 (0.8)
개인신상정보 공개	523 (82.5)	84 (13.2)	15 (2.4)	7 (1.1)
교수로부터의 신체적 폭력	619 (97.6)	10 (1.6)	1 (0.2)	0 (0.0)
교수에 의한 아이디어, 논문(리포트) 도용	616 (97.2)	12 (1.9)	1 (0.2)	0 (0.0)
교수로부터의 언어적 폭력	571 (90.1)	47 (7.4)	6 (0.9)	4 (0.6)
친구나 선후배에 의한 신체적 폭력	601 (94.8)	23 (3.6)	4 (0.6)	1 (0.2)
친구나 선후배에 의한 아이디어, 논문(리포트) 도용	577 (91.0)	43 (6.8)	9 (1.4)	0 (0.0)
교수로부터의 노력, 심부름 강요	561 (88.5)	52 (8.2)	12 (1.9)	4 (0.6)
나이에 의한 차별	530 (83.6)	78 (12.3)	14 (2.2)	5 (0.8)
특정 지역에 의한 차별	579 (91.3)	42 (6.6)	5 (0.8)	2 (0.3)
교수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610 (96.2)	14 (2.2)	4 (0.6)	0 (0.0)
선배나 동료로부터 성희롱, 성폭력	598 (94.3)	26 (4.1)	4 (0.6)	1 (0.2)
직원으로부터의 언어적, 신체적 폭력	601 (94.8)	20 (3.2)	4 (0.6)	4 (0.6)

2) 인권교육 경험

인권교육의 실태를 대학 이전과 현재 대학에서 교육으로 나눠 조사하였다. 대학 전 인권교육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22.4%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 전 인권교육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72%) 진행되어 다른 인권기관으로부터의 교육은 상당히 없는 편이다.

[표 IV-9] 대학 입학 전 인권교육 받은 경험

구분	있다	없다
응답자 수 (%)	142 (22.4)	485 (76.5)

[표 IV-10] 대학 입학 전 인권교육 장소 (복수응답)

구분	중고등학교	국가 인권위원회	지자체 등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타
응답자 수 (%)	116 (72.0)	23 (14.3)	3 (1.9)	7 (4.3)	12 (7.5)

3) 인권관련 강의 수강 실태

학생 개인수준에서의 인권과목의 수강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과목 이하가 45.4%로 절반 정도 되었고 2-3과목이 22.9%로 나타났다. 평균 2과목 정도를 수강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응답한 학생의 다수가 현재 인권과목을 수강한 학생임을 고려할 때, 수강과목의 수는 결코 많지 않은 것이라 하겠다.

수강이유 중 개인적 관심때문(22.1%)> 수강신청의 편의(20.2%)>필수이기 때문에(17.0%) 순으로 조사되었다. 수강했던 과목을 영역별 분포(복수 응답)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인권일반: 424과목(현대사회와 인권이 89과목으로 최다)
- 법, 범죄, 경찰: 450과목(헌법이 138과목으로 최다)
- 정치, 국제, 평화: 85과목
- 다문화: 72과목(다문화사회의 이해가 49과목으로 최다)
- 여성학: 216과목(여성학이 164과목으로 최다)
- 사회복지:164과목

[표 IV-11] 인권관련 강의 수강 실태

영역	지금까지 수강한 강의	응답자수 (%)	영역	지금까지 수강한 강의	응답자수 (%)
인권일반 사회	인권의 이해	61 (9.6)	사회복지	장애인복지론	18 (2.8)
	현대사회와 인권	89 (14.0)		아동복지론	15 (2.4)
	소수자의 인권	27 (4.3)		빈곤아동의 새로운 미래	8 (1.3)
	인권사회학	17 (2.7)		여성복지론	29 (4.6)
	현대사회와 윤리문제	45 (7.1)		청소년 인권과 복지	16 (2.5)
	사회적 이슈와 인권	18 (2.8)		노인복지론	12 (1.9)
	환경과 인권	19 (3.0)		청소년복지(문제)론	15 (2.4)
	시민사회와 NGO	73 (11.5)		인권과 사회복지	15 (2.4)
	북한사회와 인권	28 (4.4)		장애와 차별탐구	8 (1.3)
			사회적 약자와 사회복지	28 (4.4)	
법, 범죄	법과 인권	36 (5.7)	평화, 전쟁, 정치	인권과 국제정치	25 (3.9)
	국제인권법	21 (3.3)		인권과 평화	20 (3.2)
	기본권론	71 (11.2)		국제개발협력과 인권	25 (3.9)
	헌법	138 (21.8)			

	노동법	57 (9.0)		전쟁과 평화	15 (2.4)
	범죄와 인권	77 (12.1)			
	이민법과 인권	4 (0.6)	다문화, 소수자	다문화사회의 이해	49 (7.7)
	국제환경과 인권법	12 (1.9)		다문화교육의 이해	10 (1.6)
	공익인권법	2 (0.3)		다문화사회의 소수자 이해	13 (2.1)
	범죄피해예방과 피해자보호	30 (4.7)			
	피해자학	7 (1.1)	여성	여성학	164 (25.9)
				여성과 법률	17 (2.7)
	인권과 교육	22 (3.5)		법여성학	1 (0.2)
	교육기본권론	6 (0.9)		현대사회와 여성	34 (5.4)
	경찰과 인권	3 (0.5)			

[표 IV-12] 수강한 인권 과목 수

구분	1 과목 이하	2~3 과목	4~5 과목	6과목 이상
응답자 수 (%)	288 (45.4)	145 (22.9)	38 (6.0)	22 (3.5)
평균	1.92 ± 1.73			

[표 IV-13] 인권 강좌 수강 계기

구분	필수이기 때문에	개인적 관심	수강신청의 편의	선배, 동료의 권유	인권분야 직업탐색에 도움	교수님의 권고	기타
응답자 수 (%)	108 (17.0)	140 (22.1)	128 (20.2)	63 (9.9)	8 (1.3)	1 (0.2)	72 (11.4)

4) 인권 관련 강의의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내용 중 가장 빈번하게 포함되는 내용 중 일부 순서를 살펴보면, 남녀평등(50.2%)> 법 앞의 평등(42.4%)> 소수자의 권리(36%)> 표현의 자유(36%)> 생명권 차별금지(33.6%)의 순서임을 확인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정치·신체적 권리에 비하여 사회경제권의 내용이 더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강의에 꼭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의 순서는 소수자의 권리(32%)> 표현의 자유(30.8%)> 법앞의 평등, 프라이버시의 보

호(각 28.2%)>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27.8%)> 사회적 약자보호와 민주주의(27.4%) 등 이다.

강의에 활용된 방법은 다양하나 효과적이라고 답한 방법은 관련동영상 시청(22.2)> 강의(21.8%)> 관련인물 초청(17.2%)> 팀프로젝트 발표(13.7%) > 현장학습(12.3%) > 세미나식(7.4%)이다.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교수·강사의 수는 1인이 다수(71.5%)이다.

교수·강사의 교과내용에 대한 숙지 정도에 대한 평가는 ‘매우 그렇다’와 ‘상당히 그렇다’가 74.8%이고 ‘그렇지 않다’가 1.1%라고 응답하였다. 강의방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57.8%가 긍정적으로, 11%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에 대해서는 긍정이 34.4%, 부정적인 평가가 11%로 나타났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에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중간 및 기말시험이 77%로 압도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팀프로젝트가 응답자의 47%, 그리고 보고서가 44.6%, 토론참여가 21%로 활용되고 있다.

[표 IV-14] 수강한 인권 강의의 내용

강의 내용	응답 (%)	강의 내용	응답 (%)	강의 내용	응답 (%)
생명권 차별금지	213 (33.6)	자유와 개인의 안보	162 (25.6)	고문금지	157 (24.8)
법적구제	167 (26.3)	법 앞의 평등	269 (42.4)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176 (27.8)
공평한 재판권	155 (24.4)	무죄추정원칙	158 (24.9)	프라이버시 보호	131 (20.7)
거주·이전의 자유	148 (23.3)	국적보장	60 (9.5)	결혼 및 가족구성권	154 (24.3)
가족의 보호 및 지원	92 (14.5)	남녀 평등	318 (50.2)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84 (29.0)
집회의 자유	200 (31.5)	결사의 자유	137 (21.6)	정부참여권리	83 (13.1)
표현의 자유	228 (36.0)	사회보장권	193 (30.4)	근로3권	141 (22.2)
교육권	163 (25.7)	아동보호	123 (19.4)	난민지위	74 (11.7)
의무교육	99 (15.6)	전쟁포로의 지위	51 (8.0)	민주주의	186 (29.3)
소수자의 권리	228 (36.0)	사형금지	143 (22.6)	생존권	175 (27.6)
장애인의 권리	138 (21.8)	사회적 약자 보호	203 (32.0)	환경권	137 (21.6)
기타	12 (1.9)				

[표 IV-15] 인권 강좌 내 인권 관련 내용의 비중

구분	1/4 미만	1/4 ~ 1/2	1/2 ~ 3/4	거의 모두
응답자 수 (%)	108 (17.0)	138 (21.8)	90 (14.2)	193 (30.4)

[표 IV-16] 강의 내용과 전공과의 관련성

구분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자 수 (%)	49 (7.7)	94 (14.8)	93 (14.7)	78 (12.3)	218 (34.4)

[표 IV-17] 인권 관련 강의에 포함 희망 내용

희망하는 내용	응답수 (%)	희망하는 내용	응답수 (%)	희망하는 내용	응답수 (%)
생명권 차별금지	107 (16.9)	자유와 개인의 안보	161 (25.4)	고문금지	80 (12.6)
법적구제	123 (19.4)	법 앞의 평등	179 (28.2)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176 (27.8)
공평한 재판권	115 (18.1)	무죄추정원칙	84 (13.2)	프라이버시 보호	179 (28.2)
거주·이전의 자유	49 (7.7)	국적보장	47 (7.4)	결혼 및 가족구성권	86 (13.6)
가족의 보호 및 지원	78 (12.3)	남녀 평등	157 (24.8)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135 (21.3)
집회의 자유	130 (20.5)	결사의 자유	74 (11.7)	정부참여권리	91 (14.4)
표현의 자유	195 (30.8)	사회보장권	117 (18.5)	근로3권	128 (20.2)
교육권	121 (19.1)	아동보호	159 (25.1)	난민지위	63 (9.9)
의무교육	99 (15.6)	전쟁포로의 지위	62 (9.8)	민주주의	174 (27.4)
소수자의 권리	205 (32.3)	사형금지	65 (10.3)	생존권	103 (16.2)
장애인의 권리	142 (22.4)	사회적 약자 보호	176 (27.8)	환경권	120 (18.9)
기타	16 (2.5)				

[표 IV-18] 인권 강의에 활용된 강의 방법(복수응답)

구분	강의	관련 동영상 시청	현장학습	팀프로젝트 발표	세미나식	관련인물 초청강의
응답자 수 (%)	511 (80.6)	262 (41.3)	60 (9.5)	298 (47.0)	70 (11.0)	124 (19.6)

[표 IV-19] 인권 강의에 효과적인 강의 방법

구분	강의	관련 동영상 시청	현장학습	팀프로젝트 발표	세미나식	관련인물 초청강의
응답자 수 (%)	138 (21.8)	141 (22.2)	78 (12.3)	87 (13.7)	47 (7.4)	109 (17.2)

[표 IV-20] 수강한 인권 강의의 교강사 수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응답자 수 (%)	453 (71.5)	40 (6.3)	39 (6.2)

[표 IV-21] 수강한 인권 강의의 강의 방법

질문 내용	응답자 수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교강사의 인권 내용 숙지	298 (47.0)	176 (27.8)	49 (7.7)	5 (0.8)	2 (0.3)
강의 방법의 적절	148 (23.3)	219 (34.5)	141 (22.2)	18 (2.8)	5 (0.8)
학생들의 참여	64 (10.1)	154 (24.3)	244 (38.5)	59 (9.3)	11 (1.7)

[표 IV-22] 수강한 인권 강의의 평가 방법

구분	중간/기말 교사	개인/팀프로젝 트 및 발표	보고서	토론참여	출석	기타
응답자 수 (%)	486 (76.6)	298 (47.0)	283 (44.6)	133 (21.0)	316 (49.8)	20 (3.2)

5) 교육 효과

인권과목을 수강한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강의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효과를 파악해 보았다. 강의를 통한 효과는 인권내용의 숙지와 인권의식의 향상 그리고 인권존중의식 등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강의를 들은 후에 인권관련 행동에의 참여 역시 약간이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며, 적극적 참여보다는 관여의 깊이가 낮은 행동부터 참여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강의에 대한 만족도는 46.6%이고 불만족도는 3.9%이다.

[표 IV-23] 인권 강의 수강 후 인권에 대한 인식 변화

질문 내용	응답자 수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강의를 통한 인권내용 숙지	83 (13.1)	284 (44.8)	151 (23.8)	7 (1.1)	4 (0.6)
강의를 통한 인권의식 향상	69 (10.9)	267 (42.1)	175 (27.6)	15 (2.4)	3 (0.5)
강의를 통한 인권존중	61 (9.6)	219 (34.5)	231 (36.4)	14 (2.2)	4 (0.6)

[표 IV-24] 인권 강의 수강 후 사회활동 참여

강의 후 참여한 활동	응답 (%)	강의 후 참여한 활동	응답 (%)
인권단체 가입 혹은 활동	38 (6.0)	인권관련 서명운동 참여	166 (26.2)
인권관련 시위 참여	24 (3.8)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모금운동 참여	67 (10.6)
소수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직접적 도움 주기	57 (9.0)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 참여	14 (2.2)
인권개선을 위한 법적, 정책적 활동에 참여	9 (1.4)	기타	50 (7.9)

[표 IV-25] 인권 관련 강의의 대학 인권 개선 효과

구분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자 수 (%)	65 (10.3)	204 (32.2)	219 (34.5)	31 (4.9)	12 (1.9)

[표 IV-26] 인권 강의에 대한 만족도

구분	매우 만족한다	상당히 만족한다	보통이다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응답자 수 (%)	90 (14.2)	207 (32.6)	204 (32.2)	19 (3.0)	6 (0.9)

[표 IV-27] 인권 강의에 만족하는 이유 (복수응답)

구분	교강사	강의내용	강의방법	수업활동	기타
응답자 수 (%)	72 (11.4)	184 (29.0)	14 (2.2)	14 (2.2)	9 (1.4)

6) 기타, 개선사항

인권강의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을 조사하였다. 인권관련 강의의 수강신청의 용이함에 대해서는 53.6%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불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7.9%이다. 인권강의를 더 수강할 계획에 대해서는 44.8%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1%이다.

강의 방식에 대해서는 교양강좌로 강의의 수를 증가하는데 대해서는 64.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인권관련 전공강의를 확대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이 43.4%, 반대가 15.4%였다. 정규교과 이외의 인권강좌의 확대에도 55.8%의 찬성을 보여 인권강좌의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IV-28] 인권 관련 강의의 수강신청 용이함 및 수강계획

질문 내용	응답자 수 (%)				
	매우 그렇다	상당히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인권 관련 강의의 수강신청 용이 정도	102 (16.1)	238 (37.5)	211 (33.3)	39 (6.2)	11 (1.7)
인권 관련 강의 수강 계획	75 (11.8)	209 (33.0)	258 (40.7)	47 (7.4)	23 (3.6)

[표 IV-29] 인권 강좌의 확대

질문 내용	응답자 수 (%)				
	매우 동의	상당히 동의	반반이다	약간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인권 교양강좌 확대	136 (21.5)	270 (42.6)	189 (29.8)	12 (1.9)	5 (0.8)
인권 전공강좌 확대	85 (13.4)	190 (30.0)	239 (37.7)	66 (10.4)	32 (5.0)
정규교과 이외의 인권 강좌 확대	94 (14.8)	260 (41.0)	221 (34.9)	27 (4.3)	9 (1.4)

3.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 인권지식 및 의식의 차이 분석

대학생이라는 표본의 특성상 응답자 개인이 지니는 특성에 의해 인권에 대한 지식 및 의식에 있어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로 성별, 학년, 전공, 가정의 월평균 소득 등 응답자의 주요 특성별로 인권지식 및 의식의 차이를 통계적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1) ‘세계 인권 선언’을 읽어본 경험

응답자의 성별, 학년, 전공 및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본 경험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특성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경험의 유/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 내용 중 ‘대부분 읽어보았다’ 및 ‘부분적으로 읽어보았다’를 ‘읽어본 적 있다’로,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를 ‘읽어본 적 없다’의 방식으로 이분화하였다.

이에 성별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자(54.1%)보다는 여자(65.0%)가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본 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차이는 $p < .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학년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원생(88.1%) > 학부 1학년(65.2%) > 3학년(63.5%) > 4학년(52.9%) > 2학년(51.4%)’의 순으로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본 경험이 많은 순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p < .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전공별로는 사회계열(75.9%), 예술계열(68.2%), 인문계열(66.2%)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본 경험이 많고, 공학계열(40.9%), 자연과학계열(43.8%), 예체능계열(50.0%)에서 경험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p < .001$ 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가정의 소득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0] 주요 특성별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본 경험 여부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본 경험 여부 (%)		
		읽어본적 있다	읽어본적 없다	χ^2
성별	남자	146 (54.1)	124 (45.9)	7.546**
	여자	228 (65.0)	123 (35.0)	
학년	1학년	92 (65.2)	49 (34.8)	23.785***
	2학년	75 (51.4)	71 (48.6)	
	3학년	80 (63.5)	46 (36.5)	
	4학년	81 (52.9)	72 (47.1)	
	대학원생	37 (88.1)	5 (11.9)	
전공	공학계열	38 (40.9)	55 (59.1)	32.830***
	인문계열	49 (66.2)	25 (33.8)	
	사회계열	82 (75.9)	26 (24.1)	
	자연과학계열	7 (43.8)	9 (56.3)	
	교육/사범계열	30 (56.6)	23 (43.4)	
	예체능계열	20 (50.0)	20 (50.0)	
	법학계열	63 (63.6)	36 (36.4)	
	경영계열	55 (55.0)	45 (45.0)	
	예술계열	15 (68.2)	7 (31.8)	
	기타	3 (75.0)	1 (25.0)	
가구의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	3 (37.5)	5 (62.5)	7.567
	150만원 미만	15 (60.0)	10 (40.0)	
	150~300만원	56 (63.6)	32 (36.4)	
	300~500만원	74 (51.7)	69 (48.3)	
	500~1,000만원	104 (63.4)	60 (36.6)	
	1,000~1,500만원	18 (58.1)	13 (41.9)	
	1,500만원 이상	17 (60.7)	11 (39.3)	
	모르겠다	74 (63.2)	43 (36.8)	

주: * p<.05, ** p<.01, *** p<.001

2) 헌법의 인권 내용 인지

응답자의 성별, 학년, 전공 및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 한국 헌법의 인권 보장 내용을 인지하는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특성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 내용 중 ‘잘 알고 있다’ 및 ‘어느 정도 알고 있다’를 ‘알고 있다’로, ‘잘 모르고 있다’ 및 ‘전혀 모르고 있다’를 ‘모르고 있다’의 방식으로 이분화하였다.

전공별 차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전공에서 헌법의 인권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법학계열(92.9%), 예체능계열(87.5%), 인문계열(85.1%)에서 그 비중이 높고, 예술계열(63.6%), 자연과학계열(68.8%), 공학계열(71.0%)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성별, 학년 및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 헌법의 인권 내용 인지 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1] 주요 특성별 헌법의 인권 내용 인지 여부

		헌법의 인권 내용 인지 여부 (%)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χ^2
성별	남자	222 (82.2)	48 (17.8)	.591
	여자	280 (79.8)	71 (20.2)	
학년	1학년	118 (83.7)	23 (16.3)	2.238
	2학년	121 (82.9)	25 (17.1)	
	3학년	100 (79.4)	26 (20.6)	
	4학년	119 (77.8)	34 (22.2)	
	대학원생	34 (81.0)	8 (19.0)	
전공	공학계열	66 (71.0)	27 (29.0)	23.502**
	인문계열	63 (85.1)	11 (14.9)	

	사회계열	88 (81.5)	20 (18.5)	
	자연과학계열	11 (68.8)	5 (31.3)	
	교육/사범계열	43 (81.1)	10 (18.9)	
	예체능계열	35 (87.5)	5 (12.5)	
	법학계열	92 (92.9)	7 (7.1)	
	경영계열	79 (79.0)	21 (21.0)	
	예술계열	14 (63.6)	8 (36.4)	
	기타	3 (75.0)	1 (25.0)	
가구의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	5 (62.5)	3 (37.5)	9.106
	150만원 미만	21 (84.0)	4 (16.0)	
	150~300만원	67 (76.1)	21 (23.9)	
	300~500만원	119 (83.2)	24 (16.8)	
	500~1,000만원	136 (82.9)	28 (17.1)	
	1,000~1,500만원	28 (90.3)	3 (9.7)	
	1,500만원 이상	19 (67.9)	9 (32.1)	
	모르겠다	93 (79.5)	24 (20.5)	

주: * p<.05, ** p<.01, *** p<.001

3)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

응답자의 성별, 학년, 전공 및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 인권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특성별로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산분석을 위하여 한국사회의 인권상황, 다른 나라나 국제 인권상황, 귀 대학의 인권상황 등 3개 항목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에 4점, ‘어느 정도 알고 있다’에 3점, ‘잘 모르고 있다’에 2점, ‘전혀 모르고 있다’에 1점을 주어 각각의 항목에서 응답자가 응답한 값을 모두 더해 12점 만점의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라는 새로운 변수를 생성하였다.

학년별로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학원생(7.79)

> 학부 2학년 > 학부 3학년 및 4학년 > 학부 1학년'의 순으로 대학, 한국사회 및 국제적 인권상황에 대해 보다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전공별로는 사회계열(7.68), 법학계열(7.46), 예술계열(7.45), 인문계열(7.38)에서 인권상황을 잘 인지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교육/사범계열(6.74), 공학계열(6.84), 경영계열(6.91)의 경우 그 정도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성별 및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2] 주요 특성별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

		인권상황에 대한 인지도		
		M	S.D.	F
성별	남자	7.25	1.430	.295
	여자	7.19	1.317	
학년	1학년	7.08	1.265	3.122*
	2학년	7.34	1.362	
	3학년	7.10	1.417	
	4학년	7.10	1.341	
	대학원생	7.79	1.260	
전공	공학계열	6.84	1.541	4.292***
	인문계열	7.38	1.352	
	사회계열	7.68	1.075	
	자연과학계열	7.25	1.238	
	교육/사범계열	6.74	1.375	
	예체능계열	7.20	1.159	
	법학계열	7.46	1.232	
	경영계열	6.91	1.443	
	예술계열	7.45	1.654	
	기타	6.50	1.732	

가구의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	7.88	1.959	1.318
	150만원 미만	7.44	1.325	
	150~300만원	7.16	1.405	
	300~500만원	7.17	1.384	
	500~1,000만원	7.08	1.311	
	1,000~1,500만원	7.74	1.264	
	1,500만원 이상	7.18	1.467	
	모르겠다	7.26	1.373	

주: * p<.05, ** p<.01, *** p<.001

4) 타인의 권리보다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것에 대한 동의

응답자의 성별, 학년, 전공 및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가했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지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특성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응답 내용 중 ‘매우 동의한다’ 및 ‘다소 동의한다’를 ‘동의한다’로, ‘중간이다’를 ‘중단이다’로,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및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를 ‘동의하지 않는다’의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해당 문항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지만, 성별, 학년, 전공 및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표 IV-33] 주요 특성별 타인의 권리보다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했다에 대한 동의

		타인의 권리보다 자기의 권리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증가했다에 대한 동의 (%)			
		동의한다	중간이다	동의하지 않는다	χ^2
성별	남자	207 (76.7)	35 (13.0)	28 (10.4)	2.355
	여자	266 (76.0)	57 (16.3)	27 (7.7)	
학년	1학년	110 (78.0)	19 (13.5)	12 (8.5)	5.397
	2학년	119 (81.5)	18 (12.3)	9 (6.2)	

	3학년	89 (71.2)	21 (16.8)	15 (12.0)	
	4학년	113 (73.9)	25 (16.3)	15 (9.8)	
	대학원생	33 (78.6)	6 (14.3)	3 (7.1)	
전공	공학계열	72 (77.4)	15 (16.1)	6 (6.5)	19.831
	인문계열	56 (75.7)	8 (10.8)	10 (13.5)	
	사회계열	73 (67.6)	20 (18.5)	15 (13.9)	
	자연과학계열	11 (68.8)	4 (25.0)	1 (6.3)	
	교육/사범계열	47 (88.7)	6 (11.3)	0 (0.0)	
	예체능계열	31 (77.5)	6 (15.0)	3 (7.5)	
	법학계열	73 (73.7)	15 (15.2)	11 (11.1)	
	경영계열	79 (79.8)	14 (14.1)	6 (6.1)	
	예술계열	18 (81.8)	3 (13.6)	1 (4.5)	
	기타	4 (100.0)	0 (0.0)	0 (0.0)	
가구의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	5 (62.5)	1 (12.5)	2 (25.0)	9.280
	150만원 미만	17 (68.0)	5 (20.0)	3 (12.0)	
	150~300만원	64 (72.7)	16 (18.2)	8 (9.1)	
	300~500만원	111 (77.6)	18 (12.6)	14 (9.8)	
	500~1,000만원	128 (78.0)	21 (12.8)	15 (9.1)	
	1,000~1,500만원	23 (74.2)	5 (16.1)	3 (9.7)	
	1,500만원 이상	21 (75.0)	4 (14.3)	3 (10.7)	
	모르겠다	90 (77.6)	21 (18.1)	5 (4.3)	

주: * p<.05, ** p<.01, *** p<.001

5) 한국의 인권 존중 상태

응답자의 성별, 학년, 전공 및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 한국의 인권 존중 상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특성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응답 내용 중 ‘매우 존중된다’ 및 ‘다소 어느 정도 존중된다’를 ‘존중된다’로, ‘중간이다’를 ‘중단이다’로, ‘별로 존중되지 않는다’ 및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를 ‘존중되지 않는다’의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해당 문항에 있어서는 성별, 학년, 전공 및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34] 한국의 인권 존중 상태

		한국의 인권 존중 상태 (%)				χ^2
		존중된다	중간이다	존중되지 않는다		
성별	남자	92 (34.7)	88 (33.2)	85 (32.1)	5.718	
	여자	89 (25.8)	131 (38.0)	125 (36.2)		
학년	1학년	44 (31.4)	50 (35.7)	46 (32.9)	8.528	
	2학년	47 (33.1)	53 (37.3)	42 (29.6)		
	3학년	36 (29.3)	48 (39.0)	39 (31.7)		
	4학년	43 (28.7)	51 (34.0)	56 (37.3)		
	대학원생	6 (14.3)	16 (38.1)	20 (47.6)		
전공	공학계열	31 (34.4)	28 (31.1)	31 (34.4)	20.810	
	인문계열	18 (25.0)	29 (40.3)	25 (34.7)		
	사회계열	26 (24.3)	35 (32.7)	46 (43.0)		
	자연과학계열	8 (50.0)	7 (43.8)	1 (6.3)		
	교육/사범계열	18 (35.3)	21 (41.2)	12 (23.5)		
	예체능계열	11 (27.5)	15 (37.5)	14 (35.0)		
	법학계열	31 (31.3)	37 (37.4)	31 (31.3)		
	경영계열	30 (30.6)	35 (35.7)	33 (33.7)		
	예술계열	7 (31.8)	4 (18.2)	11 (50.0)		
	기타	2 (50.0)	2 (50.0)	0 (0.0)		
가구의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	4 (50.0)	2 (25.0)	2 (25.0)	12.266	
	150만원 미만	8 (32.0)	9 (36.0)	8 (32.0)		
	150~300만원	20 (23.5)	28 (32.9)	37 (43.5)		
	300~500만원	45 (32.1)	49 (35.0)	46 (32.9)		
	500~1,000만원	43 (26.4)	63 (38.7)	57 (35.0)		
	1,000~1,500만원	14 (45.2)	8 (25.8)	9 (29.0)		
	1,500만원 이상	10 (35.7)	12 (42.9)	6 (21.4)		
	모르겠다	37 (32.5)	39 (34.2)	38 (33.3)		

주: * p<.05, ** p<.01, *** p<.001

6) 대학의 인권 존중 상태

응답자의 성별, 학년, 전공 및 가정의 월평균 소득별로 각 대학의 인권 존중 상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특성별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응답 내용 중 ‘매우 존중된다’ 및 ‘다소 어느 정도 존중된다’를 ‘존중된다’로, ‘중간이다’를 ‘중단이다’로, ‘별로 존중되지 않는다’ 및 ‘전혀 존중되지 않는다’를 ‘존중되지 않는다’의 방식으로 구분하였다.

전공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자연과학계열에서 존중된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91.7%), 교육/사범계열(58.1%) 및 인문계열(50.0%)에서 50% 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예술계열(31.8%) 및 경영계열(39.8%)에서는 각 대학에서 인권이 존중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중이 40% 미만이었다 이와 같은 차이는 $p < .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성별, 학년 및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 대학의 인권 존중 상태에 대한 인식의 통계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 IV-35] 귀 대학의 인권 존중 상태

		귀 대학의 인권 존중 상태 (%)			
		존중된다	중간이다	존중되지 않는다	χ^2
성별	남자	112 (48.1)	77 (33.0)	44 (18.9)	.660
	여자	138 (45.7)	110 (36.4)	54 (17.9)	
학년	1학년	60 (52.6)	40 (35.1)	14 (12.3)	15.186
	2학년	61 (48.4)	50 (39.7)	15 (11.9)	
	3학년	53 (47.3)	38 (33.9)	21 (18.8)	
	4학년	57 (41.6)	43 (31.4)	37 (27.0)	
	대학원생	14 (40.0)	12 (34.3)	9 (25.7)	
전공	공학계열	35 (43.2)	30 (37.0)	16 (19.8)	35.048**
	인문계열	34 (50.0)	30 (44.1)	4 (5.9)	
	사회계열	44 (46.8)	31 (33.0)	19 (20.2)	

	자연과학계열	11 (91.7)	0 (0.0)	1 (8.3)	
	교육/사범계열	25 (58.1)	15 (34.9)	3 (7.0)	
	예체능계열	15 (45.5)	10 (30.3)	8 (24.2)	
	법학계열	41 (47.7)	30 (34.9)	15 (17.4)	
	경영계열	33 (39.8)	29 (34.9)	21 (25.3)	
	예술계열	7 (31.8)	6 (27.3)	9 (40.9)	
	기타	2 (50.0)	2 (50.0)	0 (0.0)	
가구의 월평균 소득	소득 없음	2 (28.6)	4 (57.1)	1 (14.3)	11.805
	150만원 미만	12 (57.1)	5 (23.8)	4 (19.0)	
	150~300만원	28 (37.8)	28 (37.8)	18 (24.3)	
	300~500만원	59 (47.6)	49 (39.5)	16 (12.9)	
	500~1,000만원	64 (45.7)	51 (36.4)	25 (17.9)	
	1,000~1,500만원	15 (53.6)	7 (25.0)	6 (21.4)	
	1,500만원 이상	13 (56.5)	5 (21.7)	5 (21.7)	
	모르겠다	51 (49.0)	34 (32.7)	19 (18.3)	

주: * p<.05, ** p<.01, *** p<.001

제5장 교·강사 대상 설문조사

교·강사 대상 인권교육 설문조사는 현재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하고 있거나 또는 현재는 인권교육을 하는 자리에 있지 않더라도 기존에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했던 교수 및 강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교수나 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교육의 수요자로서 학생에 대한 조사와는 달리 공급자로서 교수 혹은 강사가 인권교육에서 느끼는 점 혹은 인권교육을 한 경우 그 실태에 대한 것으로 학생에 대한 조사와는 다소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러한 교수나 강사는 인권에 대한 전문가로서 인권교육의 현장에서 느끼는 점을 토대로 문제점이나 정책적 대안 등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1. 조사개요

1) 표본

본 설문조사는 인권교육에 대한 의견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교수나 강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인권과 관련한 강의를 한 번이라도 개설하고 강의한 교수나 강사를 우선으로 하였으며, 관련 강의로 법, 복지, 청소년, 노인, 인권일반 등으로 구분하였다.

2) 조사방법

교·강사 대상 인권교육 설문조사는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강사들의 개설과목, 강의방식, 평가방식, 그리고 강의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탐색하기 위해 이메일로 질문지를 배부하

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설문지 내용은 부록2 참조). 설문은 선택지 중에 1개 혹은 여러 개의 답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형과 자신의 의견을 서술할 수 있는 서술형의 질문지로 구성하였으며, 자신이 직접 괄호에 기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교수·강사들의 연락처를 수집하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기 중에 연구과제가 시작되어서 대상자 섭외에 애로점이 있었다.

3) 조사내용

본 설문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자신의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개설하였고, 그 과목에는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어떠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평가하였는지 이다. 두 번째는 인권관련 교과목을 강의하는데 어려운 점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 질문은 대학, 국가정책,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으로 세분화 하였다. 특히 인권교과목 강의 관련 애로점과 대책에 대해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관련 교·강사들의 보다 풍부하고 세밀한 의견을 추가적으로 담아내고자 노력하였다.

2. 조사결과 분석

1) 응답자 특성

조사대상은 국내 대학에서 인권과 관련한 교과목을 3년 내에 1과목 이상 강의한 교수나 강사 35명으로 하였다. 이메일 조사나 전화 조사를 통해 설문에 의미 있는 응답을 한 인원은 총 30명이었다. 조사대상자 중 5명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응답하기 어렵다는 점을 표시하였다. 이 5명 중에는 대학에서는 인권관련 강의를 한 것으로 표시하였으나 답장으로 그러한 강의를 하지 않았다고 한 경우도 있었다.

성별 분포로 보면 응답자 30명 중 17명은 남성, 13명은 여성의 비율을 보였다. 응답자의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4명, 50대가 9명, 40대가 11명, 30대가 6명이었다. 종교별로는 개신교가 10명, 가톨릭이 7명, 불교가 3명, 없음 9명, 기타 1명으로 개신교와 가톨릭이 54%를 차지하였다. 계열별로는 법학계열이 14명, 사회계열이 13명, 인문계열 2명, 교육/사범계열이 1명으로 법학계열과 사회계열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의한 대학교의 유형으로는 4년제 일반대학이 27명, 교육대학이 1명, 신학대학 2명으로 4년제 일반대학에서 인권관련 강의를 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강의한 대학의 지역적 특성으로는 서울에 11곳, 경기도에 4곳, 충청북도에 1곳, 충청남도에 1곳, 강원도에 2곳, 경상북도에 1곳, 경상남도에 1곳, 전라북도에 2곳, 전라남도에 1곳, 대전에 4곳, 광주에 1곳, 울산에 1곳이 위치하고 있었다.

2) 인권관련 강의 경험 및 개설 강의명, 인권관련 내용 포함 주수

대학 내에 인권관련 강의가 얼마나 개설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위 강사들이 3년 내에 몇 차례나 인권관련 강의를 맡았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4회 이상이 12명, 3회가 5명, 2회가 4명, 1회가 9명으로 대학의 특성 및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 개설빈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인권관련 특성화 대학에 재직 중인 응답자의 경우 인권관련 강의 개설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권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학과(예를 들어 사회과 교육과, 사회복지학과)의 경우에도 개설빈도가 높지 않은 경우(각 1회)가 일부 있었다. 물론 대학 본부나 학과 등에서 조사결과 보내 준 결과와 비교해 보면, 복지와 관련한 학과의 경우에는 노인과 복지와 같은 과목을 인권과목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설문 응답자가 최근 3년 내에 개설한 인권관련 강의명과 인권관련 내용이 포함된 주 수는 다음 표와 같다.

[표 V-1] 인권관련 강의명과 인권관련 내용 포함 주 수

강의명	전공/교양(선택, 필수)	인권관련 내용 포함 주 수
현대사회와 인권	전공선택	15주
인권정책론	전공선택	15주
국제인권법	전공선택	15주
인권이론연구	전공선택	15주
인권사상사	전공선택	15주
인권특수연구	전공선택	15주
인권과 민주주의	전공선택 (대학원)	16주
인권사회학	전공선택 (학부)	16주
인권의 이론과 실제	전공선택 (대학원)	16주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핵심교양	13주
현대 사회의 이해	전공필수	5주
인권과 국가	핵심교양	15주
헌법	전공선택	5주
인권과 사회복지	전공선택	16주
인권법	전공선택 (학부)	14주
현대인권론	전공 (대학원)	14주
법과 인권	교양선택	15주(매년 1학기)
기본권론	전공필수	15주
인권과 이슈	교양선택	14주
기독교 인권	전공선택	15주
다문화 인권	전공선택	15주
인권의 사회학	핵심교양 / 교양선택	15주

정보사회와 인권	전공선택	15주
여성학	교양선택	15주
성문화의 이해	교양선택	15주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전공선택	4주
인권과 복지사회	교양선택	5주
현대사회와 여성	교양선택	15주
현대시민의 생활과 법률	교양선택	6주
현대사회와 인권론	교양선택	15주
인권과 법	교양선택	15주
국제인권법	전공선택	15주
행정법	전공선택	15주
헌법연습	전공선택	15주
법학개론	교양선택	5주
인권과 현대사회	교양선택	15주
인권.NGO.세계시민사회	교양선택	14주
법과 인권	교양선택	15주
인권으로 다시 보고 새로 쓰는 가족	특강	1일
경찰인권론	전공선택	15주

3) 인권관련 강의에 포함된 내용

국제법에 규정된 인권목록을 토대로 조사대상자에게 인권관련 강의에 포함되었던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개설된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내용에 약간씩 차이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인권교과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선 국제인권법이나 인권사상 등 여러 분야에 대해 강의를 개설한 교수의 경우에는 생명권 차별금지, 자유와 개인의 안보, 고문금지, 법적구제, 법 앞의 평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공평한 재판권, 무죄추정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거주, 이전의 자유, 결혼 및 가족구성권, 가족의 보호 및 지원,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참여권리, 표현의 자유, 사회보장권, 근로3권, 교육권, 아동보호, 난민 지위, 의무교육, 민주주의, 소수자의 권리, 사형금지, 생존권, 장애인의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권 등 폭넓고 다양한 내용을 과목 내에 담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이 한 과목에 속하는 것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인권과 관련한 대부분의 주제를 내용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경찰분야에서 인권과 관련한 과목을 개설한 경우에는 자유와 개인의 안보, 고문금지, 법적구제, 법앞의 평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공평한 재판권, 무죄추정원칙, 프라이버시 보호, 거주, 이전의 자유,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회보장권, 근로3권, 교육권, 아동보호, 의무교육, 민주주의, 소수자의 권리, 사형금지, 생존권, 장애인의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과목 내 내용은 대체적으로 경찰권 행사와 관련된 권리들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대학에서 사회과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했던 교수의 경우에는 인권관련 내용을 일부로 한정하여 강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었다. 즉 위 과목 담당 교수는 자유와 개인의 안보,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프라이버시 보호, 결혼 및 가족구성권,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아동보호, 소수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개설된 과목 내에 인권관련 내용으로 포함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목의 경우에는 인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 교사 양성의 시각에서 내용을 구성하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대학에서 교양으로 개설한 과목의 경우에는 그 내용의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과목에는 생명권 차별금지, 자유와 개인의 안보, 고문금지, 법적구제, 법 앞의 평등,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무죄추정 원칙, 남녀 평등,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결사의 자유, 정부참여권리, 표현의 자유, 사회보장권, 근로3권, 교육권, 의무교육, 민주주의, 소수자의 권리, 사형금지, 환경권,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문제가 포함되었으며, 특별히 원자력 발전으로부터의 안전권도 그 내용에 포함시켰다.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설된 과목에는 생명권 차별금지, 법적구제, 사회보장권, 교육권, 아동보호, 소수자의 권리, 장애인의 권리, 사회적 약자 등의 내용이 인권과 관련하여 포함되어 있었으며, 다만 국제법에 규정된 인권목록과 그 명칭 면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다.

4) 강의 방식과 교재, 평가방법

조사 응답자 중 일부 몇몇 교수와 강사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의를 중심으로 하여, 여기에 관련동영상 시청, 현장학습, 팀프로젝트와 발표, 세미나, 관련인물 초청 등을 가미한 경우, 팀프로젝트와 발표만을 가미한 경우, 관련 동영상 시청 및 팀프로젝트와 발표를 가미한 경우, 관련인물 초청만을 가미한 경우 등으로 다양한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대학원의 경우에는 세미나식으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의에서 활용된 교재로는 저서 및 논문, 정부자료, 신문 및 방송, 시민단체 자료,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등이 있었다.

[표 V-2] 인권관련 강의 활용 교재

교재 유형	응답률
저서 및 논문	88%
정부자료	25%
국가인권위원회 자료	38%
시민단체 자료	38%
신문 및 방송자료	75%
영화 및 다큐멘터리	63%
소설 등 문학작품	25%
기타 - 지식채널 및 유튜브 동영상, UN 등 국제기구 발간자료	13%

인권관련 과목에서 설문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나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자료 중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법원 판례를 사용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 교수의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교과서나 외국문헌, 정부/국제기구 발간 자료 등도 활용하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교재로 사용한 경우도 있었는데, 『인권사회학』(정진성 외), 『인권의 문법』(조효제), 『인권을 찾아서』(조효제), 『세상을 바꾼 인권』(이경주), 『법과 인권』(김신규), 『인권-이론과 실천』, 『인권철학입문』, 『서울대 인권수업』, 『인권법』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 샌델), 『한국의 성소수자』(최협 외), 『사람이 곧 하늘이다』(이인규 외, 국가인권위원회) 등이며, 그 외에 과목의 특성에 따라서 시중의 헌법교과서 등을 교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강의에 따라서는 여러 논문이나 글을 모아서 편집하여 사용한 경우도 있었으며, 신문기사를 교재로 활용한 사례도 보였다. 인권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지 하나의 교과서만을 사용

하여 강의한 사례는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다섯 개의 시선)나 지식채널 E의 동영상, 인권운동사랑방의 인권교육자료, 영화자료(데이비드 게일, 더 문, 크래쉬 등)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

과목에 대한 평가를 위해 응답자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표 V-3] 인권관련 강의 평가방법

평가방법	응답률
중간/기말고사	88%
개인/팀프로젝트 및 발표	75%
연구보고서	38%
적극적 토론참여	50%
출석	63%
기타	25%

학생들의 강의참여에 대한 평가로 응답자 중 50%는 ‘상당히 그렇다’고 답한 반면, ‘매우 그렇다’는 25%, ‘보통이다’는 13%로 대체적으로 인권강의 담당 교·강사들은 학생들의 수업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느낌을 받고 있었다.

5) 인권관련 교과목 강의시 어려움

[설문내용] 교수님께서 인권관련 과목을 강의하실 때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설문 응답자 중 50%(15명)가 학교나 시민단체 지원 부족 등으로 현장

학습이 어렵다는 점을 인권관련 과목 강의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들고 있었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답변도 있었다.

“관련 사안 경험자인 외부강사 특강을 몇 차례 기획했으나 재정 지원 부족으로 초청이 힘들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관련 강의의 궁극적 목표가 인권감수성 향상에 있다고 할 때, 대학 내 수업만을 통해 이 목표를 달성시키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장학습을 시도하려고 해도, 대도시가 아닌 경우 인권문제가 의제화 되어 있지 않거나 인권단체가 전무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학과 교수)

“관련자 초청강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섭외 및 비용부담이 있습니다.” (경찰학과 교수)

또한 교과목의 운영에 대한 문제로서 수강인권이 너무 많다거나 강의실이 너무 좁다는 점을 든 경우(12명)도 있었다. 한편 교과목 운영 면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도 보였다.

“수강인권이 많은 것 자체가 어려움은 아니지만, 토론 수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데에 약간의 한계가 있다” (법학 전공, 교양과목 강사)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자체가 힘들다” (교양학부 교수)

“인권에 대한 토론 수업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강생이 너무 많아 원활한 토론에 있어서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교과목이 교양과목인 관계로 60명 이하의 수강생 제한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에 반하여 ‘수강인원이 너무 적다’는 답변을 한 경우(1명)도 있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과목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인권에 대한 인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경우도 보였으며, 데이터베이스의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 강의주제와 난이도 조절의 어려움 등을 의견으로 준 경우도 보였다.

“인권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특정 영역의 인권에만 과도한 관심 등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사회과학부 교수)

“인권관련 자료가 많으나 좀 더 상황과 목적에 맞는 분류와 정리가 되어 있으면 합니다.” (법학과 교수)

“참여자들이 인권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 그 동안의 인권관련 교육 참여 경험 등에 있어 수준의 차이가 있어 강의 주제 선정과 난이도 조절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복지학과 교수)

“토론과정에서 수강생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관점과 방향으로 수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권 문제 자체가 이해 당사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서 수강생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근거자료를 준비하고 해당 자료에 맞는 논쟁점 등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수자가 법적 용어와 개념을 안내하고 또 논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확장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수업 준비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사회학과 교수)

6) 대학 내 인권과 관련한 강의나 프로그램 추가 개설 필요성

[설문내용] 인권과 관련하여 대학 내에 어떤 강의나 프로그램이 더 개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문 응답자 중 23명(75%)은 어떠한 형태로든 인권관련 교과목의 추가

개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표시하였다. 우선 교양부분에서 인권관련 교과목의 필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다.

“학부에 교양선택과목으로 ‘인권의 이해’ 가 매학기 개설되어 있으나, 개별 분야별(예를 들면, 장애인과 인권, 여성과 인권, 노인과 인권, 아동과 인권 등) 인권 과목이 좀 더 설강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날로 중요성이 더해 가는 인권 담론을 균형있게 소개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인권을 대학에서 가르칠 때 특정 학과/전공으로만 접근하지 않고, 학제간 접근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권 자체가 다학문적 성격의 실천담론이기 때문입니다. (사회과학부 교수)

“첫째, 기본권과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법이론적으로 제공하는 비전공자 대상 헌법개론 강의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시민과 헌법’ 이나 ‘인권과 헌법’ 같은 형태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보다 다양한 인권관련 강의가 필요합니다. ‘인권과 영화’ 와 같이 작품과 인권 내용을 함께 접할 수 있는 강의를 있으면 문화의 이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학전공, 교양과목 강사)

“제가 근무했던 대학에서는 대부분 인권관련 교과목의 개설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교양학부 교수)

“현대 생활에서 일상적 담론의 주제로서의 인권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존에 대학교 교과과정에는 인권 관련 과목이 정기적으로 편성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인권의 기본적인 개념조차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기초교양(가능하면 필수)과목으

로 인권(대학생과 인권, 인권과 생활, 생활 속의 인권 등의 제목) 관련 교과목이 편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이 대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예비 직장인이고 예비 부부, 부모이므로, 직장 그리고 가정이라는 맥락에서 인권과 관련된 주제를 도출, 이를 균형적으로 편성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최근의 추세를 감안하면, 양성평등/일-가정 양립/부모권과 노동권의 균형과 같은 주제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의 인권과 교직원의 인권을 분리해서 세부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대학의 교양강좌에 인권 관련 과목이 더 많이 개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과 교수)

“각 전공학과목에 인권관련 과목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교양으로만 인권을 강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학과 교수)

“우리 학교는 인권 관련 과목인 OO외에 한, 두 과목이 더 설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학과도 다양하기에 전공 학문의 관점에 따라 재미있게 강의를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수강 인원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본 강사의 강의는 수강 인원이 적정 인원이었지만 지난 학기에는 이 과목을 제외한 다른 인권 관련 과목들은 폐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설강은 충분히 되고 있으나 학생들이 취업이나, 아니면 듣기 쉬운 과목 위주로 강의를 선택하다 보니 실제로 강의를 이루어지는 인권 관련 과목은 매우 적습니다. 얼마나 설강하느냐의 문제가 아닌, 실제로 얼마나 강의를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필수과목으로의 지정이나, 학교에서의 인권 과목에 대한 관심 등이 요구됩니다.” (철학과 교수)

“지금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들을 보면 모든 것들이 인권과 관련된 것들로 타인의 인권을 경시하는 풍조가 원인입니다. 따라서 대학에서 인권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는 바, 헌법과 같은 인권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해야 합니다.” (법학과 교수)

“법학과목(헌법)과 연계해 강좌를 개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학과 교수)

“인권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존중받고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강의나 프로그램은 지속적인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전문가나 시민운동가, 현장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강형식이 유익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학과 교수)

“여성학이나 젠더사회학 등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강의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사회학과 교수)

“개인의 자유 확장에 따른 공공성과의 갈등, 국가권력의 확대에 따른 개인의 자유 및 권리 제한, 새로운 소수자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인식 부족과 관련한 강의의 추가 개설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육과 교수)

“교양과목으로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인권과목의 개설이 필요합니다. 인권의 역사, 소수자와 인권, 국민의 권리와 인권, 여성인권, 군인·경찰과 인권, 장애인과 인권 등...” (법학과 교수)

“(인권과목이) 자유교양과목으로 1학기만 개설되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수강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1, 2학기 선택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학과 교수)

“소규모 그룹식 강의를 개설되어야 합니다. 수업 특성에 맞게 강의인원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행정학과 교수)

설문응답자의 응답내용 중에는 특별히 교육대학에서의 인권과목 추가 개

설 필요성을 강조한 의견도 있었다.

“(인권관련 교과목의 추가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목들을 통해 초등학교와 인권교육/ 교육대학교 학생들에게 인권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과 강의 구성안, 방법 등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교육대학교 교수)

기타 의견으로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월 인권 이해 프로그램 확대 운영의 일환으로 ‘인권 영화 상영’을 자율적으로 실시하였으면 합니다.” (법학과 교수)

“학내·외에서의 다양한 인권 체험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강의실에서의 수업은 인권현실과 거리가 있는 피상적 지식 전달에 그칠 가능성이 크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체험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법학과 교수)

“강의와 연계하여 인권관련 기관 등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사이버 강좌 뿐만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권학교 같은 프로그램).” (법학과 교수)

“고등교육에 있어서조차, 근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의식이 박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실적이지 않은, 다소 요원하다거나 또는 철학적이라는 선입견 등이 팽배한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법학과 교수)

7) 대학 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설문내용] 대학 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개선 혹은 지원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별로 기술해 주십시오.

대학 내에서 인권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선 혹은 지원이 필요한 점을 대학에서 지원해야 할 점,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할 점, 기타로 세분하여 질문하였다. 질문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가. 대학에서 지원해야 할 점

대학에서 지원해야 할 점으로 설문 응답자 대부분은 인권교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하거나 혹은 과목개설을 확대하는 등 인권과목을 정규과목으로 학생들에게 듣게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인권교과목의 확대 및 교양 필수 과목 지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권관련 교과목의 강사를 확대하고 교수도 총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목에 대한 개설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교육대학교 교수)

“인권관련 교과목에 대한 과목의 개설과 동시에 대학 본부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양학부 교수)

“다수가 수강하는 이론 강의와 소수가 참여하는 토론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강의를 개설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전공, 교양과목 강사)

“개설되었다가 폐지되기를 반복하는 과목이 아니라 정규과목으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

“교양선택과목으로 그것도 1학기만 겨우 개설되어 있습니다. 120-130여 명의 학생이 강의를 듣는데, 두 학기에 개설되면 더 많은 학생이 수강할

수 있어서 인권의식이 확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학과 교수)

“교양과목의 설정이 어렵습니다. 인권에 대한 대학의 관심 증대가 필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강좌 개설을 권고했으면 합니다. 또한 소규모 분반을 활성화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찰행정학과 교수)

“인권관련 과목의 개설 확대가 요구됩니다. 인권관련 연구의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기독교 교육과 교수)

“필수<적어도 준(準) 필수> 교양과목 형태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회학과 교수)

“인권교육 강의를 모든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회학과 교수)

“인권 강좌의 ‘교양필수’ 과목 지정 외에 전체 교직원 세미나 등에서 인권 강좌가 필수적으로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법학과 교수)

“정규과목으로 편성, 인권관련 특강, 인권 상담, 인권 정보제공, 인권과 관련된 현장실습 연계 등이 필요합니다.”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대학에서 교과목 개설과 함께 재정적 혹은 물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설문에 응답한 교수들은 공통적으로 대학이나 인권위, 교과부 등에서 외부강사 초청에 필요한 강사료 등 재정적 지원, 토론식 수업에 필요한 자재 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특정 관련 사안에 대해서 외부 강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강사료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 수업은 일종의 민주시민교육이고, 인성교육임. 이런 강의를 장려하

고 현장 학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간이나 학생 배치, 실습비 지원 등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학 전공, 교양학부 교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인권교재나 자료의 제작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학전공, 교양과목 강사)

“강좌의 개설 뿐만 아니라 외부 강사를 초청하는데 있어서도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의실에 책상과 의자가 토론하기에 용이한 라운드형 회의테이블로 비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학과 교수)

“대학에서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급합니다. 학생이나 교직원의 권리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설기구 마련도 필요합니다.” (법학과 교수)

“강의실에서의 인권수업은 대학이 실시할 수 있는 인권교육 중 한 가지 일 뿐입니다. 포스터 등을 이용한 인권홍보, 인권상담제도 개설을 통한 구제방안 마련 등 인권존중문화가 교내에 정착될 때 수업의 효과도 극대화 될 것입니다.” (법학과 교수)

“인권관련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강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대여)비가 필요합니다. 인권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의할 수 있도록 초청지원비도 요구됩니다.” (여성학과 교수)

나.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점

국가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설문 응답자 들은 국가정책적으로 대학교육에서 인권교과목 개설을 의무화 할 필요성이 높음을 강조하였다. 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권이 시민사회의 기초를 이

문다는 점을 강조한 경우, 취업 등으로 인해 이러한 기본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이 갖추어져 있어야 함을 든 의견 등이 제시되었다.

“각 대학이 인권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전국적인 지침 마련 및 지원 필요합니다. 또한 인권교과목의 확대와, 관련 교수 확보 및 총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인권 교과목 운영에 대한 재정적 지원도 요구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 수업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여야 합니다. 일종의 민주 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이 강의를 진행하는데, 학생들의 관심에 비해 기능 중심의 진학, 취업 시험 등으로 인해 간혹 교육적 무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참관이나 학생들의 인권 프로젝트에 관심가질 수 있도록 비용 지원이 필요합니다.” (교양학부 교수)

“교사 양성 기관에서 인권관련 과목 개설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교수)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헌법과목이 어떤 형식으로든 필수적으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공무원이 헌법마인드가 없어서는 인권보장추세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임용 후에라도 헌법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학전공, 교양과목 강사)

“대학 평가시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여부 반영 및 개설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필요합니다.” (사회과학부 교수)

“정규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권교육이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권고할 사항이나 강제하는 사항이 있었으면 합니다.” (경찰학과 교수)

“대학 교양강의에 인권과목을 반드시 1년에 2학기 이상 개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법학과 교수)

“학구교육 선도대학 선정과 같은 각종 대학 평가에 인권관련 교과목 설치 여부를 반영해야 합니다.” (법학과 교수)

“인권의 중요성을 대학 전체 정책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여러 전공 영역에서 인권과목에 개설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회학과 교수)

“인권과목은 각 대학에서 필수적으로 강좌를 개설하도록 권고를 하고, 개설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과 교수)

대학 내 인권센터의 설치를 통한 대학 인권교육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위와 같은 세부적인 의견을 넘어 인권교육법의 제정 자체를 촉구하는 의견, 인권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보였다.

“국가에서 이미 확인된 대한민국의 인권의 문제점을 대국민 홍보할 수 있는 전국적인 조직이 필요합니다. 국가기관으로서 인권교육기관이 탄생되어야 합니다.” (법학과 교수)

“기업의 인권 경영 의제 확대가 필요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감시 기능의 실효성 제고 및 문화 다양성에 따른 인권 문제 정

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인권관련 지원 예산의 확충도 시급합니다.” (기독교 교육과 교수)

“인권관련 법률에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합니다. 인권단체에 대한 정보와 관련 법률정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학과 교수)

“초중등 과정부터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권교육은 피상적인 내용전달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감수성을 높여야 하고 인권보장은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를 교육해야 합니다.” (법학과 교수)

“인권을 경제발전과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태도를 지양하고,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인권 존중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정치 전반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권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은 어떨까요.” (사회학과 교수)

“인권을 선언에 그치지 않고 그에 따른 실효성이 있도록 정책마련이 필요합니다.” (여성학과 교수)

“인권이 멀리 있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체현되고 나타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인권의 일상화 및 보편화가 필요합니다. 이는 정책적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학뿐만 아니라 각급 학교 및 보육시설/유치원 등에 이르기까지 인권을 친밀하고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할 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할 점으로 우선 응답자 중 대다수는 대학이 인권교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권고할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각 대학이 인권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정부/학교에 권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양질의 강사 양성제도 보완 및 인권 교과목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각 영역별로 적합한 인권 관련 교재의 개발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학에서 사용할 다양한 교재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교육대학교 교수)

“초·중·고교 단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의 강화 및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학전공, 교양과목 강사)

“대학에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과학부 교수)

“교재 개발 및 관련 영상 자료 등 개발, 특강 강사 양성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권관련교과목의 설강을 교과부나 인권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전 인권위의 권고사항으로 설강되었으나, 차츰 인권위의 관심이 멀어지면서 과목이 폐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더불어 대학교육이전 뿐만 아니라 대학교육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찰학과 교수)

“인권관련 자료를 대학 담당 인권강사에게 수시로 제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학의 인권강사를 지역사회나 자치단체, 관공서, 초중등학교, 기타 관련 단체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법학과 교수)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하는 경우 지원을 강화하거나 현장 지원을 확대했으면 합니다. 인권관계자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는 것도 인권교육에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 교육과 교수)

“다양한 인권관련 자료, 동영상, 사례집 등의 강의 관련 자료 배포 및 열람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학과 교수)

“인권관련 교육자료를 대학수준에 맞게 다양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법학과 교수)

“다양한 사례를 제공하거나, 대상별(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가족, 학생, 교사, 교수, CEO, 정규직, 비정규직 등) 인권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합니다.”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특별히 공모제 등을 통한 인권에 대한 관심확대나 홍보를 강조한 경우나 인권교재 개발 등을 통한 지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대학생이나 일반 시민의 인권의식 발전 방안 공모제나 체험, 인권 정책 등의 공모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양학부 교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체계적인 인권교육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교재 개발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 한 학기 강의용 인권자료 개발이 필요합니다. 인권 동영상 개발도 좋습니다.” (경찰행정학과 교수)

“인권과 관련한 기본 법률 조항(해설이 붙어 있으면 더 좋음)을 정리한 소책자를 제작하여 수강생들(여의치 않으면 교수자에게만 이라도)에게

(가능하다면 무료로) 제공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학과 교수)

“인권교육에 대한 강사 교육 및 콘텐츠 제공이 필요합니다.” (사회학과 교수)

“학생들에게 인권 문제를 환기시키기 위한 순환 특강 유치 등이 필요합니다.” (법학과 교수)

인권센터라는 대학 내 인권기구를 통한 인권교육의 체계적 시행을 위해 인권위원회에 인권센터 운영 및 내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인권교육 내용의 변화를 촉구하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대학과 연계하여 신속한 세계 흐름에 맞는 인권교육의 수용이 필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빈곤과 인권, 고령화에 따른 인권 의제 개발이 필요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요구됩니다.” (기독교 교육과 교수)

“일반 국민이 좀 더 쉽게 인권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이 있을 때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이 대중화 되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법학과 교수)

“인권이 정치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러 대학의 인권교육 장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합니다.” (사회학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을 평가해서 괜찮다

고 생각되면, 위원회의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발급해 주는 교육수료증을 발급해주는 등 대학교에서의 인권교육과 위원회의 인권교육이 상호보완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학과 교수)

“대학교에서의 교육과 위원회가 주관하는 활동이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현장교육을 받는 것 등)” (법학과 교수)

“권고사항의 실효성 문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합니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인권교육과목의 체계적 개설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일상 시민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교육보다는 소통의 접근 방식으로).” (여성학과 교수)

강사의 경험이나 인권교육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토론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인권적이지 않은 결론을 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성소수자 문제, 또는 장애인의 탈시설 문제) 이는 강사의 교수법에 일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는 전무하다고 판단됩니다. 강사에 대한 교육의 자리, 강의사례를 다른 이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인권위원회가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학과 교수)

라. 기타

기타 건의 사항으로는 대학 자체의 인권에 대한 관심 부족을 비판하면서 인권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대학자체의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학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인권위원

회에 다음과 같은 의견 낸 경우도 있었다.

“대학총장 및 기획처장회의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인권향상에 힘써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8) 대학 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점

[설문내용] 위에서 답한 내용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 내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응답자 들은 교과목의 확대와 의무화, 비용지원, 교재 지원 등을 의견으로 제시하였다.

“인권 관련 교과목 확대 및 인권 관련 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권이 중요시 되는 시대에 일반 시민들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확산시켜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특정 인권 주제 관련 외부 강사 활용을 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학과 교수)

“인권 수업이 강의실 중심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과 연결될 수 있도록 비용 등을 지원하고, 인권 교육 시행 학교에 대해 가산점을 줘야 합니다.” (교양학부 교수)

“교대와 사대에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여야 합니다.” (교육대학교 교수)

“국가정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기본적인 헌법지식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에게

인권교육을 하는 것 이상으로 공무원에게는 강도 높은 교육이 필요한데, 헌법교육은 그에 적합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법학전공, 교양과목 강사)

“대학평가시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여부 반영 및 개설에 대한 가점부여가 필요합니다. 대학평가시 입학총원율, 재학생 총원률, 취업률 위주의 대학 평가 시스템 하에서는 취업과 관련하여 스펙과 전공과 관련 없는 인권과목을 개설해도 수강생이 없습니다.” (교양학부 교수)

“인권과 관련한 교재개발이 시급합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권은 초중고생, 학부모, 자치단체 등 모든 국가의 구성원이면 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대학의 전문강사를 이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인권교육을 확산하면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은 물론 사회 문화가 혁신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법학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고 총장협의회와 자주 세미나를 개최하며, 인권관련 교양과목을 필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권교재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범죄자의 인권, 소수자의 인권, 여성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등 각 영역별로 특화시킨 인권교재 연구 및 개발이 그것입니다.” (경찰행정학과 교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가 떨어질수록 긴급 사항에 대한 대처 및 대응력, 실효성이 하락하게 됩니다.” (기독교 교육과 교수)

“인권관련 법률 소책자 제공이 필요합니다. 인권문제는 끊임없이 사회적, 도덕적 차원에서 확장적인 논의와 담론 제공이 필요한 영역이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적 지식의 이해와 활용이 필요한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

다.” (사회학과 교수)

“학생들에게 인권교육 강의를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인권의식 및 감수성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인권교육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학과 교수)

“인권이 멀리 있고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당연히 누려야 할 것이며 전담 기관이 누구나 어떠한 것이 나의 권리이고 의무인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고 홍보해 주어야 합니다.” (법학과 교수)

“인권관련 교과목 설강을 많이 해야 합니다. 남학생 대부분이 군에 입대하는 상황에서 군인권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인권문제 특히 성평등 교육은 여학생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학과 교수)

“대학에서 많은 강좌를 개설하는 것, 그리고 강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양질의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권 강좌가 없는 대학, 강좌가 개설되더라도 인권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없는 강사가 강의하고 있는 대학이 많아서,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법학과 교수)

“인권관련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강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인권 관련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강의보다는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 시각적인 자료가 주는 인상이 깊고 감명이 깊습니다. 하지만 현재 교양선택(연계전공) 교과목의 경우 수업을 위한 영화 및 다큐멘터리 대여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권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초청비 지원도 필요합니다.” (여성학과 교수)

인식의 전환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부의 인권존중 정책이 가장 시급합니다. 현재 경제 위주 정책에서 인 권은 장애물 같이 여겨지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 회학과 교수)

“매월 학내 ‘인권영화 상영’ : 구체적인 운영 예로, 매월 고정적으로 학내 의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지정하여 인권관련 영화를 상영하되, 자율적인 모금형태의 관람료를 받고, 연말 모금된 금액을 인권관련 시설이나 단체 에 지정기부하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학과 교수)

9) 그 밖에 대학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점

“각 대학에 학교 내 인권 문제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인권센터’ 설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권센터는 행정적인 지원 뿐만 아니라 ‘상담’ ‘구제’ ‘연구’ 를 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성교육, 인권교육, 통일교육, 양성평등 교육 등은 대학평가에 반영하 지 않으면 인권과목을 별도의 독립된 과목으로 개설하기가 어렵습니 다.” (교양학부 교수)

“지역의 경찰서, 검찰, 법원, 교도소, 보호관찰소를 비롯한 많은 관공서 직원 들에 대한 인권교육도 필요합니다.” (법학과 교수)

“현대 사회의 다양하고 또 크고 작은 많은 갈등은 앞으로 ‘인권’이라는 쟁점 을 중심으로 급격히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권문제는 보수/진보의 구도 를 벗어나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할 수 있는 전향적 개념입니다. 따라서 인권 관련 교과목을 필수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권리와 함께 의무, 정의(공의) 등과 관련한 교육도 균형있게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회학과 교수)

“먹고 살기 위한 강좌의 증설은 이미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규모에 도달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놀고 즐기기 위한 강좌의 증설은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열악한 우리 사회의 숨은 문제들을 밝혀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소금과 같은 강좌들의 개설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법학과 교수)

“통합적 또는 부분적 교육을 담당할 인력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인권의 실천적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토론식 강의가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학과 교수)

“국가인권위원회의 동영상 자료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학과 교수)

“학생들이나 국민들에게 진정한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인권침해로 고통 받았거나 침해당하고 있는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이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학과 교수)

제6장 인권교육 관련 해외사례

해외대학에서의 인권교육에 관한 사례는 주로 영미쪽 국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럽의 경우에는 유럽평의회 등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한 지침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각 대학의 현황을 확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이나 문헌 등에서 확인한 일부 대학에서의 인권교육 혹은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소개하기로 한다.

1. 대학에서의 인권강의 편성 및 강의계획서

1) 시카고 대학교의 인권관련 교과목 모음¹⁾

시카고대학의 인권프로그램은 현세대에서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들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인간의 존엄에 대한 핵심적인 문제를 탐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교과과정은 이러한 핵심적인 문제들과 관련된 학제간 관심사를 동료 교수 및 학생들과 교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과정은 인권을 다양한 규정, 주제 및 지역적 관점에서 탐구하는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인권인턴쉽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미국내 또는 국외의 주요 기관들에서 실질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한다. 이 과정은 세미나, 워크샵, 강의, 영상물을 통해 교육적으로 캠퍼스와 더 넓은 커뮤니티 간의 교류·협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시카고 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인권관련 학습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권과정에 핵심과목으로 인권의 철학적 형성과정, 인권일반이론, 역사와 이론, 현대인권을 개설하고 있으며, 다양한 테마별 인권에 대한 이슈를 공부할 수 있도록 심화과정을 두고 있다. 또한 2015년 봄학기에는 비엔나에서 해외연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 <http://collegecatalog.uchicago.edu/thecollege/humanrights/>

인권에 흥미가 있는 학생들은 또한 인권워크샵에 등록할 수 있으며, 이 워크샵은 현재 진행중인 다양한 교수·대학원생들의 연구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타대학의 저명한 인권활동가, 이론가, 예술가 및 교수들을 연사로 초청할 예정이다. 모든 학기의 워크샵은 교수, 학생 그리고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인권인터넛프로그램은 시카고대학의 학생들이 현실에 내재되어 있는 인권을 이해하고 그 기술을 연마할 기회를 제공하며, 관심사, 주제, 지역에 따라 자유롭게 참가하고 모든 과정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직전 가을학기에 접수를 받아 진행되며 현재는 여름학기마다 각각 3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비정부기구, 정부기관, 해외인권기구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다.

- 소규모 인권프로그램

소규모로 진행하는 인권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주제, 역사, 비교적인 관점에서 인권에 친숙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전공과정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 소규모 인권과정은 졸업생들이 인권 보호를 위한 직업(예를 들면 방송, 영화제작, 법률가, 의료분야, 교사, 정책분석가, 정부 또는 정부간 기구에 종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본 과정은 5개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인권 핵심과정 3개 중 최소 2개를 선택하여야 한다. 나머지 과정들은 인권핵심과정에서 선택하거나 상급과정에서 이수할 수 있다. 수강을 원하는 학생들은 각 대학 관리관으로부터 받은 양식에 소규모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관리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양식은 3학년 봄학기말에 대학관리자에게 제공될 것이다. 소규모프로그램 과정은 1) 학생들의 전공 또는 다른 과정과 중복되어서는 안되며, 2) 교양교육과정으로 인정된다.

- 핵심과정

· 인권 I: 인권의 철학적 형성과정

본 과정은 정의(인권은 정의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임)의 기본적이며 중요한 형성과정 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탐구한다. 특히 정의의 의무와 자선활동, 인도적 지원사이의 차이점과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기구들 간의 관계에서 존엄성과 인간애가 권리에 기반하여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세계빈곤문제, 고문과 대량학살 같은 중대하고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에 위 이론을 적용해 본다.

· 인권 II: 역사와 이론

이 강의는 현대 인권제도의 이론과 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민족국가체제의 형성과 확장 그리고 발현된 사회적 동력의 동시다발적 상승의 산물로서 현대 “인권”문화의 출현에 대해 설명한다. 본 과정은 두가지 대표적인 양상에서의 인권에 대해 논의한다. 신체 및 인간성, 현대적 서구개인주의 관념을 보호하는 권리로서의 인권과 집단(예를 들면 인종, 어쩌면 다국적 기업 같은)과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권리로서의 인권이 그것이다.

· 인권 III: 현대 인권의 이슈

미국의 학생들에게는 전세계의 정의에 관한 관심도가 증대되면서 국제 인권에 대한 연구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본 학제간 과정은 인권규범과 매커니즘의 활용을 위해 다양하고 중요한 현대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기구, 의료전문가집단, 전통적이며 새로운 언론매체와 사회 운동의 역할에 대해 전문분야종사자들이 강의를 개관한다. 본 과정은 Pritzker 의과대학 교수가 공동강의한다. 이 과정에는 고문금지, 보편주의의 대 문화상대주의의 문제, 건강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비엔나에서의 인권 I: 인권의 철학적 형성과정

내용은 인권 I과 같음

- 비엔나에서의 인권 II: 역사와 이론

강의내용은 인권 II와 같음.

- 비엔나에서의 인권 III: 현대 인권의 이슈

강의내용은 인권 III과 같음

- 기타 인권과정들

- 국제-지역 정치학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세계화와 지역권은 새로운 정치를 만들어가고 있다. 본 과정은 현출된 요소(사회적 이슈 발현, 민족-종교적이며 지역적인 믿음, 환경결정론, 성적·생활양식의 정체성문제, 새로운 사회적 움직임, 변형된 정치조직과 조직, 시민개인을 움직이려는 새로운 노력)를 지도화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정치에 대해 연구한다.

- 건강과 인권

본 과정은 인권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 건강과 의료에 대해 정의하고자 한다. “건강권”은 “의료권”을 포함하고 있는가? 우선 미국과 외국간 의료재정분야를 비교해보고, 세계분쟁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보건의료 행위에 대한 특정이슈(고문, 지뢰, 빈곤)를 짚어본다. 또한 독서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건강을 결정하는 것(주거, 교육기관, 고용, 허술한 사회

안전망)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취약계층(입양아동, 난민, 정신장애인)에 대해 공부한다. 마지막으로 건강권에는 제약(製藥)권도 포함될까? 거대한 약물연구와 마케팅사업은 우리나라와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 인도주의적 개입의 역사

냉전이후 세계는 그들을 이끌어가는 정책과 조약 뿐만 아니라 소위 인도주의적 개입의 확산의 모습도 보여왔다. R2P 즉 보호할 책임은 후자의 가장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인도주의적 목적달성을 위해 어떠한 개입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대량학살에 무감각한 동료여행객으로서 제국주의자들 또는 그들을 비난하는 자들을 감싸주는 그들의 뒷배를 비난할 수 있을까? 인도주의적인 추론을 포기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명답은 없고 다만 연구해야 할 많은 자료들만 있을 뿐이다. 우선 인도주의적 개입에 대해 느닷없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개입과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된 전후 UN 평화유지역사와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둘째, 강제적 인도주의적 개입은 현대를 이해하고자 할 경우 놀라울 정도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종교적) 소수민족에 대한 국가간 보호의 역사이자 강대국·제국들의 타국가에 대한 간섭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오스만 제국에서는 안정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반인도주의·인권남용으로부터 보호한 역사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모든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정치의 미래는 슬픈 학대와 인재(人災)에 직면하여 평화유지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승인된 전쟁이라는 다소 덜 악한 합법적인 폭력의 역사가 반복될 뿐이다.

· 인도주의: 역사와 이론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인도주의는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이고 동등하게 적용되는 자비와 동정의 윤리관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주의자들은 세계를 정서적 공동체로 이해함으로써 세계가 변화될 수 있으며, 만일 변화

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통과 학대가 동정심많은 두려움없는 선봉에 의하여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전체적인 개념이 기망하는 것으로 쓸모없다는 공격을 받고 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인도주의자들의 위기를 실제로는 더 나쁘게 하지는 않았더라도 인도주의자들이 실패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인도주의자들은 대중에게 구호와 구제를 약속해놓고 최악의 인권침해자들과 어울리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사실 우리가 질문할 문제중 하나는 역사적 기록에 비추어 우리가 무엇을 비평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인도주의자들은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어디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차별)폐지론자들이 노예제폐지를 이끌어낸 게 사실일까? 사회적 정의를 위해 싸운 건 또 어떠한가? 여성의 구제문제는? 난민구호는? 그러나 이 교과에서는 사례별·시대별로 논의하기보다는 인도주의자들의 활동근거와 합리주의자들(평화주의자, 막스주의자 또는 자유권에 기반한 접근법)과 이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초점을 맞출 것이다.

· 인권: 외국인과 시민

본 과정은 국제적 인권규범, 관습 그리고 체제가 직업을 찾거나, 안전한 곳을 찾아서 또는 단순히 거주할 곳을 찾아서 자신의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혹은 외국인)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공부한다. 만약 인권이 보편적이라면 인권은 국경에 구애받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인권 뿐만 아니라 시민권과 무국적의 개념에 대한 학문적 접근법을 이용한다.

· 다큐멘터리 제작 I

본 과정은 학생들이 다큐멘터리 제작기술을 익히고, 다큐멘터리 제작 II 과정에서 이를 응용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독립 다큐멘터리 비디오 제작에 초점을 둔다. 다양한 스타일의 다큐멘터리 예시를 상영하며 이를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인종·종교적인 표현과

사실과 허구사이의 이동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전 생산방법, 제작과 사후제작기술에 대해 강의한다. 학생들은 다큐멘터리 비디오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해낼 수 있으며, 조를 짜서 각 조가 5분분량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될 예정이다. 따라서 본 과정에는 외장하드드라이브가 필요하다.

· 다큐멘터리 제작 II

본 과정은 논픽션 비디오의 성형과 초안작업을 내용으로 한다. 학생들은 그들의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설명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작기술은 핸드카메라 또는 삼각대사용, 인터뷰 및 마이크 배치, 인터뷰를 위한 조명기술을 익히며 후반제작은 편집기술 및 유통전략에 대해 다룬다. 이 과정이 끝나면 학생들은 공공장소에서 최종 프로젝트물을 상영하게 된다.

· 장애의 인류학

본 세미나는 문화, 사회, 개인적 특징에 대한 기본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적 개념으로서의 인류학적 접근방법에 따라 “장애”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여기에서 우리는 장애인, 그들의 가족과 지지자와 함께한 경험을 토대로 이론적, 법적, 윤리적 그리고 정치적 이슈를 광범위하게 연구한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현장에서 발표한다.

· 러시아 및 유라시아에서의 인권

본 과정은 러시아와 유라시아에서의 인권의 정치적 경제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이 과정에서는 소비에트 연방 이후에 국제기준이 어떻게 “수입”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지역적 정치와 문화는 어떤 권리규범을 형성하는지, 실제로는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많은 포스트소비에트 국가들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 지

역의 역사, 정치적 문화, 사회적 관습들에 대한 지식을 활용하여 가장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권리는 무엇이며, 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문제는 무엇인지를 확인한다.

· 민간인과 전쟁

이 과정에서는 전쟁과 강제이주의 역사에 대해 공부한다. 특히 역사적 위기상황이 전쟁으로 실항민이 된 사람들의 인권보호 증진을 이끌어냈는지에 대해 연구한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들이 난민의 지위와 권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 세계대전, 냉전, 게릴라전쟁과 내전 같은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협정에 투영되었는가? 이 과정에서는 전쟁기간 동안 전쟁과 민간인보호정책의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를 한다.

· 난민과 디지털 기록의 역사

본 과정은 난민과 디지털기록의 역사의 고급과정 세미나이다. 여기에서는 난민, 무국적자와 기타 실항민들에 대한 인권보호 및 인도주의의 발전과정에 대해 연구한다. 이 세미나에서는 정부와 비정부 활동세력들이 강제이주를 이해하고 정당화시키는 다양한 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본 세미나의 한 부분으로 우리는 연구를 위한 디지털기록 활용과 발전, 생성 및 디지털기록보관소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 법의 역사

이 과정은 근대 미국의 법과 사회의 상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법의 원칙과 헌법적 규범이 공공과 개인영역에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규정짓는지를 학습한다. 또한 미국법 형성과정에서의 정치적 투쟁에 대해서도 연구한다. 본 세미나의 주제에는 권리의 의미, 재산·노동·인종과 성적 관계에 관한 규범, 시민불복종과 문화적 역사로서의 법이론을 포함한다. 법률사례, 판결문, 짧은 사례와 법적·역사적 저작물을 함께

읽는다.

- 여성과 성

- 취약계층과 인권

본 과정은 인권관련 취약성과 소극성에 대한 현재의 이론에 대한 것이다. 중증 장애인, 동물 기타 정의의 주체로서 전통적이지 않았던 이들에 대한 인권과 사회적 정의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는 자크 데리다, 엠마누엘 레비나스, 존 롤스, 마르타 누스바움 등의 철학적 견해와 브라이언 투머, 톰 세일스피어 등 사회학적 견해에 대해 토의한다.

- 의료와 국가활동의 한계

넓은 인간의 이동성과 국경의 약화의 시대에 전염병은 매우 빠르고 멀리 퍼지며, 치료에 반응하여 변이하면서 통제(검역, 방역선, 예방접종 및 인구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구에 맞서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공공의료서비스는 질병발생시 이를 처리하는데 갈팡질팡하며, (불완전한) NGO들이 형성되기는 하나 부족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본 과정에서는 인류학, 사회학, 윤리학, 의학, 정치과학에 대한 자료들을 읽고 역학기술과 국가적 정당성의 위기를 이해하며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 인권의 실제

본 세미나는 학생들에게 대학의 프로그램과 현장경험을 통합한 다양한 개념적 체계를 제공하는 학제간 접근법을 사용한다. 본 과정의 자료는 크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기구의 업무분석과 학생들의 개인적 경험의 평가라는 두가지 인턴쉽 경험에 초점을 맞춘다. 본 과정의 절반은 독서와 토론으로 이루어지는데 학생들은 그 때 조별 토론주제를 정하여 발표

한다.

· 성, 범죄 그리고 인권

본 과정은 성에 기반한 범죄발생의 특별한 문맥상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분석기법을 사용한다. 지역 및 국제 사례연구를 통해 문화적 요소 뿐만 아니라 법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상호작용을 검토한다. 또한 성에 특정한 범죄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하여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협평가를 한다. 갈등을 경험하거나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에서 국가 또는 공동체가 보이는 반응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학습한다. 국제인권규범과 현재의 인권보장담론간의 상관관계는 이 과정의 핵심과제이다.

·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 대형참사 이후의 정의

본 세미나는 전쟁, 대량학살과 테러가 생존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평범한 남녀를 가해자로 만드는 사회적·심리적 요소에 대한 학제간 세미나이다. 이 과정에서는 역사학자, 심리학자, 사회심리학자, 인류학자, 언론인 그리고 법학자들이 홀로코스트로부터 9/11 이후에 이르기까지 전시 잔학행위에 대한 이해에 미친 영향과 그들의 개인과 사회에 끼친 영향력에 대해 학습한다.

2) 하버드 대학교 - 사회적 의료 강의계획서

· 건강과 질병의 사회적 근원

본 과정은 사회적 의료의 핵심 이슈와 문제점에 대하여 학습한다. 사회력은 어떻게 병리학으로 구현할 수 있는가? 무엇이 실제 현대 의학에 윤리를 고려하도록 압박하고 있는가? 정치·경제·역사적 경향은 어떤 방식으로 서로 다른 집단간 질병분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의료기관의

새로운 추세가 어떻게 사회의 대다수 취약계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가? 이 과정은 아이티, 페루, 러시아, 멕시코 및 미국의 사회의료 실무자로 종사하는 의사 및 의료인류학자들이 한 팀을 이루어 진행한다. 본 과정은 1) 과정의 기초지식(예: 과정소개, 여성, 빈곤과 에이즈), 2) 사회의료의 개관(인종불평등과 의료소득, 희망의 정치·경제) 및 3) 세계보건 미래조망(담배산업과 담배제재, 건강과 인권[수용자], 의료개혁의 미래, 인권으로서의 건강)이라는 크게 3개의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강의, 사례연구, 토론으로 진행된다.

3) 시카고 대학교 -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 인권과정: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

본 과정은 각 국가들과 국제 사회가 과거의 중대한 인권침해를 다루는데 취한 서로 다른 접근방법과 이전의 독재국가가 민주주의·법치국가를 근간으로 한 사회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 학습한다. 또한 진실, 화해 그리고 역사관련 위원회들과 인권침해 가해자들을 기소할 국내·외(또는 이들의 연합) 기구들, 인권 및 인도주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정화”법과 기구 개혁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책임을 지는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 사면법, 특정 상황에서 국제기구에 의한 통제 부족 등을 포함한 과정상 장애물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이러한 모든 메커니즘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심각한 침해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본 과정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전체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과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학습할 예정이다.

2. 대학 내 인권관련 기구에서 운영중인 교육 프로그램

1) 하버드 케네디 스쿨, 인권정책에 대한 카(Carr) 센터²⁾

Carr센터에서는 프로그램 운영이 가장 주된 영역이다. 이 프로그램들에 자원과 노력이 집중되며 때로는 수년간 진행되기도 한다.

Carr센터의 현재 프로그램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대형참사대응실무(MARO) 프로젝트

MARO 프로젝트는 미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MARO 핸드북에 개략적으로 서술된 개념과 원칙을 군사적 및 시민적 정책입안자들에게 의해 채택할 것을 장려하는 일을 한다.

- 인신매매와 현대 노예제도에 대한 프로그램

모든 차원에서의 인신매매 이해범위를 확대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러한 전지구적인 상처를 고심하여 다룰 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 권고문을 개발한다. 본 프로그램에서는 연구 및 강의를 수행하며, 학자들과 정책입안자, 실무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세계의 반 인신매매관계자들, 지도자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

- 섹슈얼리티, 젠더 그리고 인권 프로그램

연구와 프로그래밍, 교육을 통해 이 프로그램은 미국 및 전세계에 걸쳐 성소수자들과 여성을 위한 인권정책의 한계와 가능성을 섹슈얼리티와 젠더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 프로그램

새롭게 인식된 물과 위생에 대한 인권문제를 다룸으로써 물과 위생에

2) <http://www.hks.harvard.edu/centers/carr/programs/human-rights-in-education>

대한 접근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본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좋은 정부, “점진적 실현”의 개념과 비즈니스와 인권을 위한 보호, 존중, 국제 가이드라인에 대해 연구한다.

- 과거사 정리

과거사정리 프로그램은 많은 국가들이 직면해 있는 대규모 인권침해로 인해 무너진 국가의 균형을 회복하고 과거의 유산을 보정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기에는 사회의 취약한 부분을 보호하고 안정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기구개혁과 정당성 확보문제, 형사 기소, 진실위원회, 보상등을 아우른다.

- 교육에 있어서 인권 프로그램

국내외의 공식·비공식 교육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장학제도 마련, 응용 학습과 정책수립 촉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미국원주민과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법안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UN의 토착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을 토대로 미국 원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는 Lisa Balk King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 라틴아메리카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의 주된 관심사는 주권과 미국내 시스템, 현 인권사례의 학제적 분석과 선거의 투명성 증진에서 청소년의 참여에 NGO가 미치는 영향이다. 이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인권보호에 이 중언어와 전자저널이 필요함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2) 옥스퍼드 대학교 평생교육부³⁾

본 과정은 국제인권법의 이론과 실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제인권법의 입문과정에서는 관련법률, 법원칙과 의무 및 집행기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며, 이미 국제인권법을 공부하였거나 실무에서 상당한 전문적 경험이 있는 때에는 국제인권법 고급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의 특정한 전문영역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국제인권법분야의 권위자나 활동가들의 강의, 실무가들의 토론을 포함하고 있다.

· 국제인권법 입문과정

국제인권법 입문과정에서는 1) 국제형사법, 2) 경제·사회·시민적 권리, 3) 젠더, 섹슈얼리티와 국제인권법, 4) 시장(경제)에서의 인권, 5) 국제인권법과 난민법 중에서 선택하여 소규모 그룹토의를 할 수도 있다.

· 국제인권법의 기초

본 핵심기초과정은 학생들에게 국제인권법과 집행체제에 대한 기초지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과정은 국제법이나 국제인권법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는 학생들에게 열려 있다. 이 과정의 첫 번째 부분은 국제인권법을 뒷받침하는 국제법의 기본 핵심원칙과 인권의 철학적·역사적 발전과정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국제적·지역적 인권법과 집행기구에 대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는 유엔헌장과 조약에 기반한 기구 및 아프리카, 아메리카, 유럽과 세계의 다른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지역단위 인권법과 체계에 대해 비교·분석한다. 마지막 부분은 빈곤과 인권, 권리 또는 여성, 인도주의법과 중재, 난민의 권리, 국제형사분쟁과 인권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의 비정부기구의 역할 등 세부적 이슈를 학습한다.

· 인권옹호와 보급

3) <http://www.conted.ox.ac.uk/courses/summerschools/ihrlls.php?content=pd>

본 과정은 국제인권법의 발현과 집행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강조한다. 과거 세대에는 세금변호사나 기업법률가라는 말이 있었다면 이제 국제인권실무자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조약, 관습국제법과 “연성법” 제도들에서 인권규범을 분석할 것이며 다양한 국제, 지역, 국내의 집행체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것이다. 각 부분에서 학생들은 국제인권법에서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 특히 비국가행위자의 책임, 국가행위자에 의한 인권규범의 돌발적인 내재화, 문화상대주의와 다른 형태의 인권에 대한 회의주의에 직면할 것이다.

- 국제형사법

본 과정은 국제범죄의 본질과 국제재판소 및 국내법원에서의 기소에 관한 다양한 문제를 다룬다. 특히 형사제재의 적용으로 특히 인권, 평화와 안보에 관련된 국제사회의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본 과정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ESCR)의 구현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실제적 문제들을 학습한다. 지난 25년동안 국제·지역·국내에서 이들 권리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확하게 할 중대한 발전이 있어왔다. 학생들은 이러한 발전상황에 대하여 토의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개념적 분석과 함께 본 과정에서는 ESCR의 구현을 위한 메커니즘과 도구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며 ESCR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및 평등권과의 관계 뿐만 아니라 특히 주거, 건강, 식품, 물, 교육과 노동에 대한 권리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젠더, 섹슈얼리티와 국제인권법

본 과정은 인권실무가가 진행하는 과정으로 비엔나총회 결의안의 인권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라는 인권을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넓은 관점으로 확장시킨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권감시기구보고서, 유엔공식문서, 안전보장이사회 문건과 논문을 통해 학생들은 인권에 대한 기본윤곽을 배우게 된다. 비평가들은 인권법이 서구의 체제에 맞추어 권리를 평가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이들은 문화적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한다. 어떻게 인권이 젠더나 섹슈얼리티 논쟁과 연관되는가? 왜 성적소수자 활동가들은 그들의 활동을 위한 수단으로서 인권시스템을 받아들였나? 페미니스트들은 어떻게 인권시스템을 구축해왔는가? 성산업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이 되고 있는가? 인권법 밑에 덮어두어야 할 것인가? 인권법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에 대응하기에 적절한가?

· 시장에서의 인권

이 과정은 국제인권기준과 국제무역 및 투자, 기업지배구조와 경쟁, 국제금융과 경제 개발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룰 특별한 주제는 글로벌 금융(글로벌 금융위기 포함), 회사와 상업, 원조와 경제개발, 국제무역, 현실에 놓여있는 가능성과 전망을 산술적으로 측정하는 것과 좋은 지배구조와 법의지배의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인권에 관련된 원칙, 정책, 법률과 기구에 대한 것들이다.

· 국제인권법과 난민

난민의 세계적인 이동은 계속 진행중이다. 분쟁과 심각한 인권침해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강제이주의 동력이 되고 있다. 인권문제-그리고 현실에서의 제도-는 우리 모두에게 직접 관련이 있다. 이 세미나에서는 국제인권과 국제난민법이 포용할 수 있는 국제적 보호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1967년 의정서, 국제 및 지역 인권기구와 관련된 1951년 협약

과 지역·국내문헌을 검토한다. 이 과정을 마치면 인권과 난민법이 곤경에 처한 난민에 답이 될 수 있는지, 실제로 의미가 있는 인권이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

3) 버지니아 대학교 로스쿨⁴⁾

국제인권법 임상실습과정은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인권보호기관에서 인권변호사와 협업을 하거나 미국내·외의 비정부기관에서 실무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 실무수습을 하는 학생들은 1) 테러와의 전쟁에서 국내안보, 2) 정보와 표현의 자유, 3) 성차에 기반한 폭력, 여성과 성적소수자의 권리, 4) 원주민의 권리, 5) 법적인 능력과 권한, 6) 교육권, 7) 효율적인 배상을 받을 권리, 8) 입법개혁에 관한 권리, 9) 생명권과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10) 중동에서의 인권, 11) 국제형사재판과 관할, 12) 인권침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 13) 토지법과 주거의 자유, 14) 인권보호와 이행을 위한 이행적 정의(과거사)/책임, 15) 건강과 의료관련 권리, 16) 난민의 권리와 같은 분야에서 실습을 한다.

3. 인권교육 관련 자료 및 의견교환을 위한 모임

1) 미국 인권교육자들의 모임⁵⁾

미국 인권교육의 임무(HRE USA)

HRE USA는 미국내 인권교육(HRE)의 광범위하고 열정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구축된 인간의 존엄, 정의와 평화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HRE USA는 구성원이 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학교, 대학, 기관 같은 공식 혹은 비공식 교육공간의 HRE로 통합하고, 2) 연방 혹은 주의

4) http://www.law.virginia.edu/html/academics/humanrights/hr_program.htm

5) <http://www.hreusa.net/>

교육정책, 기준, 과정, 학제에 HRE를 포함할 것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상호협력과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사전·재직중 교사에 대한 훈련프로그램 서비스와 HRE의 자료를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HRE는 매년 정기세미나 등을 개최해 오고 있는데, 미국에서 그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에서는 주로 미국내 인권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초안을 작성하는 일을 한다. 특히 2011년 9월 16-17일 캠브리지와 메사추세츠에서 개최된 “미국 학교의 인권교육전략수립”에 75명 이상의 교육자, 학생, 고등교육분야 교수, 비영리기관 종사자, 국내 교사연합 대표 기타 이해관계인이 참가하였다. 이 세미나에서 작성한 초안은 새롭게 창립된 미국의 인권교육 네트워크에서 채택하였으며 또한 2011년 12월 모든 아동에 대한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골자로 한 인권교육과 훈련에 관한 결의안이 유엔총회에서 채택되는데 기여하였다.

HRE USA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 평등과 차별받지 않을 기본적인 인권에 집중한다. 특히 다양성, 포괄성, 투명성, 무결성, 책임, 책무, 존중받고 정직한 소통과 공유를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

HRE USA에서 생각하는 인권교육이란 개개인이 자신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히 이행하며,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에 기반하여 그들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가치를 개발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평생교육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하여 동 협회는 의사결정을 할 때 합의에 기반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의 제약으로 전체토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운영위원회나 기타 실무자그룹이 다른 의사결정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마지막 결정은 네트워크 전체의 비전이나 목적에 따라야만 한다.

2) 인권교육협회⁶⁾

인권교육협회(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HREA)는 인권배움, 활동가와 전문가 훈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기술을 통한 공동체모임을 지원하는 국제 비정부기관으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태도와 행동,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화롭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공동체가 발전을 지속해나갈 수 있도록 힘써왔다. 인권교육협회는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시행과 관련있는 개인, 비정부기구, 정부간 기구 그리고 정부를 대상으로 하여 1) 과정 및 자료개발 보조, 2) 전문가그룹 훈련, 3) 교육훈련자료 정보제공, 4) 기타 관련 연구 및 평가, 5) 인권교육지킴이와 교육자의 네트워크로서의 기능을 제공·수행하고 있다.

6) <http://www.hreusa.net/>

제7장 대학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대학에서 지원해야 할 점

1) 교양측면의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교육은 반드시 필요하고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향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인권교과목을 확대하고 교양 필수로 지정하는 등 대학생 전체가 인권관련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일반교양에서는 인권의 역사, 범죄와 인권, 국가와 인권 등 사회 전반 혹은 인권 전반에 걸친 사항을 주로 내용으로 삼는 과목들의 개설이 필요하다. 또 인권관련 교과목의 수적인 증가도 필요하다. 조사결과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대학의 과반수 정도는 인권관련 과목이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상태이고, 개설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다양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본 연구진이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관련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강사들도 역시 인권교육의 확대를 대학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 필수적인 사항으로 제시한다. 인권은 다양한 방면에 여러 부분에 걸쳐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권의 다양성은 현재 대학의 인권교과목 개설에는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인권의 다양성을 담보하기 위한 인권과 관련한 다방면의 과목개설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교양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전공측면에서도 요구된다.

2) 전공측면의 인권교과목 개설 확대

인권은 대학생 전체가 알아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일

부분야에 있어서는 특별히 인권 중 특별한 부분이 강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를 담당하는 분야에 진출할 대학생의 경우에는 노인의 처우나 노인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특별히 인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찰분야로 진출예정인 학생의 경우에는 범죄수사나 범죄예방 등 경찰활동과 관련한 인권에 대해 교양측면에서의 일반적인 강좌에서 보다 상세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하지만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분야와 관련된 인권강의의 개설은 아직은 미흡한 면이 있다.

따라서 전문분야에 있어서 예컨대 복지와 관련하여 노인과 인권, 청소년과 인권, 복지와 인권 등의 과목이나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학교와 인권, 인권교육방법론 등의 개설을 대학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대학 차원에서는 이러한 인권과목들이 자유롭게 개설될 수 있도록 행정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본부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 같이 기본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 인권관련 교과목 운영상 지원

교과목이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인권관련 교과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물적, 인적 요소 등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다수가 수강하는 이론 강의와 소수가 참여하는 토론 수업 등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물적인 설비를 갖추는 필요가 있다. 물론 기존의 시설을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요구된다.

인권교과목을 확대 개설하는 데 있어서는 국가정책적 측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 권고 등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대학차원에서는 인권관련 교과목을 수적인 측면에서 단순히 확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권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나 강사도 충원할 필요가 있다. 인권만을 연구하고 강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충원이 뒷받침 되어야 인권 과목개설 혹은 신설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특정 관련 사안에 대해 외부 강사를 활용할 경우에는 강사료 등을 지원한다거나, 인권관련 교재나 자료의 제작에 대해 대학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 인권관련 영화 및 다큐멘터리를 강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드는 비용지원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도 대학생의 인권의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대학 차원에서 포스터 등을 통한 인권홍보, 인권상담제도 개선을 통한 구제방안 마련 등 인권존중문화가 교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인권과 관련된 강좌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4) 인권센터 건립 및 활성화를 통한 인권중심 대학 구축

현재 우리나라 대학 중 인권센터가 설치된 곳은 서울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 불과하다. 물론 이 대학의 인권센터는 학교 자체의 재정적 지원이나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서 그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에 대한 인권침해 사안 상담 및 구제, 성폭력, 성희롱 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담당한다.

우리나라의 대학 내 인권센터가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나 인권에 대한 자체 프로그램 개설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하버드 대학의 센터의 경우에는 보다 더 다양한 프로젝트 또는 인권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내 인권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이 센터는 강좌 개설의 다양성을 위한 대학 본부에 대한 노력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대형참사, 노예제도, 섹슈얼리티, 물과 위생, 과거사 정리, 교육, 라틴아메리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대학 차원에서 센터에 대한 방대한 지원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보인다.

우리나라 대학 인권센터는 설치된 대학이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대학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뒷받침이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인권센터는 단순히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기구 또는 상담기구

의 수준이 아니라 대학의 교수들이 모여서 인권에 대해 논의하고 과목개설 여부를 협의하며, 교육방법 등을 개발할 수 있는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대학 본부 자체에서 인권에 대해 관심과 물적, 인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인권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각 대학이 인권센터가 대학의 인권교육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면 대학생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권관련 활동들은 인권허브로서 대학 내 인권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예가 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활동>
- 인권관련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련 사이트 운영
 - 성희롱 예방 교육 특강, 성평등 교육, 오프라인 성교육, 자기방어훈련 연극놀이를 통한 성평등 교육
 - 인권연구
 - 2014 국제 인권동계강좌 “인권과 아시아” : 세미나형식과 강연, 소그룹 발표, 영화를 통한 인권쟁점 이해, 외국의 현지 활동가와의 국제 화상통화를 통한 발표 및 질의응답 등
 - 열린 인권강좌 운영 : 국가와 인권, 빈곤과 인권, 시온주의와 인권, 노동과 인권 등 다양한 주제의 가계 인사를 초청한 강의 운영
 - 국제개발과 인권 프로그램 운영
 - 인권과 관련한 국제적 저명인사 초청 등 국제 학술세미나 개최
 - 학내 인권의식 증진 활동
 - 인권주간 운영을 통한 학내 구성원의 인권에 대한 관심 증진
 - 인권연구 프로젝트 공모전 개최

2. 국가 정책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점

1)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 법제화

인권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인권에 대한 교육은 국가나 사회가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보면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역시 의무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류지현/허창영: 177)

인권교육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이를 법제화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배경내 2009: 96). 하지만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공식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교육의 전 단계에서 인권교육을 필수로 하는 규범적인 근거를 두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했던 인권교육에 관한 법률안의 경우 이러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즉 위 안에 따르면 모든 사람에게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를 부여하고(안 제4조), 대학교를 포함한 각 급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7조).

이러한 인권교육 관련 법률의 제정이 어렵다면 기존의 법을 개정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인권교육의 법제화가 가능하다. 현행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3-7호, 2013.12.18.)에서는 교육과정의 성격을 다양성 추구로 두고 있으면서, 총론에서 인권교육을 필수과정으로 선언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르면 6학년에 인권과 사회적 소수자에 관련된 내용을, 4학년과 6학년에서 인권, 사회적 약자, 소수자 권리 등의 용어 등을 포함시켜 인권교육의 내용을 일부 필수로 담고 있다. 중학교는 7학년 인권보호와 헌법, 10학년에 인권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체계가 제시되어 근대국가의 통치권력의 근원이 되고 있는 헌법의 의미를 인권의식의 성장 측면에서 파악하게 하고 있으며 현대사회의 인권문제 성격을 파악하고 생활주변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도와 능력의 형성에 노력하도록 강조하고 있다.(허수미 2008: 154). 고등교육에 있어서도 초중등교육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고등교육법의 개정을 통해 인권교육의 의무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보인다.

2) 인권교육 강화를 위한 재정적 지원

교·강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권관련 강의를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 중 하나로 인권과 관련한 강사를 초청한다거나 기관 등을 방문하는데 있어서 재정적으로 지원이 부족함을 들고 있다. 사실 수도권에 위치한 학교에 비해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인권관련 시설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지방의 대학생들이 현장참관을 하는 데는 비용면에서 수도권 학생들보다 더 큰 부담이 된다.

인권은 단순히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현장참관이나 인권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은 단순한 강의보다 더 효과적인 면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교육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각 대학에 지원을 하는 것도 대학에서 인권교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인권친화적 대학 교육정책 추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권과목의 개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수나 학생 모두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권과 관련한 강좌는 개설되지 않거나 개설되더라도 소수의 과목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인권의 권리로서의 중요성과 인권침해가 사회에서 갖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대학에서의 인권강의는 소수의 일반적인 강좌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물론 대학의 인권교육은 대학교육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의무화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인권관련 강좌는 다른 강좌와는 달리 인간이 마땅히 가져야 할 보편적인 권리를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제화를 통한 인권교육의 의무화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대학평가시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여부를 반영하거나 인권관련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가점이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식의 정책을 통하여 인권교육을 간접적으로 의무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대학이 현재 추구하는 가치가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으로 인해 사회가 점차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대학 평가시에 입학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위주의 평가요소만을 반영한다면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 향상은 소원해질 것이다. 따라서 대학을 평가하는 요소로 인권과 관련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바이다.

4) 인권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인권은 단순히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 숨쉬는 권리이다. 인권의 이러한 특성은 국가가 주도하는 정책적인 인권에 대한 강조뿐만 아니라 사회 내에서 인권과 관련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게 한다. 인권의식 및 인권존중의 풍조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신뢰회복도 필요하지만, 아울러 인권관련 단체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비정부단체는 국가를 감시하고 국가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활성화가 더욱 요구된다. 대학 인권교육과 관련된 단체를 만들 경우에 단체의 계속적 운영을 위해 국가가 재정적, 물적 지원을 하는 것도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인권교육의 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야 할 점

1) 인권관련 교과목 필수과목 지정 권고

금년에 대학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 인권관련 교과목 개설비율을 보면 조사응답 대학의 57%가 인권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당 인권 관련 교과목 수를 보면 6.22개에 이른다. 회신하지 않은 58개 대학을 위 통계에 포함하면 우리나라 대학 중 50%는 인권관련 과목을 한 과목도 개설하지 않고 있다는 결과가 된다. 게다가 위 통계를 작성하면서 직업전문 대학이나 원격 대학 등은 제외하였으므로 인권관련 교과목이 한과목도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 전체 대학의 과반수가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관련 교과목 수에 있어서도 학교별로 편차가 있으므로 고르게 개설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생 설문조사에서는 인권강좌의 확대에 있어서 교양(98%), 전공(84%)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있다. 교수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90% 이상이 인권과목을 교양과목 혹은 전공과목 내에서의 확대, 교양필수 과목 지정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을 주었다. 게다가 학생설문 조사에 따르면 인권강의를 듣고 난 후 인권의식 향상 등 효과 면에 있어서도 응답자 중 98%이상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권의식 향상이나 학생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위의 통계에서처럼 대학 내에 인권관련 교과목 자체가 개설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게다가 인권과 관련한 교과목의 다양성도 확보되어 있지 않다. 이는 대학의 자율성과 인권관련 교과목에 대한 대학 자체에서의 관심이 낮다는 데 기인한다. 대학들은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업률이 높은 학과 및 과목개설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학을 운영하는 주체가 대학을 지식적 측면의 전문가 양성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점과 학생들이 취업률이 높은 대학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보인다.

대학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목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대학에서 학습한 내용은 사회에 바로 적용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을 내용으로 하는 과목들을 모든 대학생들이 수강

하고 인권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나라 인권에 대해 총괄하고 있는 기구로서 대학의 인권교육에 대해 지금보다 더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일반적인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인권관련 교과목을 필수적인 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분야, 예를 들어 경찰, 군인, 의료, 복지, 교육 분야 등에 대해서는 인권과 전공을 연관지어 이를 전공필수과목의 형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 등에 지정권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인권관련 자료 정리 및 교재 개발

인권과 관련하여 본 조사에서 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조사에서는 인권 강의에 효과적인 강의방법으로 관련 동영상 시청이 22.2%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강의를 21.8%로 그 뒤를 이었다. 학생들은 다음으로 관련인물 초청강의, 팀프로젝트 발표, 현장학습, 세미나식 강의 등의 순서로 인권강의에 효과적인 강의방법을 들었다. 교수들의 경우에는 강의를 중심으로 관련인물 초청을 통한 인권강의에 선호도가 높았다.

교재의 경우에는 전문서적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으나 신문기사나 소셜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의 응답률은 38%에 불과하여 그리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는 결정례집을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는 '다섯 개의 시선'과 같은 동영상 자료를 사용하는 등 거의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위의 설문조사에서와 같이 학생들은 강의식 수업보다는 동영상이나 관련인물 초청강의, 팀프로젝트 발표 등 강의와 혼합된 형식의 수업을 선호한다. 동영상의 경우에는 시각적인 효과와 함께 음성, 연기자의 감정, 생각 등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매체보다는 인권의식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매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

공하는 시각적인 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때 많지 않고, 게다가 검색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영화제를 연다거나, 혹은 인권관련 동영상 등을 제작·지원하는 형식으로 동영상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인권교육의 효과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국가적 차원에서 인권을 홍보하거나 인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를 모은 자료집을 제작한다거나, 대학에서 인권관련 강의를 하는 교·강사가 인권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취합하여 전달해 주거나, 토론회, 팀프로젝트 등 다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대학수준에 맞는 인권교재 개발, 범죄와 인권, 소수자와 인권, 여성의 인권, 장애인의 인권 등 특화된 주제에 대한 인권교재 개발, 인권관련 법규 모음집 제작 및 배포도 대학의 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인권교육일반, 기본권, 여성, 장애인, 노인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아울러 추진되었으면 한다.

3) 인권교육 관련 네트워크 구축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는 인권교육을 위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의 인권교육자들의 모임(HRE)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권교육자들의 모임을 만들어서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 기관과 같은 공식, 비공식 교육공간에서의 인권교육자들이 모여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연방 혹은 교육정책, 기준, 과정, 학제에 인권교육을 포함할 것을 장려하는 행위 등을 하고 있다.

또한 HRE는 세미나를 통해서 미국 내 인권교육 전략을 수립하고 초

안을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는 인권교육협회라는 민간단체가 인권배움, 활동가와 전문가 훈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온라인 기술을 통한 공동체 모임을 지원하는 등을 일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인권교육에 한정하여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물적, 인적 네트워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도 혹은 재정지원을 통한 인권교육 중심의 기구를 만들고 활성화하면 전체 학생들의 인권의식 향상 나아가 국민의 인권의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도하여 대학총장 및 기획처장 등 대학 운영의 주체가 되는 인사들과 함께 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거나, 대학의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교강사들을 모아서 강의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인권교육 강화노력도 인권교육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 및 인권강사 양성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인식 확산에 효과적인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인권교육에 대한 홍보는 매우 미흡하다. 이는 단순히 대학교육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대학에서 인권에 대한 강의를 하는 교강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현시점에서 인권이 갖는 위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도 몇몇 발견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전체에서 인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관장하고 권장하면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권고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인권관련 문제들보다 인권교

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인권에 대한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인권위원회 차원에서 홍보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원회는 정부와는 독립한 기구로서 정부에 대해 인권교육의 필요성과 그 효과적 측면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아울러 국민에게 교육을 통한 인권의식의 확산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의 증진을 위해 인권과 관련한 전문 강사 양성을 하거나, 혹은 기존의 인권관련 교과목 교·강사들을 활용하여 조중고생, 학부모,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국가의 구성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록 1 - 인권관련 강의계획서>

<강의계획서 목록>

번호	대 학	제 목
1	경상대	인권사회학
2	경희대	노동인권감수성 tok!, Talk!
3	고려대	사회적 이슈와 인권
4	단국대	인류와 인권의 발자취
5	대구한의대	현대사회와 인권
6	서강대	인권과 정의
7	서울대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8	영남대	인권과 유교사회
9	전남대	현대사회와 인권
10	충남대	인권과 현대사회
11	건국대	국제인권법
12	경희대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of Human Rights
13	서울여자대	법과 인권
14	동국대(일반대원)	기본권특수연구
15	부산대	법과 인권
16	경기대	인권과 교정보호
17	서울대	민주시민과 헌법
18	서울대(원)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19	중앙대(원)	기본권론
20	호남대	경찰인권론
21	그리스도대(원)	인권과 사회복지
22	전북대	인권과 사회복지
23	대구사이버대	인권과 복지
24	전북대	인권정책론
25	경기대	여성과 인권
26	군산간호대	인권과 성윤리
27	동국대법무대학원	여성인권론

28	성공회대학	여성과 인권
29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인권과 Gender
30	연세대	근대의 생활영역과 여성,노동
31	전남대(원)	젠더와 인권철학
32	한국방송통신대	남녀평등과 법
33	이화여대(일반대학원)	법여성학
34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젠더판례연구
35	고려대학교	북한인권과 탈북자문제
36	그리스도대학교	이주난민과 사회복지
37	충북대학교	다문화 사회와 소수자 인권 세미나
38	청주교대(원)	다문화 사회와 인권
39	루터대학교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
40	부산대학교	다문화사회와 인권
41	카톨릭대학교	환경, NGO, 인권과 국제정치
42	건국대학교	국제사회와 인권
43	고려대학교	국제인권
44	동아대학교	동북아평화와 인권
45	영남대학교	인권과 정치
46	전남대학교	인권과 국제관계
47	충북대학교	인권과 평화
48	부산대학교	인도주의: 인권과 해외개발원조
49	한양대학교	국제인권법
50	창원대학교	범죄와 인권

인권 일반/사회

경상대학교

교과목명	인권사회학	개설형태	사회학과 / 전공선택 / 3
수업개요	<p>현대 사회에서 인권의 중요성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아울러 인권은 사회의 주요 가치로 자리 잡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권 보호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지대하며, 인권 실행 수준은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관계에서도 주요한 기준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그에 따라 인권 실천의 발전 문제는 앞으로 더욱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인권에 대한 일반 사항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관찰되는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 노인, 어린이, 결혼 이주 여성, 외국인노동자 등의 인권 문제가 주요 사회 관심사가 되고 있다.</p>		
수업목표	<p>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 강좌는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사회학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인권의 성격과 인권의 발전 과정을 논의하며, 사회적 약자 중심으로 겪는 현대 사회에서의 인권 상황, 인권 증진의 사회적 방안 모색 등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인권 문제를 전망하며, 일상생활과 지역 공동체에서 인권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사회학적 이해를 도모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 강좌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활동을 통하여 인권 발전과 증진을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을 이해하고자 한다.</p>		
교재 및 참고자료	<p>주교재 : 마이클 프리만,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2005) 참고서적1 :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2007) 참고서적2 : 최현, 인권, 책세상(2008) 참고서적3 : 잭 도널리, 인권과 국제 정치, 오름(2002) 참고서적4 : 차병직, 인권, 살림(2006) 참고서적5 : 김중섭 편저, 한국 지역사회의 인권, 오름 (2001)</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좌 개요 설명 인권의 개념, 인권 사회학의 이해		
2주	서구의 인권 발전		
3주	현대 인권 이론 - 유엔의 인권 발전 - 자유권, 사회권		
4주	인권 발전의 사회적 조건		

5주	인권 발전의 토양- 인권 문화의 확산
6주	인권 발전과 지역 공동체 - 인권도시 만들기 운동
7주	인권 실행의 국제적 협력
8주	중간고사
9주	인권 현실의 이해- 조별 발표 1조, 2조.
10주	인권 현실의 이해- 조별 발표 3조, 4조.
11주	인권 현실의 이해- 조별 발표 5조, 6조.
12주	인권 실천의 갈등 - 발전주의와 생태주의
13주	인권 실천의 갈등 - 보편성과 문화적 상대주의
14주	인권 발전의 사회적 장치 현대 사회에서의 인권 전망 - 전지구화, 세계주의
15주	강의 평가 기말고사
16주	

인권일반/사회

경희대학교

교과목명	노동인권감수성Tok!Talk!	개설형태	배움학점제 / 자유선택 / 2
수업개요	<p>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개념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자신의 몸으로 노동권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고 스스로 인권의 중요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교육과정이다.</p> <p>쌍방향적 의사소통과 학습자의 역동적 참여를 통해 노동인권을 존중할 줄 아는 감수성을 키워 21세기 공감형 리더의 힘을 길러줄 것이다.</p>		
수업목표	<p>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개념에 대해서 이해한다.</p> <p>노동인권의 소중함을 감수성 훈련을 통해서 몸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p> <p>쌍방향적 의사소통과 학습의 참여로 협동, 협력, 공존과 스스로 인권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p>		
교재 및 참고자료	<p>부교재/참고자료</p> <p><날아라 노동 꼭꼭 숨겨진 나와 당신의 권리>, 은수미, 부키, 2012.</p> <p><나는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할까?>, 이철수외, 철수와영희, 2011.</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수업개괄 설명		
2주	노동인권의 이해1 - 일,근로,노동의 의미		
3주	노동인권의 이해2 - 노동과 노동자		
4주	노동인권의 이해3 - 동그라미의 비밀		
5주	감수성 훈련1 - 나,너,우리		
6주	감수성 훈련2 - 공감훈련		
7주	감수성 훈련3 - 소통의 기술		
8주	중간고사		
9주	노동법적 권리 이해1 - 근로기준법		
10주	노동법적 권리 이해2 - 산업재해		
11주	노동법적 권리 이해3 - 임금		
12주	노동법적 권리 이해4 - 노동시간		
13주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1 - 노동인권실루엣		
14주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2 - 차이와 노동		
15주	노동인권 감수성 교육3 - 차이와 노동		
16주	기말고사		

인권일반/사회

고려대학교

교과목명	사회적 이슈와 인권	개설형태	교양교육실 / 교양선택 / 3학점
수업개요	인권의 관점에서 사회적 이슈를 이해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함.		
수업목표	사회적 이슈를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가능한 합리적 대안을 찾아 실천하기. 인권에 대한 이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해결.		
교재 및 참고자료	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제3판(2010)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소개 및 과제부과. 사형제도와 생명권.		
2주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3주	간통죄 성적 자기결정권.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		
4주	지문날인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민간인사찰과 감시받지 않을 권리.		
5주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채플과 종교의 자유.		
6주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		
7주	촛불시위와 집회의 자유.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인권.		
8주	중간고사		
9주	4대강사업과 환경권. 체벌과 아동의 인권.		
10주	낙태와 여성의 인권. 성의 상품화와 성매매여성의 인권.		
11주	성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 광기의 시대에 정신장애인의 인권.		
12주	한반도의 분단과 탈북자의 인권. 세계화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13주	다문화 시대와 혼혈인의 인권. 국경 없는 결혼과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14주	사이버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 성의 개방화와 미혼모의 인권.		
15주	잔혹한 시대에 범죄피해자의 인권. 소수자의 차별과 평등권.		
16주	기말고사		

인권일반/사회

단국대학교

교과목명	인류와 인권의 발자취	개설형태	학과 / 교양선택 / 3학점
수업개요	<p>인권은 인간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다. 본 강의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을 역사 속에서 자기문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역사적인 인권 선언 내용을 학생들이 직접 검토,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인권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역사화(문제화)하려는 태도를 기르고자 한다.</p>		
수업목표	<p>‘인권’에 대한 개념을 역사 속에서 고찰하고 인권에 관련한 쟁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교양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보편적인 지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앎으로써 앞으로 자신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까지도 폭넓게 이해하는데 기초적 소양을 함양할 수 있다.</p>		
교재 및 참고자료	<p>류은숙,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하승수, 《청소년을 위한 세계인권사》, 두리미디어</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좌 개관		
2주	인권의 의미		
3주	흑인여성의 권리		
4주	교육권		
5주	아동의 권리선언		
6주	인권의 뿌리와 종교의 자유		
7주	근대시민혁명과 인권의 발전		
8주	중간고사		
9주	동양에서의 인권		
10주	인권문서들		
11주	노동기본권, 사회권		
12주	차이와 차별		
13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14주	‘인권’ 영화 감상		
15주	기말고사		
16주			

교과목명	현대사회와 인권	개설형태	교양과정부 / 교양선택 / 2학점
수업개요	18세기 유럽의 부르조아들의 권리주장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인권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로부터 집단적 권리, 선언적 권리 주앙의 논의까지 담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국가에 대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타인에 대하여 그 권리의 존중을 요청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다. 다만 그러한 주장에 앞서 인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권의 의의와 역사적 배경,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권의 범위, 우리나라에서의 인권보장 실제 등을 상세히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수업목표	오늘날 민주사회에서 인권에 대한요구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아동, 장애인, 소수자, 이주 근로자, 이주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민주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층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될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의 역사적 배경, 의의와 실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키고자 한다.		
교재 및 참고자료	조성제, 《현대사회와 인권》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인권의 개념		
2주	인권의 역사적 배경, 인권과 기본권의 비교		
3주	수사절차와 인권(1)		
4주	수사절차와 인권(2)		
5주	테러와 인권, 민간조사와 인권		
6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과 성과		
7주	사형제도와 생명권		
8주	중간고사		
9주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간통죄와 성적 자기결정권		
10주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국가보안법과 사상의 자유		
11주	채플과 종교의 자유, 생명복제와 학문의 자유		
12주	체벌과 아동의 인권, 인권조례		
13주	낙태와 여성의 인권, 감옥과 재소자의 인권		
14주	실업의 시대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15주	기말고사		
16주			

인권일반/사회

서강대학교

교과목명	인권과정의	개설형태	기초교육원 / 교양선택 / 3
수업개요	<p>본 과목은 ‘인권’ 및 ‘정의’라는 크고 중요한 주제를 (주로 국내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세계인권선언>의 분석을 포함하는 인권에 대한 정치학적·법적 접근 내지는 일반적 고찰, 현재 한국의 인권 상황, 인권과 민주화의 관계, 인권의 보다 나은 실현을 위한 인권운동 및 인권교육, 그리고 성서에 나타난 인권과 정의 등을 살펴봄으로써 접근해 보려 한다. 더불어, 북한 인권 및 지구촌의 인권문제 등도 간략하게나마 포함시키려 한다.</p> <p>본 과목은 체계적인 인권강좌이며, 아울러, 가톨릭교회 및 성서에서 가르치는 인권 및 정의와 우리 사회 및 국제사회에서 요구되는 인권 및 정의가 바로 같은 것임을 강조코자 한다.</p>		
수업목표	<p>인권교육 교과로서 본 과목이 목표로 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한국 사회의 구조 및 정치적 상황,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흔히 접하게 되는 “인권침해”와 “불의”적인 요소를 비판적으로 읽어 내고, 그럼으로써 인권이 존중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지식과 문제의식, 태도와 인성 및 사회성을 습득하고 키워 가는 것이다.</p> <p>아울러, 본 과목을 통해 학생들이 인권 감수성과 인권의식 및 지식과 실천의지를 지닌 지성인, 곧 ‘인권’이라는 ‘가치’를 터득하여 가슴에 담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참된 지성인, 그리고 (예수회 교육이념의 핵심인) “정의를 실천하는 신앙”에도 눈을 뜨고 실천하는 지식인이 되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p>		
교재 및 참고자료	<p>주교재: 『인권과 정의』 묶음 (교과내용 중에서 반드시 읽어야 할 내용만을 추린 것임).</p> <p>김 녕, 『인권생각』 (도서출판 선, 2013).</p> <p>부교재: 조효제, 『인권을 찾아서—신세대를 위한 세계인권선언』 (한울, 2011), 이경주, 『세상을 바꾼 인권』 (다른, 2012), 『인권보고서』 (2012년도 제27집), 대한변호사협회(편) (서울: 대한변호사협회, 2013.2).</p> <p>『인권법』,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편저), (서울: 아카넷, 2006).</p> <p>『인간답게 살 권리: IMF 이후 사회권 실태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 사회권위원회(편), (서울: 사람생각, 1999).</p> <p>『교육 희망, 인권이 해답이다!!』, 인권연대 「교사인권강좌」 자료집 (2005년, 2006년, 2009년 여름).</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p>학습목표 - 본 강의의 취지 및 개요, 인권의 개념, 인권의 발달사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한다.</p> <p>주요학습내용 강의 소개, 인권의 개념, 인권의 발달사</p>
2주	<p>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의 탄생과정과 의의, 그리고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새로 읽어 무엇이 인권인지 이해하도록 한다.</p> <p>주요학습내용 「세계인권선언」의 역사, 「세계인권선언」, 쉽게 새로 읽기(I)</p>
3주	<p>학습목표 - 「세계인권선언」을 쉽게 새로 읽어 무엇이 인권인지 이해하도록 하며, 「세계인권선언」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하여 생각한다.</p> <p>주요학습내용 「세계인권선언」, 쉽게 새로 읽기(II) “세계인권선언, 무엇이 문제인가,”“세계인권선언의 의의와 내용,”“세계인권선언의 역사성과 21세기 과제,”</p>
4주	<p>학습목표 - 국제인권규약, 제3세대 인권,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인권의 보편성과 아시아적 가치 논쟁)에 대하여 이해한다.</p> <p>주요학습내용 국제인권규약, 제3세대 인권, 아시아적 가치와 인권</p>
5주	<p>학습목표 - 국가안보/반공과 인권, 이데올로기와 인권,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과 불고지죄, 형법과 국가보안법 등에 관하여 살펴본다.</p> <p>주요학습내용 이데올로기와 인권, 인권과 민주화, 조별 토론</p>
6주	<p>학습목표 - 현재 한국사회의 실업 및 비정규직 문제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산물임을 이해한다. 소외된 노동자들의 현실을 살펴본다. 아울러, 기업에서는 인권경영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음을 살펴본다.</p> <p>주요학습내용 신자유주의와 빈곤, 사회권의 위기와 노동권, 노동과 인권, 인권경영</p>
7주	<p>학습목표 - 성서에 나타난 인권, 그리고 인권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본다.</p> <p>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수행했어야 할 인권개혁 과제, 곧 박근혜 정부가 떠맡은 인권개혁 과제에 대해 고찰해본다.</p> <p>주요학습내용 가톨릭인권운동의 신학적 근거, 성서와 인권, 인권단체들의 <인권정책 의견서>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5개 분야별 인권과제,”(2008년 3월 7일) 및 평가</p>
8주	중간고사
9주	<p>학습목표 -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생명권과 건강권의 주요 주체로서의 사형제도, 낙태, 치료거부와 존엄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알아본다.</p> <p>주요학습내용 국가권력과 인권, 생명권과 건강권(발표 주제 1), 표현의 자유(발표 주제 2)</p>

10주	<p>학습목표 - 사법제도와 인권, 이주외국인이 당하는 인권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알아본다.</p> <p>주요학습내용 사법과 인권(사법제도와 인권, 인권의 구제, 한국 검찰의 문제점) (발표 주제 3), 이주외국인의 인권(발표 주제 4)</p>
11주	<p>학습목표 - 교육의 권리, 그리고 환경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알아본다.</p> <p>주요학습내용 교육의 권리(발표 주제 5) 환경권(발표 주제 6)</p>
12주	<p>학습목표 - 장애인의 인권, 그리고 여성 및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인권침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알아본다.</p> <p>주요학습내용 - 장애인의 인권(발표 주제 7) 여성, 아동·청소년의 인권(발표 주제 8)</p>
13주	<p>학습목표 - 일제피해자 문제 및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문제, 그리고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알아본다.</p> <p>주요학습내용 일제피해자 문제 및 중국의 탈북자 강제복송문제(발표 주제 9)</p> <p>북한 인권문제(발표 주제 10)</p>
14주	<p>학습목표 - 세계 각국의 인권현황, 문화권, 과학기술과 인권, 성서의 정의 사상, 그리고 가톨릭시즘의 사회정의론에 관하여 기본 지식을 갖춘다.</p> <p>주요학습내용 세계 각국의 인권현황, 문화권의 이해, 과학기술과 인권, 성서의 정의 사상, 가톨릭시즘의 사회정의론</p>
15주	<p>학습목표 -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운동 및 인권교육의 과제,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에 관하여 살펴보고, 결론으로서, 인권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다짐한다.</p> <p>주요학습내용 (자유권 및 사회권) 인권운동 및 인권교육의 과제,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p>
16주	학기말고사

인권일반/사회

서울대학교

교과목명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개설형태	사회학과 / 교양선택 / 3학점
수업개요	<p>한국사회는 지난 수 십 년간 빠르게 변화되어 왔다.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는 세계에서 자주 거론되는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도 먼 길을 가야만 한다. 다행히 시민사회의 발전으로 인권문제가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시민사회와 정부를 연결하여 인권침해 문제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세계시민사회의 발전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인권침해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 더 긴 안목에서 보면, 국제법과 국제기구가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독주를 어느 정도 견제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세계 사회 운동과 NGO의 역할은 중심적이며 그 움직임의 핵심이 바로 ‘인권’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국가 내에서의 인권침해는 더 이상 세계사회에서 그대로 방치되지 않는다. 인권은 서구에서 근대국가의 탄생 이래 국가의 폭력에 대항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개념이지만, 한국을 비롯한 여러 사회에서도 나름의 인권 개념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p>		
수업목표	<p>이런 세계사회에서의 인권과 NGO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한국 사회의 인권의 발전과정을 찾아보면서,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인권문제에 도전해보려는 것이 이 강의의 목적이다.</p>		
교재 및 참고자료	<p>(1) 인권정책연구소, 『인권10강』, 사람생각, 2012 (2) 정진성 외, 『인권사회학』 다산. 2013</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Introduction		
2주	인권의 역사, 세계/한국의 인권		
3주	인권의 내용, UN 인권기구,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		
4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사형제. 양심적 병역거부권		
5주	빈곤문제. 식량권. 노숙자 문제		
6주	여성인권, 성매매 문제, 성적소수자 인권문제		
7주	장애인인권. 아동/청소년의 권리		

8주	세계의 인권: 카스트 제도와 UN 인권메카니즘의 활용
9주	세계화, 기업과 인권
10주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
11주	미정
12주	재일동포
13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성노예문제
14주	북한 인권 문제, 탈북자 인권
15주	기말 시험
16주	

인권 일반/사회

영남대학교

교과목명	인권과유교사회	개설형태	법학전문 / 전공선택 / 3학점
수업개요	이 강의는 유교사회의 인권 문제를 검토한다.		
수업목표	유교사회에서의 인권 문제를 검토함으로써 유교적 전통에 선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찾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이다.		
교재 및 참고자료	박홍규, <유교와 인권>, 영남대 인문연구, 53호 박홍규, <명분사상으로서의 유교와 법>, 영남대 인권, 2호 박홍규, <흠흠신서 다시 읽기>, 민주법학, 51호 박홍규, <첫 제국 이야기>, 인물과 사상, 2014.3. 박홍규, <종교와 인권>, 영남대 인권, 4호 박홍규, <자유인 루쉰>, 우물이깊은 집 박홍규, <루쉰문학전집>, 고인돌, 해설 류짜이푸, <전통과 중국인>, 플래닛 이종텐, <정치를 말하다>, 중앙북스 이종텐, <제국을 말하다>, 에버리치출판스 이종텐, <사랑을 말하다>, 중앙북스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유교와 인권 총론		
2주	샌델, 유교, 공동체주의		
3주	한국의 법문화와 유교1		
4주	한국의 법문화와 유교2		
5주	유교의 명분 사상과 법		
6주	루쉰의 유교론1		
7주	루쉰의 유교론2		
8주	중간고사		
9주	종교와 인권		
10주	기독교와 유교의 인권 비교		
11주	불교와 유교의 인권 비교		
12주	사회주의법문화와 유교		
13주	동아시아법문화와 유교		
14주	결론		
15주	기말고사		
16주			

교과목명	현대사회와인권	개설형태	사회학과 / 전공선택 / 3학점
수업개요	인권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제1세대인권(자유권), 제2세대인권(사회권), 제3세대인권(집단권, 연대권) 등 각 인권담론이 갖는 사회적 맥락과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인권운동 실태조사 및 인권현장 체험을 통해 수강생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여가는 것 또한 이번 강의의 주요한 목표이다.		
수업목표	인권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제1세대인권(자유권), 제2세대인권(사회권), 제3세대인권(집단권, 연대권) 등 각 인권담론이 갖는 사회적 맥락과 현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인권운동 실태조사 및 인권현장 체험을 통해 수강생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여가는 것 또한 이번 강의의 주요한 목표이다.		
교재 및 참고자료	『인권 이론과 실천』 『인권의 문법』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Introduction, 발표 소그룹 편성		
2주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권의 개념		
3주	인권 역사의 기원 - 고전인권이론		
4주	인권 역사의 새 시대 - 현대인권이론		
5주	비판이론, 새로운 인권개념의 구성① - 문화상대주의(문화와 인권)		
6주	비판이론, 새로운 인권개념의 구성② - 페미니즘		
7주	인권운동과 NGO의 역할 - 인권 정치의 딜레마		
8주	중간고사		
9주	지구화와 인권 - 시민권과 세계주의, 개발과 인권		
10주	인권감수성 함양		
11주	인권현실과 인권운동① -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권(시민적·사회적권리)		
12주	인권현실과 인권운동② - 경제와 인권, 사회권(발전권, 경제적·사회적 권리)		
13주	인권현실과 인권운동③ - 사회적약자의 인권, 집단권, 연대권		
14주	문화와 인권, 소수자 인권		
15주	기말고사		
16주			

분야

충남대학교

교과목명	인권과 현대사회	개설형태	철학과 / 교양선택 / 3학점
수업개요			
수업목표	<p>본 강좌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 가장 쉽지만 구체적이고 진지하게 함께 이야기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인권은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잘 살기 위한 인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이론 위주의 강의 보다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주제로 하여 매주 그것에 대한 가치관을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p> <p>인권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보편적 원리이다. 오늘날 인간다운 삶을 적어도 인권이 보장되는 삶이라고 고쳐 말하기도 한다. 주로 인권은 약자의 편에서 이야기 된다. 즉 여성, 노동자(이주 노동자), 장애인, 동성애자, 범죄자 등의 인권이 그러하다. 그러나 인권은 약한 인간들의 인간다운 삶에 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말 그대로 보편적인 인간들의 인간다운 삶에 관한 이야기를 품고 있어야 한다.</p> <p>따라서 본 강좌에서는 현대의 다원주의사회에서 점점 소홀해 질 수 있는 인권의 여러 사항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영상자료와 함께 보다 현장감 있게 인권의 제반사항들을 다루고자 한다.</p>		
교재 및 참고자료	<p>참고문헌</p> <p>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0. 한겨레21 편집부 저, [일어나라 인권 OTL], 한겨레출판사, 2009.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2008. 이봉철, [현대인권사상], 아카넷, 2003. 강순원, [평화, 인권, 교육], 한울 아카데미, 2000. 차병직, [인권], 살림, 2006. 한국인권재단, [21세기의 인권. II], 한길사, 2000. 토마스 페인, 박홍규옮김, [상식, 인권], 필맥, 2004. 박경태 지음, 이영규그림,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책세상, 2007. 김성돈, [로스쿨의 영화들], 효형출판, 2007.</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오리엔테이션 - 강좌 소개		
2주	강의: 인권이란 무엇인가? - 인간에게 있어서 권리란?/ 사이버강의: 인권의 발생 배경(영상물 시청)		

3주	강의: 인간의 권리 (1) - 생명에 대한 권리/ 사이버강의: 영상물 감상(영화 데이비드 게일, 그린마일, 데드맨 워킹” 중 감상)
4주	강의: 인간의 권리 (2) - 생명에 대한 권리/ 사이버강의: 영상물 감상
5주	의: 인간의 권리 (3)- 죽음에 대한 권리/ 사이버강의: 영상물 감상(영상물 “You Don't know Jack, 씨 인사이드, 밀리언 달러 베이비” 중 감상)
6주	강의: 인간의 권리 (4)- 인간에게 있어서 '산다는 것' 그리고 그에 따른 권리 / 사이버강의: 카페 토론방 참여
7주	중간고사
8주	강의: 인간의 권리 (5)- 섹슈얼리티와 성적 소수자의 인권/ 사이버강의: 영화감상(영상물 “더월2, 웨드워, 브로크백마운틴” 중 감상)
9주	강의: 인간의 권리 (6)- 장애우의 인권/ 사이버강의: 토론방 참여
10주	강의: 인간에게 있어 "성"이란?
11주	인간의 권리 (7)- 외국인,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영상물 “6개의 시선(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반두비, 여정,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양극화 사회, 희망의 로드맵” 중 감상)(자유 발표. 토론방 참여)
12주	강의: 인간의 권리 (8)- 체벌과 학생(아동)의 인권/ 사이버강의: 영상물 감상
13주	인간의 권리 (9)- ①사이버세상에서의 네티즌의 인권,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비밀(자유 발표 & 토론방 참여) ②사전검열과 표현의 자유, 포르노와 예술의 자유(자유 발표 및 토론)
14주	인간의 권리 (10)-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 복한의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와 양심의 자유, 낙태와 여성의 인권, 로또와 도박할 권리, 대마흡연과 행복추구권 등 다양한 권리
15주	기말고사
16주	

법/범죄

건국대학교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개설형태	/ / 3
수업개요	실체적인 국제인권기준과 절차적인 보장체제를 실무적으로 다루고 동아시아인권체제, 평화와 전쟁에 관한 국제인권법,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형사적, 민사적 대응에 관련된 법발전 등을 탐구한다		
수업목표	국제인권기준과 보장절차를 살펴보고 국내소송을 비롯한 현실 인권문제 해결 능력을 기른다.		
교재 및 참고자료	교재 - 인권법, 박찬운, 한울 부교재 - 국제인권법, 토마스 버겐탈, 양건, 교육과학사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Context, Henry J. Steiner 외, Oxford Univ Press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소개		
2주	국제인권법의 역사와 국제인권보장체제의 성립		
3주	국제인권기준 (I) - 자유권		
4주	국제인권기준 (II) - 사회권		
5주	국제인권법과 국내법의 관계		
6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인권법		
7주	국제인권보장절차의 개관		
8주	교외활동		
9주	개인, 국가와 인권: 개인의 국제법적 지위, 국내문제불간섭의 원칙, 외교보호권과 국제인권법		
10주	국제연합과 인권문제 - 유엔 인권이사회		
11주	국제인권규약과 선택의정서		
12주	지역인권보장체제와 동아시아		
13주	비상사태, 무력충돌, 테러와의 전쟁과 국제인권법		
14주	중대한 인권침해와 국제법		
15주	인권피해자의 피해구제권(배상권), 국가책임, 전쟁책임과 국제인권법		
16주			

법/범죄

경희대학교

교과목명	International Law and Politics of Human Rights	개설형태	국제학과 / 전공선택 / 3
수업개요	<p>Human Rights issues have been central to many of the top international news stories in recent decades, and human rights, indeed, have become a sacred word of the time and has constituted one major part of the globalization. This course is an introduction to the central concepts, laws, and debat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It will examine some of the fundamental questions concerning human rights such as the tension between sovereignty and human rights in world politics. Its goal is to examine carefully the way in which international law has been implemented in the domestic human rights system, with a special focus on how the public legitimac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can be established and how the following of such standards will be come part of the human rights culture in individual states. Simultaneously, this course will question whether the current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has evolved to formulate practically attainable standards and policies of human rights for all countries and whether it really embraces common values expressed in different ways by different cultures.</p>		
수업목표	<p>This course is intended for students 1)to explore the philosophical underpinnings of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various critiques of this concept, 2)to understand the potential tension between the protection of state sovereignty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3)to understan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efforts to promote and prot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by individuals, NGOs,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lastly 4)to provide an opportunity to discuss with other students on international human rights issues relevant to Koreans</p>		
교재 및 참고자료	<p>All course materials, reading assignments and reading schedule will be posted on the website for this class.</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Introduction and Course Overview / What are human rights?
2주	Are Human Rights Universal? Universalism, and Cultural relativism
3주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struments I(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and United Nations)/No class on Thursday(holiday)
4주	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struments II (Regional Human Rights System)/The Development of Human Rights Instruments III(National Human Rights System)
5주	Do Human Rights Laws Work? (Politics, Law and Compliance)/No class on Thursday(holiday)
6주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7주	Economic and Social Rights(ICESCR)
8주	No Class(Midterm Break)
9주	Case Study: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esponsibility to Protect
10주	Case Study: Peace vs. Justice – Transitional Justice, ICC, TRC
11주	Korean Case Study: Comfort Women/Conscientious Objector
12주	Korean Case Study: North Korean Human Rights/North Korean Refugees
13주	Student Presentations
14주	Student Presentations
15주	Revision session: overview of the whole course and question-time
16주	Final Research Paper Due(Dec.19)

법/범죄

서울여자대학교

교과목명	법과 인권	개설형태	교양학부 / 교선 / 2학점
수업개요	<p>현대사회에서 주로 논의되는 법과 인권에 관한 내용을 비교적 전문적 교양과목의 수준에서 다루는 교과목으로서,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그에 따른 법의 기초적인 개념 특히 법의 개념, 법의 종류, 법의 성격, 법의 효력, 법해석에 관하여 일반론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법체계속에서 공동체시민으로서의 개개인의 인권과 법적 권리 그리고 그에 따른 법적 문제점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인권의 의미와 역사, 인권과 기본권, 국내적 인권법 및 국제적 인권법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게 된다. 강의를 통한 교수뿐만 아니라 특히 시사성이 있으며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인권법적 문제들에 관한 발표와 토론을 통해 대학생으로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정 수준의 legal mind를 형성케 함으로써 현대사회에 있어서 법 및 인권에 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고시킨다.</p>		
수업목표	<p>인권분야의 강의는, 일방적으로 인권법의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인권 감수성을 향상 시키는데 그다지 효용성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인권의 논의는 "이러면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게 아닌가?"라는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은 각자가 스스로 그 문제점을 느끼는 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먼저 여성, 외국 인노동자, 성적 소수자, 장애인 등의 인권에 대한 이론적 수업을 하기에 앞서,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에서 문제되고 쟁점을 다룬 '영화, 방송' 등의 시청각 자료를 본 후에, 시청각 자료와 관련된 인권분야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해 보는 것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결국 이 강의는, 사회에서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제되고 있는 쟁점들을 파악한 후, 왜 그러한 인권침해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가라는 사회적 원인을 분석한 후, 그 사회적 원인으로 부터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또 어떠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가를 검토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인권감수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p>		
교재 및 참고자료	<p>인권법, 광노현 외 2인 공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인권을 외치다, 류은숙, 푸른숲 ; 인권법-사회적이슈와 인권, 이준일, 홍문사</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1. 법과 인권 과목의 주요 내용과 강의의 목표 2. 강의의 진행방식과 평가방법 소개		
2주	<p>영화 감상 : 난징! 난징!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난징 대학살을 다룬 영화) 이론적 내용 : 인권의 보호..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다.</p>		
3주	이론수업 : 인권이란 무엇인가? 세계사에 있어서의 주요한 인권사에		

	대한 분석
4주	영화 감상 : North Country (직장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을 법정에서 최초로 다투게 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이론적 내용 : 직장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5주	이론수업 : 여성과 인권 1 (직장 내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희롱은 여성에 대한 차별인가?)
6주	이론수업 : 여성과 인권 2 (여성의 취업시의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의 현황과 문제점 파악)
7주	이론수업 : 여성과 인권 3 (가정생활에서의 여성의 인권) - 직장과 가사의 병행을 위한 제도에 대한 고찰 - 가정폭력과 여성의 인권
8주	영화 감상 : 데이비드 게일(원제: Life of David Gale) 이론적 내용 : 사형제도의 문제점
9주	이론수업 : 형사사법제도와 인권 - 사형제도는 정말 필요한 제도인가?
10주	영화 감상 : Brokeback Mountain 이론적 내용 : 성적 소수자의 인권
11주	이론수업 : 성적 소수자의 인권 - 성적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상황과 우리나라의 현황의 분석
12주	영화 감상 : 반두비 이론적 내용 : 해외 이주노동자의 인권
13주	이론 수업 : 해외이주노동자의 인권과 관련된 국내 법제도의 비판적 분석
14주	이론 수업 : 국가 인권보호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15주	이론 수업 : 한 학기 강의 내용의 정리
16주	기말고사

법/범죄

동국대학교

교과목명	기본권특수연구	개설형태	법학과 / 전공선택 / 3
수업개요	헌법의 가장 중요한 파트인 기본권에 관한 법적 이론을 학설과 이론, 판례를 중심으로 연구, 분석한다		
수업목표	헌법의 중요한 축인 기본권론을 체계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규범적 헌법에 관한 이해를 높인다.		
교재 및 참고자료	<p>주교재 기본권(로스쿨), 정종섭·박종보·임지봉·명재진, 박영사, 2010. 헌법과 기본권, 정종섭, 박영사, 2010.</p> <p>부교재 기본권이론, 로베르트 알렉시(이준일), 한길사, 2007. 독일헌법 기본권일반이론, 정문식, 전남대 출판부, 2009.</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p>기본권의 의의와 역사, 성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이란 무엇인가? - 기본권의 역사 - 기본권의 성격 		
2주	<p>기본권의 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의 기능 - 기본권의 향유주체 - 기본권의 효력 		
3주	<p>기본권의 제한과 한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도 제한 대상인가? - 기본권은 무한 권리인가? 		
4주	<p>기본권의 경합과 충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권도 경합하는가? 어떤 경우에? - 기본권이 충돌하기도 하는가? - 기본권이 경합하거나 충돌하는 경우에 해결방법은? 		
5주	<p>평등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등권이란? - 평등권의 역사 - 평등권의 이론 - 평등권에 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 평등권과 정의의 관계
6주	법정 영화 토론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영화를 감상하고, 같은 영화를 본 그룹끼리 토론 후 발표
7주	중간고사
8주	신체의 자유 - 신체의 자유의 역사 - 신체의 자유의 내용 - 신체의 자유와 판례 I
9주	정신적 자유 - 정신적 자유란? - 정신적 자유의 우월성 - 정신적 자유의 내용 - 정신적 자유의 침해와 구제
10주	청구권적 기본권 - 청구권적 기본권이란? - 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 청구권적 기본권의 유형 및 종류
11주	사회 경제적 자유 - 사회권적 기본권 - 경제적 기본권 - 급부적 국가 - 사회복지국가
12주	사생활의 권리와 정치적 자유 - 사생활권의 역사와 내용 - 정보의 자유란? - 정치적 자유와 공무담임권
13주	환경권 & 국민의 책임과 의무 - 환경권이란? - 환경권의 역사와 의의 - 환경권의 주체 - 국민의 책임과 의무
14주	종합토론 - 1학기동안 배운 내용을 조별로 집중 토론함
15주	판례 종합토론2 기본권의 이론과 실재를 판례를 통해 토론함
16주	기말고사

인권일반/사회

부산대학교

교과목명	법과인권	개설형태	일반사회교육과/전선/학점
수업개요	<p>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역사속에서 치열하게 투쟁하며 발전해온 개념입니다. 이 수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에 대한 기초지식과 다양한 사회적 이슈들을 이용하여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와 인권보호를 위한 규범적 수단을 파악하고, 인권증진을 위한 법적 사회적 과제는 무엇인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에는 인권과 기본권에 관한 기초이론을 강의의 통해 개관할 예정입니다. 헌법을 이미 수강한 학생들에게는 복습의 기회가 될 것이며, 헌법을 미처 수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개관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후의 수업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목록과 주교재에 제시된 이슈들을 중심으로 우리사회의 인권관련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기초적인 법학지식은 강의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며, 많은 부분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p>		
수업목표	<p>이 수업은 인권의 주체이자 인권교육의 주체가 될 일반사회교육과 3학년 학생들을 주요수강대상으로 합니다. 법이란 다소 무겁고 딱딱한 도구이지만, 오늘 여기의 인권보장현실을 살펴보기에 상당히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법과 인권' 수업은 정교한 법이론에 관한 수업이라기보다는, 법이란 도구를 사용하여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현실을 살펴보고, 인권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수단을 배우고, 현재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법적 사회적 과제가 무엇인지 진단하고 고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존재와 권리의 소중함을 배우고, 내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존재와 권리가 소중함을 느끼며,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어떻게 지키며 서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고민하는 것이 이 수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p>		
교재 및 참고자료	<p>이준일, 인권법: 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0 국제법, 헌법, 인권법 관련: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1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론, 집현재, 2012 박상기외 공저, 법학개론, 박영사, 2010 법무부, 한국인의 법과 생활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인권법, 아카넷 박찬운, 인권법, 한울아카데미 박찬운, 국제인권법, 한울아카데미 청소년인권관련: 공현외 공저, 인권교문을 넘다 김민아, 인권은 대학가서 누리라고요?, 팔레마 하승수, 청소년을 위한 세계인권사, 두리미디어 공현외 공저, 머리에 피도 안마른 것들 인권을 넘보다, 메이데이 크리스티네 슬츠-라이스, 공현 지음, 청소년 인권수첩, 양철북 일반인권, 법교양: 김두식, 불편해도 괜찮아, 창비 샌드라 프레드먼,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김비환외 공저, 인권의 정치사상, 이학사 James W. Nickel,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마이클 프리먼, 인권: 이론과 실천, 아르케 금태섭, 디케의 눈, 궁리 금태섭, 확신의 함정, 한겨레</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인권이론과 기본권이론 개관
2주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형제도, 안락사, 장기이식, 간통죄
3주	평등권, 여성의 인권: 낙태와 여성인권, 성의 상품화와 성매매, 임신과 출산, 미혼모
4주	장애인의 인권
5주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노인의 인권
6주	성 소수자의 인권, 소수자에 대한 차별 문제
7주	신체의 자유: 형사절차와 인권, 재소자의 인권
8주	중간고사
9주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통신의 비밀: 신상공개제도, 지문날인, 네티즌의 권리
10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양심적 병역거부, 국가보안법, 채플
11주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생명복제, 포르노, 사전검열, 촛불시위
12주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정치적자유,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13주	사회적기본권 I: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근로자의 권리, 비정규직 근로자, 사회보험제도
14주	사회적기본권 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공공부조제도, 재개발과 철거민의 인권, 양극화와 빈곤문제
15주	다문화사회와 인권, 통일과 인권: 국적, 외국인노동자, 혼혈인, 결혼이주여성, 난민, 탈북자
16주	기말시험

법/범죄

경기대학교

교과목명	인권과 교정보호	개설형태	교정보호학과 / 전공선택 / 3
수업개요	<p>인권의 다양한 정의와 인권의 제 차원을 이해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범죄 전과자의 기본권을 국제조약의 시각에서 이해하며, 교정시설과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범죄자, 전과자에 대한 인권침해의 유형과 그 대책에 대해 이해한다.</p>		
수업목표	<p>본 강좌는 학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수용자들도 비록 영어의 몸이지만 수용시설에서의 대우와 처우도 헌법에서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받을 권리와 생활권적 기본권을 누리며 생활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 선진복지국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국민들이 수용자를 대하는 인권수준과 의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학습목표를 두고 강좌를 진행하고자 한다.</p> <p>첫째, 학도들에게 수용자들도 헌법과 법률에 정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p> <p>둘째, 국가의 선진화와 민주화의 척도는 국민과 수용자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는 국가라는 것을 알게 한다.</p> <p>셋째, 수용자에 대한 참된 교정과 교화는 교정의 인간화와 민주화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p> <p>넷째, 수용자의 처우는 강제와 타율적 보다는 수용자의 자발성호소해서 추진해야 보다 효과적이고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p>		
교재 및 참고자료	<p>교도에 관리에 관한 인권적 접근, 앤드루 코일, 주한영국대사관, 2005</p> <p>수형자의 권리와 권리구제 제도, 박재운, 국민대학교 출판부, 1996</p> <p>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법제처, 법제처, 2012</p> <p>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법률, 법무부, 법제처, 2011</p> <p>형의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시행규칙, 법무부, 법제처, 2011</p> <p>청소년정책연구, 청소년정책학회, 청문사, 2004</p> <p>수용자인권보호에 관한연구, 김길성, 경기대행정대학원, 2006</p> <p>국가인권위원회진정제도 활용실태와 수용자처우에 관한 연구, 김홍일, 경기대 행정대학원, 2006</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대한민국의 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처우에 관한 법류 등
2주	수용자의 법적지위 등
3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행복추구권 등
4주	각국의 권리청구제도 등
5주	비사법적 권리구제 제도
6주	교정직원, 수용자의 권리 등
7주	수용자들의 건강관리, 보안 등
8주	중간고사
9주	사회통합, 징계절차
10주	외부접촉, 서신, 접견 등
11주	욕구, 불평, 감사절차 등
12주	소년과 아동, 여성수용자 등
13주	사형수 등
14주	국제수용자 규칙 등
15주	구금의 대안 등
16주	기말고사

법/범죄

서울대학교

교과목명	민주시민과 헌법	개설형태	기초교육원 / 교양선택 / 3학점
수업개요	국가질서형성의 기초로서의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고찰한 후, 기본권 보장의 실제법적·제도적 측면에서의 우리나라의 헌정사를 검토하고, 민주적 헌정질서 형성의 토대로서의 시민의 자유와 이에 유기적으로 영향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여러 제도를 우리 헌법의 조항과 주요 관련 판례를 기초로 하여 언론, 정당, 선거, 지방자치, 소수자보호, 시민운동, 저항권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한다. 우리 사회의 합의된 핵심적 가치로서의 헌법상의 기본권의 내용과 실재를 우리 헌법과 판례를 기초로 하여 연구하고, 여러 가치가 상충하는 현실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현안을 소재로 하여 헌법적으로 분석한다.		
수업목표	다양한 전공을 탐구하는 대학생의 기본 소양으로서 우리나라의 대의제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적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함을 돕기 위한 핵심교양과목임. 국가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에 대한 입문적 이해를 통해 민주적 국가질서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을 키우며, 궁극적 목표로서의 인권과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한다.		
교재 및 참고자료	<p>-주(主)교재: 「헌법학입문」 (제3판) (성낙인著, 법문사, 2013) / 이외의 자료는 e-TL에 게재함.</p> <p>-이외 참고도서(권장사항-필독도서는 아님): 「헌법개설」 (김철수, 박영사); 「민주헌법과 국가질서 - 헌법입문 -」 (장영수, 법문사);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한국법철학회 편, 법문사); 「정부와 NGO」 (박재창 편, 법문사) 등.</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 개요, 강의진행방법 및 교재 소개, 조별 활동 안내, 견학·참관 및 특강 안내 등 / 대의민주주의와 대표 / 다수결 원리와 법률, 최고법으로서의 헌법의 개념 / 한국 헌정사 개관		
2주	한국의 통치구조와 권력분립 (I) - 입법부, 입법권, 입법과정		
3주	한국의 통치구조와 권력분립 (II) - 행정부		
4주	한국의 통치구조와 권력분립 (III) - 사법부		
5주	헌법재판과 헌법보장 / 국가질서의 민주성 확인과 보장 -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		
6주	한국 헌법상의 기본권 (I)		
7주	중간고사		

8주	한국 헌법상의 기본권 (II)
9주	민주적 정치질서 형성의 토대 - 표현의 자유와 여론, 우리나라의 언론관련 법제
10주	민주적 정치질서 형성의 근간 - 대의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정당 / 민주적 국가질서의 확대 및 생활화를 위한 노력 - 지방자치제도 /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주민소환제
11주	[조별 발표 #1] / [조별 발표 #2]
12주	[조별 발표 #3] / [조별 발표 #4]
13주	[조별 발표 #5] / [조별 발표 #6]
14주	[조별 발표 #7] / NGO와 시민운동 /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15주	기말고사

법/범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명	한국의 공익·인권소송	개설형태	법학과 / 전공선택 / 3
수업개요	한국의 공익인권 소송 사례, 공익인권과 법률가, 공익인권 실무		
수업목표	공익인권 관련 소송 사례 검토, 공익인권과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저명한 법률가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공익인권 가치의 공유와 함양		
교재 및 참고자료	안경환, 『조영래 평전 - 세상을 바꾼 아름다운 열정』, 도서출판 강(2006) 박원순, 『역사가 이들을 무죄로 하리라 - 한국 인권 변론사 : 가시발길을 선택한 변호사들』, 도서출판 두레(2003) 한인섭,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박영사(2004) 한인섭,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허헌, 김병로, 이인과 항일 재판투쟁)』, 경인문화사(2012)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소개 강사소개, 강의목표와 구성 안내, 수강생 발표자 선정 등		
2주	법률가 1 이병린 법률가 2 조영래 사례 망원동 수재사건(주 교재)		
3주	초청강사 정민영 변호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사례 호주제 폐지 헌법소원(주 교재)		
4주	사례 1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주 교재) 사례 2 학내 종교자유(강의석 사건, 교재 외)		
5주	법률가 1 황인철 법률가 2 유병진 사례 1 군가산점 위헌 사건(주 교재)		
6주	초청강사 박주민 변호사, 민변 사무차장 법률가 1 김경득 법률가 2 이돈명		
7주	중간고사		
8주	사례 1 민간인 학살 손배 사건 (보도연맹 사건,교재 외) 사례 2 재일동포 간첩조작 사건 재심청구 사건		

	(이헌치 사건, 교재 외)
9주	초청강사 이화영, 의사, 인권의학연구소 소장 사례 난민인정 사건 (주 교재)
10주	사례 1 성전환 사건(주 교재) 사례 2 집시법 위헌제청 사건(교재 외)
11주	사례 1 송두율 사건 (주 교재) 사례 2 불법 파견 노동자 보호 (주 교재)
12주	사례 1 용산사건(교재 외) 사례 2 피디수첩 사건(교재 외)
13주	초청강사 류민희 변호사, 희망법 사례 장애인 보험 차별 소송(주 교재)
14주	현 총 일
15주	기말고사
16주	

법/범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과목명	기본권론	개설형태	법학전문/ 전필 /3 학점
수업개요	헌법 중 기본권론 부분, 즉 기본권 일반이론과 개별적 기본권론 부분을 학습함 헌법 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이론-규범과 사례-현실의 상호 관계 속에서 기본권론을 학습함		
수업목표	헌법 중 기본권 부분에 대한 기본내용 학습을 통하여 헌법의 기본권 조항의 구체적 해석/적용 내용을 체계적으로 지득하고자 함 기본권 관련 실제 사례를 헌법 재판 기타 구체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교재 및 참고자료	헌법학, 한수웅 헌법학원론, 정종섭 헌법학, 성낙인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좌/문헌 소개, 수강자 의견 교환, 출석 확인, 기본권 일반이론		
2주	기본권 일반 이론(기본권의 주체-외국인, 기본권의 주체-법인)		
3주	기본권 일반이론(기본권의 효력-제 3자적 효력, 기본권 제한의 3단계 구조, 기본권의 보호범위/구성요건)		
4주	기본권 일반 이론(기본권의 제한-대상/목적/형식/정도/심사 기준 등)		
5주	기본권 일반 이론(기본권의 경향과 충돌)		
6주	기본권 일반 이론(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7주	개별적 기본권론(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8주	중간시험		
9주	개별적 기본권론(평등권과 평등원칙)		
10주	개별적 기본권(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11주	개별적 기본권(언론의 자유와 사생활기본권)		
12주	개별적 기본권(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13주	개별적 기본권(정치적 기본권과 청구권적 기본권)		
14주	개별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15주	개별적 기본권(교육기본권, 노동 기본권, 환경권) 및 기본적 의무		
16주	기말시험		

인권일반 / 사회

호남대학교

교과목명	경찰인권론	개설형태	경찰학과 / 전공선택 / 3학점
수업개요			
수업목표	1. 인류역사에서 인권의 등장과정을 인문학적으로 공부한다. 2. 경찰과 인권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한다. 경찰제도와 기구를 통한 경찰권의 집행은 사회구성원들의 정의와 행복을 증진시키고 나아가 인권 보호를 목표로 함을 학습한다. 3.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경범죄처벌법> 등이 선행적으로 학습되어야 한다. 또한 [헌법],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B규약) 등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규 및 규정을 이해한다. 4. 단순히 계몽적인 학습방법이 아닌 수강생들이 직접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현실적 문제들을 중심으로 학습을 진행한다.		
교재 및 참고자료	한상범·이철호, 경찰과 인권, 서울: 패스앤패스, 2005. 국가인권위원회(편), 인권 길라잡이(경찰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6. 국가인권위원회(편), 인권 길라잡이(행정편),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2006. 김수원, 경찰행동과 인권,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문성호, 옴부즈맨과 인권 (상)- 경찰과 검찰,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7. 심영희,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서울: 한국학술정보, 2002.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좌소개 및 진단퀴즈		
2주	경찰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 인권은 왜 필요하고 의미는 무엇인가?		
3주	인권의 경로와 국가의 경로의존(path dependence)		
4주	국가와 개인, 그리고 공동체(국가와 시민사회, 국가와 경제사회)- 국가의 유형과 지배형태		
5주	경찰제도의 비교(국립경찰과 지방경찰)		
6주	인권과 경찰활동(경찰의 의미와 인권의 본질)		
7주	한국현대사와 인권, 그리고 경찰권의 독립		
8주	중간고사		
9주	범죄수사와 인권		
10주	경찰수사권 독립과 인권		
11주	사진보도와 초상권		
12주	수사경찰과 범죄 피해자 보호		
13주	한국에서 경찰은 기득권을 위한 것인가, 모두를 위한 기구인가?		
14주	한국에서 경찰은 기득권을 위한 것인가, 모두를 위한 기구인가?		
15주	기말고사		
16주			

사회복지

그리스도대학교
일반대학원

교과목명	인권과 사회복지	개설형태	학과 / 과목성격 / 학점
수업개요	본 과목은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복지사로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클라이언트 집단의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며, 그들의 인권을 증진시키고 복지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수업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를 이해한다. 2. 사회복지전문직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인권문제에 대해 인식하며,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법을 탐구한다. 3. 사회의 다양한 대상별, 집단별 인권문제를 탐색하고 해결방법을 모색한다. 		
교재 및 참고자료	<p>주교재 : 손병돈 외(2008). 사회복지와 인권. 양서원. 부교재 : 1) 별도의 논문package 2) 고명석(2011). 인권과 사회복지. 대왕사. 3) UN Center for Human Rights 저, 이해원 역(2005).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학지사</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오리엔테이션		
2주	차별과 인권 :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3주	인권, 사회복지 그리고 실천 1 :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4주	인권, 사회복지 그리고 실천 2 : 사회복지전문직과 인권		
5주	인권, 사회복지, 그리고 실천 3 : 국제사회와 인권, 그리고 사회복지		
6주	인권이슈에 대한 사회복지실천방법1 : 주제와 문제의 확인과 분석		
7주	인권이슈에 대한 사회복지실천방법2 :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딜레마, 이슈		
8주	[발표수업] 아동/청소년과 인권		
9주	[발표수업] 노인과 인권		
10주	[발표수업] 여성과 인권		
11주	[발표수업] 장애인과 인권		
12주	[발표수업] 다문화가족과 인권		
13주	[발표수업] 빈곤과 인권		
14주	현충일		
15주	[발표수업] 노동과 인권		
16주			

분야

전북대학교

교과목명	인권과 사회복지	개설형태	사회복지학과 / 전공선택 / 3학점
수업개요			
수업목표	<p>인권의 담론이 이제 우리사회에서 교육뿐만아니라 법률,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서서히 부상하고 있다. 인권은 사회복지 실천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상호연관되어있다. 따라서 인권에 대해 보다 더 많이 알고 깊이 이해할수록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복지를 위한 활동과 개입이 증진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수준에서 항상 인권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수업의 목표는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고 인권 지킴이로 활동하는 실천가로서의 역량을 배가시키는 것이다.</p>		
교재 및 참고자료	<p>주교재 인권과 사회복지실천, UN Centre for human Rights 저, 이혜원 역, 학지사, 2013 인권과 사회복지, 고명석 지음, 대왕사, 2011</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오리엔테이션		
2주	인권이란 무엇인가		
3주	인권에 관한 기본문서		
4주	차별		
5주	사회복지사가 직면하는 딜레마		
6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관련이슈들1		
7주	사회복지 실천현장에서 인권관련이슈들2		
8주	중간고사		
9주	인권과 사회복지의 관계		
10주	노인인권 보호 실천		
11주	장애인 인권 침해사례 및 개입		
12주	아동인권 보호 실천		
13주	학생인권조례		
14주	여성인권		
15주	기말고사		
16주			

사회복지

대구사이버대학교

교과목명	인권과 복지	개설형태	학과 / 교양선택 / 3학점
수업개요	<p>인권과 복지는 법에서의 복지와 복지에서 법을 적절하게 조화하고 균형 잡는 시각을 가짐으로써 법의 현장에서 복지의 의미, 복지 현장에서의 법의 의미를 확인하고 학습함으로써 체계적인 법 질서 확립과 체계적이고 합법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p>		
수업목표			
교재 및 참고자료	강의노트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인권과 인권의 역사		
2주	인권과 민주주의		
3주	인권과 국가		
4주	인권과 헌법관		
5주	복지국가와 사회보장권		
6주	인권에 대한 사회복지계의 접근		
7주	사회복지현장에서 인권 실태와 옹호		
8주	중간고사		
9주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		
10주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인권옹호 / 복지권 보장을 위한 과제		
11주	아동 복지와 인권		
12주	청소년 복지와 인권		
13주	여성 복지와 인권		
14주	교정 복지와 인권		
15주	기말고사		
16주			

인권 일반/사회

전북대학교

교과목명	인권정책론	개설형태	법학과 / 전선 / 3학점
수업개요	Human right policy is closely related to the positive actions for vulnerable groups, anti-discrimination, and remedial procedures and the realization of justice.		
수업목표	Human Right Policy as a course work is aiming to provide the knowledge of human right theories and practices and to consider the effective application to human right policies. The course deals with the substantial issues including the concept of the human rights, key human right topics, universalism, cultural relativism and equality. The major elements of human right international laws and organizations, social minorities and anti-discrimination measures are also analysed in terms of human rights policy. This course will help students understand the desirable direction of policies and develop practical ability to identify priorities and emphasis in making policy.		
교재 및 참고자료	<p>Jack Donnelly, 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2nd ed), Cornell University Press, 2003</p> <p>Micheline Ishay,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ey, 2004</p> <p>Christian Tomuschat, Human Rights: Between Idealism and Re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2003</p> <p>Bertrand G.Ramcharan, Human Rights and Human Security, Martinus Nijhoff Publishers, 2002</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policy		
2주	concept of human rights and its characteristics		
3주	civil/political rights and economic/social and cultural rights		
4주	human rights and cultural relativism		
5주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trade-offs		
6주	human rights and individuals, groups and the state		

7주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8주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
9주	human rights and foreign policy
10주	human rights and minority in society
11주	human rights and discrimination
12주	human rights policy and civil society
13주	human rights policy making and implementation
14주	interrelation with other national action plans
15주	priorities and direction of human rights policy
16주	final examination

여성

경기대학교

교과목명	여성과 인권	개설형태	법학과 / 교양선택 / 3
수업개요	<p>노동, 가족,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시민생활과 직업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법률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과 관련된 기초적인 법률상식을 익힘으로써 실용적인 법률교양을 쌓도록 하는 과목이다.</p> <p>인권보장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다.</p> <p>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고자 한다.</p>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사회를 인권과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자리 잡은 사회라고 할 때 인권과 민주주의의 법적 가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음. - 여성의 평등권 보장과 차별금지를 위한 헌행법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 침해시 공법적 혹은 사법적 구제방법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음. - 인권의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 자각하고 소수자에 대한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음. 		
교재 및 참고자료	<p>교재 - 유인물, 담당교수, 없음, 2014</p> <p>참고자료 - 인권법, 이준일, 홍문사, 2010</p> <p>- 인권이란 무엇인가?, 박경서, 미래지식, 2012</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좌 소개 및 강의개요		
2주	<p>헌법상 민주주의와 인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의 본질과 성격 - 인권과 인격권의 구별과 비교 		
3주	<p>국제인권조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적 정치적 권리 -: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4주	<p>직장생활과 여성(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과 채용차별 - 군가산점 사건 		
5주	<p>직장생활과 여성(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차별과 구제 		
6주	직장생활과 여성(3)		

	-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과 구제
7주	중간고사
8주	직장생활과 여성(4) - 여성인격권과 보호 - 전자감시, 개인정보보호 등의 문제
9주	직장생활과 여성(5) - 직장내 성희롱
10주	결혼과 이혼
11주	여성과 성폭속 및 성범죄(1) - 강간죄, 성폭력, 성매매
12주	여성과 성폭속 및 성범죄(2) - 간통죄, 혼인빙자간음죄
13주	다문화사회와 여성
14주	여성장애인과 차별
15주	강의 총정리
16주	기말고사

교과목명	인권과 성윤리	개설형태	간호학과 / 교양필수 / 2학점
수업개요	<p>본 교과목은 간호학생들에게 사회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인 인권 의식, 논리성, 균형적 시각을 기르고,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입문과정이다. 간호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권관련 문제, 예컨대, 생명권, 신체권 등에 대한 이슈를 다룸으로써 인권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인권 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양쪽 주장을 통한 디베이트를 거치면서 균형적인 사고를 기른다. 끝으로 본 강좌는 양성평등과 성희롱에 대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남녀평등과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올바른 성윤리 의식을 갖출수 있도록 한다.</p>		
수업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 개념의 이해를 높여 효율적인 간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2. 디베이트를 통해 사고의 다양성과 분석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한다. 		
교재 및 참고자료	<p>이준일, 2012,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4판), 홍문사. 김엘림, 2008,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교과목 소개, 인권의 기본 개념, 인권의 내용		
2주	기본권, 인간의 존엄, 행복추구권		
3주	신상공개제도와 사생활의 자유		
4주	표현 및 예술의 자유와 19금		
5주	사이버 세상에서 네티즌의 인권		
6주	장기이식과 건강하게 살 권리		
7주	체벌과 아동의 인권		
8주	중간고사		
9주	생명권을 둘러싼 논쟁: 안락사와 존엄하게 죽을 권리		
10주	의료현장에서의 환자의 인권		
11주	낙태와 태아의 생명권, 여성의 인권		
12주	남녀간 성적 행동에 대한 법의 규제		
13주	성희롱에 관한 법과 판례		
14주	성폭력, 성매매에 관한 법과 판례		
15주	기말고사		
16주			

인권일반 / 사회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과목명	여성인권론	개설형태	법학과 / 전공선택 / 2
수업개요	오늘날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이 갈수록 신장되고 있으나 법체계 내에서 성차별적 모순된 법제도와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수업목표	여성차별적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		
교재 및 참고자료	주교재 여성과 법률, 최명구, 법문사, 2011. 법여성학, 윤후정·신인령,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계획 소개		
2주	여성인권운동사		
3주	헌법과 양성평등		
4주	여성인권과 국제규약		
5주	고용과 양성평등		
6주	사회보장과 양성평등		
7주	형벌과 양성평등		
8주	중간고사		
9주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보호		
10주	성매매관련 여성의 인권보호		
11주	여성과 가족생활		
12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보호		
13주	여성재소자 인권		
14주	가정폭력		
15주	여성과 정치		
16주	기말고사		

여성

성공회대학교

교과목명	여성과 인권	개설형태	교양학부 / 교양선택 / 3학점
수업개요	이 강좌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보편적 인권 개념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 여성인권은 보편적 인권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조명을 통해 여성의 인권 뿐 아니라 보편적 인권개념을 비판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수업목표	본 강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남성중심적, 공적 영역 중심적인 기존의 인권 개념과 범주에서 누락되었던 여성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교재 및 참고자료	<p>한국성폭력 상담소, <성폭력에 맞서다: 사례, 담론, 전망>, 한울, 2009 한국여성의전화연합(편), <한국여성인권운동사>, 1999 류은숙, <인권을 외치다>, 푸른숲, 2009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린헌트, <인권의 발명>, 돌베개, 2009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편저, <인권법>, 아카넷, 2006 베네딕테 잉스타, 수잔 레이놀스 휘테, <우리가 아는 장애는 없다- 장애에 대한 문화인류학적 접근 >, 그린비, 2011 막달레나의 집(편), <용감한 여성들, 늑대를 타고 달리는>, 삼인, 2002</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오리엔테이션		
2주	인권의 탄생, 여성인권의 자리		
3주	여성인권과 문화적 상대주의: 사티, 전족, 여성할례		
4주	일상공간에서의 여성인권(1): 일터에서의 여성인권침해(고용과 승진) 유리벽, 유리천장, 유리절벽- 성별분업, 성별직종(감정노동)		
5주	일상공간에서의 여성인권 (2): 가정에서의 여성인권		
6주	외모권력과 여성인권: 성형과 다이어트, 과연 여성의 자원인가?		
7주	중간고사 기간		
8주	세계화의 하인들과 여성인권(1): 국제 대리모		
9주	워크샵 기간		
10주	세계화의 하인들과 여성인권(2): 이주 노동자(가정부), 이주결혼		
11주	소수자 여성의 인권(1): 성노동자 여성인권		
12주	소수자 여성의 인권(2): 성적소수자, 장애인 여성의 인권		
13주	소수자 여성의 인권(3): 미혼모 여성의 인권		
14주	종합토론- 경험나누기 인권침해 피해자였던 나의 경험, 인권침해 가해자였던 나의 경험		
15주	종강 - 종합 토론		
16주	기말고사		

인권 일반/사회

이화여자대학교

교과목명	인권과 Gender	개설형태	법학전문대학원 / 과목성격 미기입 / 3학점
수업개요	본 강의는 인권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다양한 젠더 관련 기본권의 의미와 그에 대한 판례의 분석을 진행한다. 법 영역에 있어서의 젠더 이슈인 젠더폭력,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침해 등에 관해 관련 법제, 판례와 법적 쟁점을 살펴 본다.		
수업목표	우리 헌법의 젠더 해석에 대해 이해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법조실무가로서 인권 문제의 접근에 있어서 젠더 관점을 함양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교재 및 참고자료	§ 교재 : 수업시간에 별도로 배포하는 자료 § 참고문헌 : 윤희정, 신인령, 「법여성학-평등권과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의 해설」, 2012 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12 헌법재판소 판례집, 대법원 판례집,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집 등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인권, 젠더 등 기초 개념, 인권 연구에 있어서 젠더적 관점의 필요성		
2주	인권의 개념, 역사, 내용, 여성의 인권		
3주	헌법과 젠더(I) : 헌법이 보장한 양성평등의 의미		
4주	추석 연휴		
5주	헌법과 젠더(II) : 성차별 관련 주요 판례 검토		
6주	헌법과 젠더(III) : 헌법상 자기결정권의 의미와 관련 판례 검토		
7주	개별 과제 수행		
8주	젠더폭력과 인권(I) : 성폭력,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응 법제		
9주	젠더폭력과 인권(II) : 성희롱의 실태와 대응 법제		
10주	성적 지향과 인권 : 동성애자의 인권 문제		
11주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I) : 장애 여성		
12주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II) : 결혼이주 여성		
13주	취약계층 여성의 인권(III) : 여성 노인, 미혼모 등		
14주	기말시험		
15주	시험 리뷰 및 강의 종합 정리		
16주			

여성

연세대학교

교과목명	근대의 생활역역과 노동, 여성 그리고 페미니즘	개설형태	학부대학 / 교필 / 3학점
수업개요	다양한 고전 및 명저를 통해 인간이 필연적으로 속하게 된 ‘근대’라는 시기의 ‘국가’와 ‘사회’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의 여성의 삶의 역사적 변천 및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에서의 역할을 되짚어 본다. 이를 통해 ‘공적인 삶’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게 하는 석학들의 의견의 내용을 학습함으로써 타고난 요인에 의한 차별의 비인간적인 측면을 극복하는 ‘공존의 의미’를 되짚어 보는데 본 강의의 목적을 둔다.		
수업목표			
교재 및 참고자료	<p>한나 아렌트 지음, 이진우, 태정호 옮김, 1996, 『인간의 조건』, 서울:한길사, 1-3장</p> <p>알림미스 사하르, 2010 『제 4신분, 중세여성의 역사』, 서울:나남출판</p> <p>에드워드 사이드 지음, 박홍규 옮김, 2007 『오리엔탈리즘』, 서울:교보문고</p> <p>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 지음, 김철 옮김, 2008, <언더우드 부인의 조선견문록>, 서울:이숲</p> <p>김진송 지음, 1999, <서울에 탄스흠을 허하라>, 서울:현실문화연구</p> <p>조지 카치아피카스 지음, 이재원·이종태 역, 1999, 『신좌파의 상상력, 세계적 차원에서 본 1968』, 서울:난장</p> <p>애덤 스미스 지음, 유인호 옮김, 『국부론』, 2008, 서울:대교문화사</p> <p>Karl Polanyi, 1944, The Great Transition, Boston: Beacon Press.</p> <p>유해동 외 지음, 2006, 『근대를 다시 읽는다 1,2』, 서울:역사비평사</p> <p>아마티아 센, 2001, 「자유로서의 발전」, 서울:세종연구원</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 소개 *근대의 개념 및 탄생의 역사, 여성불평등의 기원에 관한 가설들에 대한 검토		
2주	*고대(특히 고대 그리스)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의미		
3주	*중세여성의 삶에 대한 교재 읽기와 읽은 교재의 요약		
4주	*토론 및 글쓰기 주제 -중세의 영주의 봉토에서의 농노와 다른 계급 및 여성의 생활상을		

	<p>상상하게 글짓기를 해볼 것.</p> <p>-이러한 글짓기를 통해서 중세의 국가/사회의 모습을 상상해보고 여성의 중요한 생활영역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p> <p>-당시 여성의 생활상을 상상해 보고 글로 중세 여성의 하루를 묘사해 볼 것.</p>
5주	<p>*서양 근대의 동양으로의 도립</p> <p>-주로 근대적 개인과 사생활의 탄생 근대 여성의 생활영역에 대한 고찰 및 근대적 공론영역의 도입과 사회 변동에 관하여 본 강사의 강의와 질문을 중심으로 학습함.</p>
6주	<p>*토론 및 글쓰기 주제</p> <p>-근대적 문명의 동양도입과 서양인이 본 동양인에 대하여 당시의 서구인의 사고와 언어로 상상해 보고 토론 및 글을 작성해보자.</p> <p>-또한 갑자기 도입된 서양문명에 대하여 당시 조선인의 사고와 언어로 상상하고 각각 당시의 사고와 언어로 상상하여 글을 써 볼 것.</p>
7주	<p>*토론 및 글쓰기 위에서 계속</p> <p>-갑자기 유입된 서구 문물에 대한 당시 조선 여성들의 느낌을 상상하고 묘사해볼 것.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던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날의 여성, 어머니와 비교하여 이야기로 묘사하고 글을 써 볼 것.</p> <p>-교재를 통하여 신여성으로 불리던 조선 '근대여성'의 생활상을 고찰해볼 것.</p>
8주	
9주	<p>*종전 후 세계와 무르익은 근대에서의 여성의 공적, 사회적 위치에 대한 고찰</p> <p>*토론 및 글쓰기 주제</p> <p>-1968년의 신좌파운동에 대한 개략을 알아볼 것</p> <p>-1968년의 서양세계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가?</p> <p>-페미니즘은 1968년의 가장 큰 성과이다. 페미니즘 연구 및 활동 역사에 대하여 조사해 볼 것</p> <p>-한국에서 근대의 도입 이전의 유교적 전통 사회에서의 가부장제의 성격과 국체가 희미해져 가던 17세기에 왜 피지배계층까지 가부장적인 여성지배가 실현되었는가를 구술하고 글로 정리할 것</p>
10주	<p>*근대국가와 근대 자본주의의 결합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그것이 어떻게 서양에서 국가와 사회를 분리하여 놓았는지 고찰해 본다.</p>
11주	<p>*토론 및 글쓰기 주제</p> <p>-근대에서 국가와 공적인 영역은 서양의 고대와 중세에 비하여 어떤 특징이 있으며, 경제부문과 사회영역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 모호하게 통합되기 시작하였는지 위에 제시된 도서들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하고 토론의 결과를 글로 작성해 본다. 또한 축소되거나 왜곡된 공적영역에 대한 남성지배의 과정을 역사적으로 역으로 추적해 보고</p>

	다른 의견을 교환해 본다.
12주	*동아시아의 발전국가, 그 선두에 있었던 산업화의 주역 여성노동자 이야기.
13주	*기록을 통해 당시 산업발전의 가장 선두에 섰던 소위 '여공'들의 민주노조 설립과 희망, 좌절의 이야기를 알아 본다.
14주	*탈근대적 시선으로 본 평가와 비판 -근대를 넘어서: 이 주제에 관한 탈근대주의의 시선은 무엇인가? -탈근대주의에 따른 여성주의와 근대적 시선의 여성주의의 차별성의 핵심은 무엇인가?
15주	*바람직한 양성 공동체의 조건과 양상 토론 및 글쓰기 주제 -탈근대주의의 시선에 따르면 국가와 자본주의의 관계는 어떠한가? -탈근대주의의 시선에 따르면 공적 영역의 확대와 정치적 자유의 확대는 어떤 방식으로 양성간에 차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또한 특히 한국에서 모습은 사회의 양성평등을 전제로 할 때 어떻게 재편되어야 하는가? -정치적 자유의 확대 및 공적 영역의 확장을 위하여 근대국가의 성격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 -위의 토론 및 글쓰기를 통하여 바람직한 미래 문명과 양성공동체의 실현 방법을 토론하고 글로 정리해 본다.
16주	

여성

전남대학교

교과목명	젠더와인권철학	개설형태	NGO협동과정 / 전공선택 / 3학점
수업개요	본 강의는 그동안 정치학의 주류에서 배제되어 온 여성을 주인으로 정치사상을 들여다보면서 인권의 젠더적 측면을 살펴볼 것이다. 담론의 객체에서 주인으로서의 권리회복선언을 하기까지 여성들에 대한 사고와 그것이 사회와 제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길을 정비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여성인권의 회복은 여성의 주인으로서의 자리매김과 그 궤를 같이할 것이다.		
수업목표			
교재 및 참고자료	Women in th History of Political Thought Feminist Interpretations and Political Theory 인권의 정치사상(김비환)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정치사상과 여성 그리고 인권		
2주	플라톤 이전의 그리스의 여성		
3주	플라톤		
4주	아리스토텔레스		
5주	로마시대의 여성: 키케로와 세네카		
6주	초기 기독교와 중세시대		
7주	마키아벨리		
8주	중간평가		
9주	로크		
10주	루소		
11주	울스톤그라프트와 밀		
12주	헤겔과 마르크스		
13주	시몽드 드 보봐르		
14주	한나 아렌트		
15주	현대의 정치사상과 여성, 인권		
16주			

여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과목명	남녀평등과 법	개설형태	법학과 / 전선 / 3학점
수업개요			
수업목표	<p>(1) 남성과 여성 사이에 발생하는 차별과 폭력 등의 인권침해문제에 관한 법제와 판례, 정책을 탐구한다.</p> <p>(2) 평등하고 상생의 발전을 하며 평화로운 남녀관계와 사회를 이루기 위해 법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한다.</p> <p>(3) 교과목은 제1편 총론(2개강), 제2편 성차별과 법(7개강), 제3편 젠더폭력과 법(4개강), 제4편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분쟁처리제도(2개강)</p>		
교재 및 참고자료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남녀평등과 법의 관계		
2주	남녀평등에 관한 법체계		
3주	성차별의 문제와 금지		
4주	적극적 남녀평등촉진초치법		
5주	모성보호법과 돌봄노동지원법		
6주	가족과 교육의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7주	고용과 사회보장의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8주	서비스와 군사·형사 등의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9주	여성차별과 남성차별에 관한 판례·결정례		
10주	성희롱과 법		
11주	성폭력과 법		
12주	가정폭력과 법		
13주	성매매와 법		
14주	남녀평등에 관한 정책과 행정체제		
15주	남녀평등에 관한 분쟁처리제도		
16주			

여성

이화여자대학교

교과목명	법여성학 세미나	개설형태	법학과 / 과목성격 미기입 / 3학점
수업개요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 - 고용, 성희롱, 성폭력, 가족 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최근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제를 망라하여 발생하는 법적 문제, 특히 판례를 통해 드러나는 법적 문제와 젠더와의 관계를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의 법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판적 맥락에서 읽어내려 가야 할 하나의 텍스트로써 판례를 접근할 것이며, 따라서 '비판적 판례읽기'는 법학, 여성학, 사회학적 연구방법을 아우르는 시도가 될 것이다.		
수업목표	단순한 강의 방식을 지양하고, 강의자에 비해 학습자의 토론과 의견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듣고 말하는 것에 비판적 글쓰기도 수업시간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교재 및 참고자료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2013), 『젠더법학판례집』 (추후 구입 공지) 김엘림(2013),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광복 후 2012년까지』, 에피스테메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오리엔테이션		
2주	젠더관련판례의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와 법의 관계에 대한 이해		
3주	추석 연휴(추후 보강)		
4주	노동관련판례		
5주	노동관련판례		
6주	성희롱관련판례		
7주	성희롱관련판례		
8주	중간고사		
9주	성폭력관련판례 I: 강간의 객체: 부부강간, 성전환자, 강간의 폭행, 협박의 정도: 최협의설 비판		
10주	성폭력관련판례 II: 장애인성폭력,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피해자보호관련		
11주	가정폭력관련판례: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인과 정당방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인정 관련		
12주	가족관련판례		
13주	가족관련판례		
14주	최근 쟁점 판례		
15주	최근 쟁점 판례		
16주	기말고사		

여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과목명	젠더판례연구	개설형태	법학과 / 교양선택 / 3
수업개요	<p>1) 이 강의는 법원의 판례와 헌법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 중 성차별과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를 학습대상으로 한다.</p> <p>2) 이 강의는 젠더법학에 이론적 기초를 둔다. 젠더법학이란 법과 법실무법학의 성에 관한 이해와 태도(젠더)를 분석하여 문제를 규명하고, 모든 사람이 성과 관련한 차별과 폭력·편견을 받지 아니하며, 개인의 존엄과 인권을 존중하고 평등·상생의 발전·평화를 이루는 사회와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한 법이론과 법실무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말한다.</p>		
수업목표	<p>1) 남성과 여성 등의 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에 관련한 판례와 결정례를 탐구하여 성과 관련하여 분쟁이 실제로 어떻게 발생되고 이 분쟁에 관하여 법원, 헌법재판소, 국가 인권위원회 등의 분쟁처리기관들이 성에 관한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하여 왔는지를 파악한다.</p> <p>2) 법과 판례와 결정례를 성인지적(gender perspective)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함양한다.</p> <p>3) 모든 사람이 성에 관계없이 인권을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보장받게 하기 위한 법 이론과 법실무 방안을 모색하게 한다</p>		
교재 및 참고자료	<p>김엘림(2013), 「남녀평등과 법」, KNOU PRESS(한국방송통신대 출판부).</p> <p>김엘림(2013),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 연구」, KNOU PRESS. 그 외 추후 게시자료.</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안내		
2주	제1강 젠더판례연구의 기초 (법의 성편향성, 평등권과 젠더판례의 의의와 개요)		
3주	제2강 가족분야의 젠더차별 관련 판례연구		
4주	제3강 고용분야의 젠더차별 관련 판례연구		
5주	제4강 고용과 사회보장 분야의 젠더차별 관련 판례연구		
6주	제5강 재화·용역·시설과 교육분야의 젠더차별 관련 판례연구		
7주	제6강 형사와 군사분야의 젠더차별 관련 판례연구		
8주	제7강 젠더차별관련 판례연구의 종합적 검토(세미나)		
9주	젠더차별 관련 판례에 관한 평석레포트 작성		
10주	제9강 직장내 성희롱 관련 판례연구		
11주	제10강 대학내 성희롱 관련 판례연구		
12주	제11강 성폭력관련 판례연구		
13주	제12강 가정폭력관련 판례연구		
14주	제13강 성매매 관련 판례연구		
15주	제14강 젠더폭력관련 판례의 종합적 검토(세미나)		
16주	젠더폭력 관련 판례에 관한 평석레포트 작성		

인권일반 / 사회

고려대학교

교과목명	북한인권과 탈북자 문제	개설형태	북한학과 / 교양선택 / 3학점
수업개요	본 강의는 북한인권 개선과 탈북자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보편적인 인권과 세계 인권사례를 고찰한다.		
수업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편적인 인권이론과 세계 인권 사례를 살펴본다. 2. 북한인권과 탈북자,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살펴본다. 3. 북한인권 개선 방안을 살펴본다. 		
교재 및 참고자료	<p>허만호, 2008, [북한의 개혁: 개방과 인권], 명인문화사.</p> <p>윤영관, 김수암, 2010, [북한인권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평화적 개입 전략과 국제 사례], 도서출판 한울.</p> <p>황재욱, 2012, [북한인권 문제], 선인.</p> <p>나초스, 2003, [북한의 기아], 다할미디어.</p> <p>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2, [고난의 행군시기 탈북자 이야기], 도서출판 박이정.</p> <p>박경숙, 2013, [북한사회와 굴절된 근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p> <p>김태현, 노치영, 2005, [재중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도서출판 하우.</p> <p>김혁, 2013, [소년, 자유를 훔치다], 늘봄플러스.</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 개요		
2주	인권이론		
3주	국제사회의 인권논의 1		
4주	국제사회의 인권논의 2		
5주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 1		
6주	인권개선 정책의 국제 사례 2		
7주	국제사회와 북한의 인권문제		
8주	중간고사		
9주	북한인권과 기아(식량난, 기근, 인구변동)		
10주	북한인권과 아동(교육, 꽃제비, 건강)		
11주	북한인권과 자유(언론, 이동, 재산)		
12주	북한인권과 정치범 수용소		
13주	북한인권과 강제송환		
14주	재중 북한이탈여성들과 자녀들의 삶		
15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세미나		
16주	기말고사		

교과목명	이주 · 난민과 사회복지	개설형태	국제사회복지학과 / 전공선택 / 3학점
수업개요			
수업목표			
교재 및 참고자료	<p>김태수. (2009). 한국사회의 외래인 배제. 인간사랑.</p> <p>김태수. (2012). 사회보장요론. 교보퍼플.</p> <p>김태수. (2011). 사회복지법제요론. 교보퍼플.</p> <p>김태수. (2011). 사회복지정책요론. 교보퍼플.</p> <p>김태수 외. (1998). 복지행정론. 대영문화사.</p> <p>정재각. (2010). 국제이주론. 인간사랑.</p> <p>-이주민-</p> <p>강수향·유계숙. (2010). 이주민 유입의 영향과 이주민 지원 및 사회참여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분석. 한국가족학회 편. 『가족과 문화』 23권 2호, 41~73쪽.</p> <p>강휘원. (2009). 캐나다 이주민 거주지역의 초기 집중과 공간적 확산. 경인행정학회 편. 『한국정책연구』 10권 3호, 1~19쪽.</p> <p>고현웅. (2007). 주요국 비정규이주민정책 비교. 지역사회학회 편. 『지역사회학』, 167~194쪽.</p> <p>구춘권. (2012). 이주의 증가와 독일 이주민정책의 변화.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편. 『국제지역연구』 21권 1호, 119~154쪽.</p> <p>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교육국 인권교육과. (2012).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447면)</p> <p>국가인권위원회. (2008). 2007 이주민 자녀의 인권 현주소: 현장사례와 관련정책 중심으로.</p> <p>김도협. (2012). 동독이주민에 대한 서독정부의 성공적 대응정책에 관한 일고. 세계헌법학회 한국지회 편. 『세계헌법연구』 18권 2호, 21~47쪽.</p> <p>김정순. (2009). 외국인 이주민의 사회통합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p> <p>맹상학. (2009). 이주민에 대한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접근 및 사목전망.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편. 『누리와 말씀』 28권, 63~94쪽.</p> <p>문순영. (2007). 현행법(안)을 통해 본 국제결혼 여성이주민을 위한 사회적 지원 체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편. 『여성연구』, 109~142쪽.</p> <p>박단 외. (2009). 현대 서양사회와 이주민: 갈등과 통합 사이에서. 한성대학교 출판부.</p> <p>박명선. (2006). 서독의 강제이주민 통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편. 『국제지역연구』 5권 4호, 57~83쪽.</p> <p>박병섭. (2008). 다문화주의 철학-이주민과 다문화 가정과 함께 하는. 실크로드.</p> <p>박흥순 외. (2011). 이주민 선교와 신학 이주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한 국장로교출판사.</p> <p>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2). 외국 이주민의 사회적 욕구와 적응. 박영사.</p> <p>서광석. (2009). 다문화사회 이주민을 위한 한국을 알고 싶어요. 생각나눔.</p> <p>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2013). 이주민의 에스니시티와 거주지역 분석. 이담북스.</p>		

신상은. (2009). 이주민에 대한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접근 및 시목전망에 대한 논평.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편. 『누리와 말씀』 28권 , 95~105쪽.

신은주. (2012). 이주민의 사회권보장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편. 『한국정책 연구』 12권 4호, 325~342쪽.

양미애. (2009). 프랑스의 이주민 갈등과 통합-마그레브(Maghreb) 이주민을 중심으로. 프랑스학회 편. 『프랑스학연구』 45권 , 267~285쪽.

윤여상. (2008). 독일 이주민 정책에 관한 연구-대량 이주 전·후의 비교를 중심으로. 북한학회 편. 『북한학보』 26권 , 179~221쪽.

윤여상. (2013). 통일이후 북한 이주민 대책. 북한연구소 편. 『북한』 . 42~48 쪽.

윤용선. (2013). 독일 베트남 이주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편. 『역사문화연구』 47호. 199~233쪽.

윤인진. (2009). 북한이주민 생활과 의식, 그리고 정착지원정책. 집문당.

이기영 외. (2008). 이주민 정책과 서비스. 나눔의집.

이석우·조영관. (2013). 이주민 인권백서. 오름.

이상언·최유. (2006). 다문화 가정 도래에 따른 혼혈인 및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제지원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이주노동자와 연대하는 전일본 저. 이혜진·이한숙 역. (2007). 이주민과 함께 살아가기. 산지니.

임지영. (2011). 프랑스 노동시장에 나타난 이주민의 경제적 관계와 사회통합. 부산외국어대학교 지중해연구소 편. 『지중해지역연구』 13권 4호, 63~83쪽.

정임숙. (2009). 이주민소수자 정책의 정향과 정체성. 한국지방정부학회 편.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권 , 1~19쪽.

전석재. (2012). 한국교회의 이주민 선교. 한국선교신학회 편. 『선교신학』 29 권 , 187~213쪽.

정도희·박동열. (2010). 국내 이주민에 의한 잠재적 소요 예방을 위한 재한외국 인치우기본법 개선안. 한국경찰법학회 편. 『경찰법연구』 9권 2호, 275~296쪽.

정병호 외. (2011). 한국의 다문화 공간-우리 사회 다문화 이주민들의 삶의 공간을 찾아서. 현암사.

정영태. (2009). 서구 다문화사회의 국제이주민 정책과 실태. 인하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편. 『한국학연구』 20권 , 311~374쪽.

정해조·이정욱. (2010). 민족의 개념이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끼치는 영향 연구. 한국프랑스문화학회 편. 『프랑스문화연구』 22권 , 87~118쪽.

조석주·박지영. (2012).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현성. (2011). 이주민 모국문화를 활용한 문화 프로그램 개선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혜지. (2012). 국내 체류 이주민의 사회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편.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 308~

한국이주민건강협회. (2009). 한국사회와 이주민 건강. 청년의사.

홍기원. (2008). 이주민 관련 문화프로그램의 현황 분석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홍승모. (2009). 교회 선교의 근거로서 이주민의 보호와 연대성. 인천가톨릭대학교 복음화연구소 편. 『누리와 말씀』 28권 , 7~55쪽.

황정미. (2009).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현황과 증진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황필규. (2009). 한국의 이주민 법제의 시각과 관련 쟁점.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편. 『법학논총』 16권 2호, 1~41쪽.

	<p>-난민-</p> <p>Christian Baureder · 김종철 외. (2010). 국내 체류 난민의 기본권 보호와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 국가인권위원회.</p> <p>고문현. (2009). 한국에서의 난민의 현황과 난민인정절차의 개선방안. 세계헌법학회 한국지회 편. 『세계헌법연구』 14권 3호, 1~24쪽.</p> <p>고문현. (2012). 난민수용의 실태와 인정절차. 한국공법학회 편. 『공법연구』 40권 1호, 35~62쪽.</p> <p>김종철. (2009). 2008 국내 난민 등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p> <p>김철민. (2012). 난민 보호를 위한 인도주의적 개입과 현황. 아시아중동부유럽학회 편. 『동유럽발칸학』 14권 1호, 355~390쪽.</p> <p>박명도. (2012). 재중 탈북자와 국제난민법.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편. 『법학논총』 19권 1호, 35~59쪽.</p> <p>박영희 외. (2009). 이주 난민의 정신 건강과 상담. 나눔의집.</p> <p>안성경 · 윤이숙. (2012). 난민의 지위와 인정 절차의 법제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유럽헌법학회 편. 『유럽헌법연구』 13호, 127~150쪽.</p> <p>엄태완. (2010). 탈북난민의 위기적 경험과 외상. 경남대학교 출판부</p> <p>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 저. 국가인권위원회 역. (2006). 인권과 난민. 국가인권위원회.</p> <p>정용길. (2010). 동독인 탈출과 대량난민 문제. 북한연구소 편. 『북한』 455호, 52~61쪽.</p> <p>정인섭 · 황필규. (2011). 난민의 개념과 인정절차. 경인문화사.</p> <p>정주신. (2011). 탈북자 문제의 인식 2-탈북자 난민 UNHCR. 프리마북스.</p> <p>최유. (2013).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난민법제상 난민지원제도연구. 한국법제연구원.</p> <p>통일연구원. (2012). 해외 이주 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통일연구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제1주: 강의계획 및 참고문헌 소개
2주	제2주: I. 사회복지의 대상-이주·난민-의 개념화 1. 외래인의 개념: 한국적 개념; 미국적 개념; 유럽적 개념; 디아스포라 2. 외래인의 범주화: 한국적 범주화; 국제적 범주화
3주	제3주: I. 사회복지의 대상-이주·난민-의 개념화 3. 이주민 4. 난민 5. 기타 범주 외래인
4주	제4주: II. 사회복지의 내용 1. 사회복지의 전통적 범주화 2. 인권
5주	제5주: II. 사회복지의 내용

	<p>3. 사회권</p> <p>4. 국가부조: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p> <p>5. 사회부조: 사회보험</p>
6주	<p>제6주: III. 사회복지의 맥락-사회적 배제와 포용</p> <p>1. 사회적 배제와 포용의 개념</p> <p>2. 사회적 배제 경향성: 세계적 추세; 한국적 추세</p> <p>3. 사회적 포용 경향성: 세계적 추세; 한국적 추세</p>
7주	<p>제7주: IV. 한국 외래인의 현황</p> <p>1. 한국 외래인의 과거</p> <p>2. 난민</p>
8주	제8주: 중간시험
9주	<p>제9주: IV. 한국 외래인의 현황</p> <p>3. 다문화이주민</p> <p>4. 귀국교포</p>
10주	<p>제10주: IV. 한국 외래인의 현황</p> <p>5. 북한이탈주민</p> <p>6. 외국인 노동자</p> <p>7. 기타 외래인</p>
11주	<p>제11주: V. 외래인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p> <p>1. 기초와 경향성</p> <p>2. 외래인 공공부조: 긴급복지;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p>
12주	<p>제12주: V. 외래인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p> <p>3. 외래인 사회보험: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p> <p>4. 외래인 사회복지서비스</p>
13주	<p>제13주: V. 외래인 사회복지의 문제점과 발전방향</p> <p>5. 기타 외래인의 관련적 사회복지: 주거복지; 교육복지; 노동복지; 환경복지..</p> <p>6. 외래인 사회복지의 방향성-cosmopolitanism(good governance & society)</p>
14주	제14주: 총정리
15주	제15주: 학기말시험
16주	

다문화/소수자

충북대학교

교과목명	다문화 사회와 소수자 인권 세미나	개설형태	윤리교육과 / 전공선택 / 3학점
수업개요	1.인류사회의 폭력과 고통의 기원 및 현상과 역사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본다. 2.폭력과 고통을 덜어내고 극복하는 적극적인 윤리학적 모색을 시도한다. 3.인권과 평화 구현을 위한 학문적 기초를 닦는다.		
수업목표			
교재 및 참고자료	1.레비나스 평화윤리 연구, 김연숙, 한국국민윤리학회, 2006 2.타자윤리학, 김연숙, 인간사랑, 2002 3.해바라기, 시몬 비젠탈, 뜨인돌, 2005 4.글로벌 이슈, 마이클 스나르&닐 스나르, 명인문화사, 2006 5.난민과 국민사이, 서경식, 돌베개, 2006 6.Basic Philosophical Writings, Emmanuel Levinas, ed., A.T. Peperzak, Indiana Academic Publishers, 1969 7.Ethics and Infinity, Emmanuel Levinas, trans. Richard A. Cohen, Duquesne, 1996 8.Totality and Infinity, Emmanuel Levinas, trans. Lingis, A., Netherlands : Kluwer Academic Publishers, 1969 9.세계분쟁과 평화운동,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엮음, 아르케, 2004 10.전체주의의 기원, 한나 아렌트, 한길사, 2009 11.지구화시대의 정의, 낸시 프라이저, 김원식 역, 그린비, 2009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 안내 및 문제 의식화 <해바라기>-Totality and Infinity		
2주	고통받는 사람들1 <난민과 국민사이>-Totality and Infinity		
3주	고통받는 사람들 <난민과 국민사이>-Totality and Infinity		
4주	폭력의 세기1 <예루살렘의 아이히만>-Totality and Infinity		
5주	폭력의 세기2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6주	세계화 시대의 도덕문제1 <지구화 시대의 정의>		
7주	세계화 시대의 도덕문제2 <지구화 시대의 정의>-Totality and Infinity		

8주	폭력의 기원1-<전체주의의 기원>
9주	폭력의 기원2-<전체주의의 기원>
10주	폭력의 기원3-<전체주의의 기원>
11주	폭력의 기원4-<전체주의의 기원>
12주	타자와 함께하는 평화 모색1 <타자윤리학>
13주	타자와 함께하는 평화 모색2 <타자윤리학>
14주	타자와 함께하는 평화 모색3 “레비나스 평화윤리 연구” <peace and proximity>
15주	타자와 책임의 문제1 “레비나스 윤리적 주체성 연구” The Rights of Man and the Rights of the Other
16주	종합토론

다문화/소수자

청주교육대학교

교과목명	다문화 사회와 인권	개설형태	다문화교육 / 전공필수 / 3
수업개요			
수업목표	이 강좌는 다문화 사회와 인권에 대한 주요한 주제들을 파악하고, 인권 관련 사례 분석 등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 사회의 인권 정책 및 관련 문제 해결에 대한 안목을 가지며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재 및 참고자료	<p>나는 어린이 노동자 : 세계 2억 노동하는 아이들의 이야기 / 황미숙 / 현암사 / 2012/</p> <p>나는 어린이 병사 : 총을 들고 죽어 가는 분쟁 지역의 아이들 / 국제 엠네스티. 일본지부 / 현암사 / 2012/</p> <p>인권 : 이론과 실천 / Freeman, Michael / 아르케 / 2005/</p> <p>인권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오름 / 1997/</p> <p>허수미, 2008, 인권적 문화 형성을 위한 인권교육 방향 설정, 社會科教育 第47卷 4號, 153-181 (29 pages)</p> <p>이종일(2010). “다문화교육에서 ‘다양성’의 의미”, 『사회과교육연구』 제17권4호,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pp.105-120</p> <p>전제철, 2011, 다양성의 유형에 따른 다문화 교육 전략 연구, 법교육연구, 16(1), 113-133.</p> <p>박경태, 2007,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책세상(342.1 박 14o)</p> <p>이종일(2009). “적극적의미의 비판적사고하기를 통한 반편견 교수방안”, 사회과교육, 제48권4호, 한국사회교과교육연구학회, pp.47-62</p> <p>박미경, 2010,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사회통합 정책과 과제: 미등록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4(2), 101-131</p> <p>임운택, 문화다양성과 다문화: EU의 이주노동자인권 논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1, 1-14.</p> <p>심보선, 2007, 온정주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형성과 변화 - 한국의 다문화 정책을 위한 시론적 분석 -, 담론, 41-76.</p> <p>정현주, 2007, 저개발국가로부터 여성 결혼이주의 정주패턴과 사회적응 과정 : 공간의 닷에 갇힌 그녀들?: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이동성에 대한 연구,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0(2), 53-68.</p> <p>황미혜, 2011, 결혼여성 이민자의 인권문제와 사회통합복지 방안연구, 다문화와 평화, 5(1), 1-28.</p> <p>양영자, “분단-다문화시대교육이념으로서의민족주의와다문화주의의양립가능성모색” 한국교육과정학회 教育課程研究, Vol. 25, No. 3, 2007.</p>		

	<p>김창근, 2010, 다문화 시대의 "통민족주의"와 통일교육, 윤리연구, 77, 137-162.</p> <p>오은경, 2009, 이슬람 여성과 다문화주의- 테일러, 오킨, 지적의 통찰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9권 제1호, 2009.4, 1-29</p> <p>김옥, 2012,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충돌- 미국의 문화적 항변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1권 2호, 49-71</p> <p>김현덕 “다문화사회의도래와국제이해교육의역할”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역음 다문화 사회와 국제이해 교육, 파, 주 동 녘 2009</p> <p>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역음, 2004, 함께 나누고 배우는 세계의 교실, (제3장,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p> <p>김영철, 2005, 라틴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와 흑인 인권- 브라질의 흑인 인권을 중심으로, 라틴아메리카연구, Vol.18 No.4, 71-103</p> <p>정현주, 2010, 대학로 “리틀마닐라” 읽기: 초국가적 공간의 성격 규명을 위한 탐색,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6(3), 295-314.</p> <p>최병두, 2011, 다문화공생, 푸른길.</p> <p>최병두, 임석희, 안영진, 박배균, 2011, 지구·지방화와 다문화공간, 푸른길 - 제8장. 이주노동자의 일터와 일상생활의 공간적 특성</p> <p>인권으로 읽는 동아시아 : 한국과 일본의 인권 개선조건 / 정진성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0/</p> <p>구정화, 2004, 아동의 ‘인권’ 개념형성에비추어본초등사회과인권내용적 합성, 사회과교육, 43(2), 65-84.</p> <p>전제철, 2011, 사회과에서의 다문화 인권 교육 연구 시민교육연구, .43(3), 143-164.</p> <p>인권의 대전환 : 인권 공화국을 위한 법과 국가의 역할 / Fredman, Sandra / 교양인 / 2009</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좌안내
2주	인권: 이념과 현실
3주	문화 다양성과 다문화
4주	소수자와 인권
5주	이주 노동자와 인권

6주	결혼 이주 여성과 인권
7주	북한 이탈 주민과 인권
8주	젠더와 인권
9주	세계화 시대의 인권교육
10주	다문화 공생과 지역사회
11주	사회과에서의 다문화 인권교육
12주	인권 현장 사례 분석 1
13주	인권 현장 사례 분석 2
14주	인권문제 해결 노력
15주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16주	

다문화

루터대학교

교과목명	문화적 다양성과 인권	개설형태	전체학과 / 교양선택 / 2
수업개요	<p>인권(人權)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현대 사회에 대두되는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권이라는 키워드가 주목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p> <p>본 강좌에서는 ‘인권’에 대한 여러 쟁점들을 알아보고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나 역시 ‘가해자’일 수 있음을 깨닫고 다문화 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볼 예정입니다.</p>		
수업목표	개요에 포함		
교재 및 참고자료	<p>[주교재] 불편해도 괜찮아 - 영화보다 재미있는 인권 이야기 / 김두식 저/국가인권위원회 기획 / 창비 / 2010</p> <p>[참고문헌] 그들도 나처럼 소중하다 / 박경서 저 / 북로그컴퍼니 / 2012 인권이란 무엇인가 / 박경서 / 미래지식 / 2012 인권을 외치다 / 류은숙 저 / 푸른숲 / 2009 인권의 발명 / 린 헌트 저/ 전진성 역 / 돌베개 / 2009 인권 / 최현 저 / 책세상 / 2008 세계 인권 사상사 / 미셸린 이샤이 저 / 조효제 역 / 길 / 2005</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개강 강의 강의 안내 / 성적평가 방법 안내		
2주	제1장 네 멋대로 해라 청소년 인권		
3주	제2장 왜 이렇게 불편할까? 성소수자 인권		
4주	[휴강] 한가위 명절 연휴 / 보강예정		
5주	제3장 뽀따귀로 사랑 표현하기 여성과 폭력		
6주	주제 토론 01		

	시청각자료 활용
7주	[휴강] 한글날 / 보강예정
8주	중간시험
9주	공주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 장애인 인권
10주	한국의 「빌리 엘리어트」는 언제 나올까 노동자의 차별과 단결?
11주	1년에 600명의 청년들이 교도소에 가는 나라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2주	주제 토론 01 시청각자료 활용
13주	영화 화면을 자르는 사람들 검열과 표현의 자유
14주	누가 앵무새를 죽였는가? 인종차별의 문제
15주	그냥 다 죽이면 간단하지 않나요? 차별의 종착역, 제노싸이드
16주	기말시험

다문화/소수자

부산대학교

교과목명	다문화사회와 인권	개설형태	사회과학연구원 / 교선 / 3학점
수업개요	다문화사회와 이주민 인권 -인종과 민족의 계층화 -편견과 차별 -주류와 소수자의 관계 -다문화사회의 유형과 주요 쟁점		
수업목표	이 교과목은 한국연구재단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한국사회의 다민족 국가로의 이행에 관한 사회과학적 연구와 정책적 대응)의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의도에서 개설된 것으로 대학생들의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과 인권의식의 배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구체적인 교수목표는 다음과 같다. -사회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인권의 개념과 우리 사회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다문화사회의 개념을 이해한다.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이주아동, 재외동포 등 국내의 다양한 이주민 집단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들의 특성과 인권상황을 이해한다. -이주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 긍정적 태도를 형성한다.		
교재 및 참고자료	Parrillo, Vincent N. 인종과 민족관계의 이해,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역, 박영사, 2010.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소개 및 오리엔테이션		
2주	다문화사회와 인권		
3주	문화의 역할: 문화의 개념, 문화변동, 소수자통합이론		
4주	편견		
5주	편견사례		
6주	재외동포 이해교육		
7주	차별		
8주	중간고사		
9주	미디어에 나타난 다문화		
10주	민족과 인종의 계층화		
11주	주류와 소수자의 관계		
12주	다문화사회의 유형과 쟁점		
13주	다문화사회와 사회복지		
14주	현충일		
15주	기말고사		
16주			

평화/전쟁/정치

가톨릭대학교

교과목명	환경, NGO, 인권과국제정치	개설형태	국제학부 / 전공선택 / 3
수업개요	Issues of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NGOs have growing importance in international politics today. This course explores basic but complicated circumstances behind these issues in the world today. It will also review the current state of several NGOs as case studies.		
수업목표	To understand basic issues of environment, human rights and NGOs in the world politics; To explore the contexts in which interests of various actors are played out; To review the activities of NGOs in the world today.		
교재 및 참고자료	The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te O'Neill. 2009. International Human Rights, Westview Press, Jack Donnelly. 2007.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Introduction		
2주	NGO in the World Politics		
3주	The Environment and International Relations		
4주	International Environment Problems		
5주	Actors in International Environment Politics		
6주	Environmental Treaty Regimes		
7주	Future Environment		
8주	Midterm exam		
9주	Human Rights in World Politics		
10주	The Multilateral Politics of Human Rights		
11주	Humanitarian Intervention		
12주	Globalization and Human Rights		
13주	Case Studies: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NGOs		
14주	Case Studies: Environment and Human Rights NGOs		
15주	Wrap-up		
16주	final exam		

인권일반/사회

건국대학교

교과목명	국제사회와 인권	개설형태	/ / 2
수업개요	<p>21세기 인권주류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인권보호규범과 제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UN을 포함한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의 국제 인권보호체계를 학습한 후에 주요 인권조약에서 확립된 주요 인권규범과 그 실현을 위한 이행제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국제적으로 승인된 인권의 국제적 해석과 이의 적용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국제 인권규범의 보장절차를 습득하고 주요한 인권쟁점을 둘러싼 최근의 국내외 논쟁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기구에서 관련 인권 문제가 다루어진 사례들을 분석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함으로써 개인의 국제화 지수를 높인다. 더불어 인권을 보편적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국에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하여 요구되는 상황 및 맥락을 고려한 인권정책대안을 제시한다.</p>		
수업목표	<p>이 과목은 인권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을 공부한다. 21세기 인권주류화를 지향하는 국제사회의 인권보호규범과 제도에 관하여 연구한다. UN을 포함한 국제적 및 지역적 차원의 국제인권보호체계를 학습한 후에 개별 인권조약에서 확립된 주요 인권규범과 그 실현을 위한 이행제도에 관한 지식을 습득한다. 또한 주요한 인권쟁점을 둘러싼 국내외 논쟁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기구에서 관련 인권문제가 다루어진 사례들을 분석하여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한다.</p>		
교재 및 참고자료	<p>부교재 국제인권법, 채형복, 높이깊이 국제사회와 인권, 박병도</p> <p>참고문헌 인권의 해설,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법, 한희원, 삼영사 국제인권조약집, 정인섭, 경인문화사 인권법, 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 아카넷</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인권이란 무엇인가?		
2주	인권의 역사		
3주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4주	주요 국제인권조약과 지역적 인권조약
5주	국제인권 실현을 위한 시스템
6주	(강의 및 발표): 시민적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1)
7주	(강의 및 발표): 시민적 정치적 권리(Civil and Political Rights)(2)
8주	평가
9주	(강의 및 발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0주	(강의 및 발표): 인종과 차별과 관련한 인권문제
11주	(강의 및 발표): 성(Gender)과 차별(Discrimination)과 관련한 인권문제
12주	(강의 및 발표): 굴욕적이고 비인간적인 취급과 관련한 인권문제
13주	(강의 및 발표): 사회적 약자(아동, 노인 등)의 인권문제
14주	(강의 및 발표):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
15주	(강의 및 발표) : 난민(Refugee)의 보호
16주	평가

교과목명	국제인권	개설형태	국제학과 / 전선 / 3학점
수업개요	<p><i>Human Rights in Global and Regional Context: a Risk-Based Approach</i> explores two rising concepts in international relation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that is,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ism. The first half of the course examines theoretical topics related with human rights, which include definition and concepts, various regimes, and human right's relationship with foreign policy and development. With the foundation gained through these theoretical lectures, the second half of the course focuses on the particular issues of human rights and observe why and how the two concepts—human rights and humanitarianism—are becoming critical components in dealing with international crises. We will examine natural disasters vs. complex emergencies, famine and food aid, refugees and forced migration, and human trafficking.</p>		
수업목표	<p>This class challenges students to identify how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practices have contributed to (or become a disservice to) resolving these crises. To help students understand real-world crisis situations, guest speakers are occasionally scheduled to share their experiences.</p>		
교재 및 참고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Cmiel, K. (2004). The Recent History of Human Rights. <i>American Historical Review</i>, 109(1), 117-135. 2. Doyle, M. and Gardner, A. Introduction: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Order in Coicaud, Jean-Marc, et al. <i>The Globalization of Human Rights</i>. The United Nations University. 3. Sen, Amartya. 2004. Elements of a Theory of Human Rights. <i>Philosophy & Public Affairs</i> Vol. 32, No.4. Oxford: Blackwell Publishing, Inc. Donnelly, Jack. 2003. <i>Universal Human Rights in Theory and Practice</i>. Cornell University Press.p. 127-154 4. Weissbrodt, David and Connie de la Vega. 2007. <i>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 Introduction</i>. Philadelphia: Pennsylvania Press. p. 311-341. 5. Craig Scott, 1989, Interdependence and Permeability of Human Rights Norms: Toward a Partial Fusion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Human Rights, <i>Osgoode Hall Law</i> 		

Journal, 27(4), pp.769–878.

6. Hsien-Li Tan, 2011, The 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stitutionalising Human Rights in Southeast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7. Claude, Richard Pierre and Weston, Burns H ed. 1992. Human Rights in the World Community Issues and Action 2nd ed.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p. 286–320.

8. Dembour, M. (2001). Following the Movement of a Pendulum: Between Universalism and Relativism in Cowan, J., M. Dembour and R. Wilson (eds) Culture and Rights: Anthropological Perspectives. Cambridge: Cambridge UP.

9. Jack Donnelly, An Overview in: D.P. Forsythe (ed.), Human Rights and Comparative Foreign Policy, (Tokyo: United Nations University Press, 2000) pp.310–334

10. Dallmayr F.(2002). Asian Values and Global Human Rights. Philosophy East & West, 52(2), 173.

11. Gary Teeple, The Riddle of Human Rights, (Aurora: Garamond Press, 2005) [Chapter 5. The Curious Unanimity]

12. M.Ignatieff, Human Rights as Politics, in: A. Gutmann (ed.), Human Rights as Politics and Idolatory,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1) pp.3–52.

13. Rhoda E. Howard and Jack Donnelly, Liberalism and human rights: a necessary connection, in: M.Ishay(ed.) The Human Rights Reader: Major Political Essays, Speeches, and Documents From the Bible to the Present, (New York:Routledge, 1997) pp.268–276

14. Zehra F. Arat, 1999, Human Rights and Democracy: Expanding or Contracting? Polity, 32(1), pp.110–144.

15. Olivier de Schutter. Transnational Corporation as Instruments

of Human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6. Wolfensohn, James D. Some Reflections o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In Alston, Philip and Robinson, Mary ed. 2005.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17. Child Labor, Education, and Children's Rights, Gordon Betcherman, Jean Fares, Amy Luinstra, and Robert Prouty, The World Bank

18. Stephanie Farrior, 2009, Human Rights Advocacy on Gender Issu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Vol. 1, No.1.pp. 83-100

19. Siobhan Mcinerney-Lankford, 2009,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 Comment on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rom a Legal Perspective, Journal of Human Rights Practice Vol. 1, No.1. pp. 51-82

20. Gordenker, Leon and Thomas G. Weiss. 1995. Pluralising Global Governance: Analytical Approaches and Dimensions. Third World Quarterly 16:3. pp. 357-387.

21. Risse, Thomas, Stephen C. Ropp and Kathryn Sikkink ed.2005. Introduction. in The Power of Human Rights: International Norms and Domestic Chan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1-38.

22. Welch, Jr., C.E. 2001. Introduction. in NGOs and Human Rights: Promise and Performance. (Pennsylvan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p.1-13.

23. Price, Richard. 1998. Reversing the Gun Sights: Transnational Civil Society Targets Land Mines. International Organization 52:3. pp. 613-644.

24. Merry, Sally E. 2006. Transnational Human Rights and Local Activism: Mapping the Middle. American Anthropologist 108:1. pp. 38-50.

25. Koh, H.H. 1999. How I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nforced? *Indiana Law Journal* 74:4. pp.1397–1417.
26. Soh, C. 2007. Enhancing human security in North Korea through development of a human rights regime in Asia. *Korea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10:1. pp. 3–22.
27. Teitel, Ruti G. 2003. Transitional Justice Genealogy. *Harvard Human Rights Journal* 16. pp. 69–94.
28. Leebaw, Bronwyn A. 2008. The Irreconcilable Goals of Transitional Justice. *Human Rights Quarterly* 30:1. pp. 95–118
29. Danner, Allison Marston. 2003. Enhancing the Legitimacy and Accountability of Prosecutorial Discretion at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97. pp. 510–552
30. Van Zyl, Paul. 1999. Dilemmas of Transitional Justice: The Case of South Africa's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52:2. pp. 647–667
31. Yamamoto, Eric K. et al. 2007. American Reparations Theory and Practice at the Crossroads. *California Western Law Review* 44:1. pp. 1–85
32. Mukhopadhyay, Dipali. 2009. Disguised Warlordism and Combatanthood in Balkh: the Persistence of Informal Power in the Formal Afghan State, *Conflict, Security and Development* 9:4. pp. 535–564
33. Kim, Hunjoon. 2009. Seeking Truth after 50 Years: The National Committee for Investigation of the Truth about the Jeju 4.3 Ev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3:3. pp. 406–423.
34. Inside Disaster Haiti (2011)--Part 1. Emergency (10 min.)

35. Barnett, Michael and Thomas G. Weiss. 2011. Humanitarianism Contested: where angels fear to tread. Routledge: New York. Chapter 2. (pp. 8–32)

[36. Chandler, David. 2001. The Road to Military Humanitarianism: How the Human Rights NGOs Shaped a New Humanitarian Agenda. Human Rights Quarterly 23, no.3:678–700](#)

37. Fox Fiona. 2001. New Humanitarianism: Does It Provide a Moral Banner for the 21st Century? Disasters. Vol. 25, Issue 4

38. Slim, Hugo. 2002. Not Philanthropy but Rights: The proper politicization of humanitarian philosophy. Centre for Development and Emergency Practice, Oxford Brookes University. <http://www.odi.org.uk/events/documents/2103-rights-based-humanitarianism-proper-politicisation-humanitarian-philosophy-hugo-slim-revised-may-2001.pdf>

39. Flanagan-Rieffer, Barbara Ann. 2009. Is Neutral Humanitarianism Dead? Red Cross Neutrality: Walking in the Tightrope of Neutral Humanitarianism. Human Rights Quarterly 31, no. :888–915.

40. “Afghanistan” in In Harm’s Way (2010, app. 18 min.) by Norwegian Refugee Council
<http://vimeo.com/16842825>

41. Smith, Michael. “Humanitarian Intervention: An Overview of Ethical Issues.”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12 (1998): 271–295.

42. Barry R. Posen. "Military Responses to Refugee Disasters." International Security 21, No. 1 (Summer 1996): 72–111.

43. Luttwak, Edward. “Give War a Chance.” Foreign Affairs (July/August 1999): 36–44.

44. Gareth Evans and Mohamed Sahnoun,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Foreign Affairs* 81, No. 6 (November/December 2002): 99-110.

45. Michael W. Doyle, "The Folly of Protection: Is Intervention Against Qaddafi's Regime Legal and Legitimate?" in *The New Arab Revolt* (Washington D.C.: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2011): 263-268.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Introduction: What are human rights?
2주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Regimes
3주	THANKSGIVING VACATION
4주	Foreign Policy & Cultural Relativism 1 st Presentation
5주	NATIONAL FOUNDATION DAY
6주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2 nd Presentation
7주	Non-State Actors and Human Rights 3 rd Presentation
8주	MIDTERM
9주	Human Rights and Transitional Justice 4 th Presentation
10주	Humanitarianism and Human Rights 5 th Presentation
11주	Humanitarian Intervention: Use of Force to Save Lives 6 th Presentation
12주	PROPOSAL PRESENTATION
13주	TBD 7 th Presentation
14주	Refugees and Forced Migration Issues 8 th Presentation
15주	FINAL
16주	

평화/전쟁/정치

동아대학교

교과목명	동북아의 평화와 인권	개설형태	/ 과목성격 / 학점
수업개요	본 교과는 동북아 국가들의 평화적 탈냉전질서의 구축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보편적 인권의제를 둘러싼 국가-시민사회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고찰을 통해 향후 시민사회의 주역으로서 국가적 범위를 넘어 동북아 차원의 시민사회의 연대라는 중요한 과제를 짚어지고 나아가할 미래세대의 육성을 목적으로 함		
수업목표	본 교과는 민족국가의 틀에 속박되어 있는 동북아지역의 시민사회의 연대를 통해 역내 평화와 인권의 증진을 주도할 미래세대의 교양을 목적으로 함		
교재 및 참고자료	권용혁, 『한중일 시민사회를 말한다』, 이학사, 2006.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개요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2주	동북아 시민사회와 지역구상 1		
3주	동북아 시민사회와 지역구상 2		
4주	동북아 3국의 시민사회 비교1		
5주	동북아 3국의 시민사회 비교2		
6주	동북아 3국의 시민사회 비교3		
7주	동북아 3국의 시민사회 비교4		
8주	중간고사		
9주	동북아 시민사회와 평화1		
10주	동북아 시민사회와 평화2		
11주	동북아 시민사회와 평화3		
12주	동북아 시민사회와 인권1		
13주	동북아 시민사회와 인권2		
14주	동북아 시민사회와 인권3		
15주	기말고사		
16주			

평화/전쟁/정치

영남대학교

교과목명	인권과 정치	개설형태	정치외교학과 / 전공선택 / 3학점
수업개요	<p>이 과목은 인권과 정치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이론적 성찰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의 쟁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시도한다. 이 수업은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부분은 담당교수의 강의를 중심으로 주요 인권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의적, 여성주의적 인권이론 및 인권과 국가폭력의 문제가 이 부분에서 다루어진다. 두 번째 부분은 학생들의 발표와 토론을 통한 세미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다. 한국 현대사에 등장한 국가폭력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발표로부터 시작해 국가의 시민들에 대한 도청과 감시, 표현의 자유 및 국가보안법 논쟁 등과 같은 자유권적 기본권의 문제가 다루어질 것이다. 사형제에 대한 찬반논쟁,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등과 같은 사법적 인권의 쟁점들, 그리고 동성결혼 및 성매매 찬반논쟁, 이주민정책 등과 같은 소수자 인권의 쟁점들 역시 토론의 대상이다. 이 수업을 통해 우리는 인권과 정치의 관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망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에 대해 서로 논쟁하고 토론할 것이다.</p>		
수업목표	<p>이 수업은 다음 주제에 대해 명확한 이해를 시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 개념 및 인권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이해 2. 자유주의적 인권이론의 특징 3. 자유주의적 인권 개념에 대한 사회주의적 비판 4. 여성주의적 인권이론 5. 국가폭력의 극단적 사례로서 파시즘에 대한 이해 6. 한국 현대사의 국가폭력 사례들 7. 자유권적 기본권의 쟁점들 8. 범죄와 처벌 및 사법적 인권의 문제 9. 소수자 인권의 쟁점들 		
교재 및 참고자료	<p><교재> 조효제,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2007 <독후감 대상 문헌> 칼 맑스/프리드리히 엥겔스, 공산당선언, 책세상, 2002 조현연, 한국 현대정치 의 악몽:국가폭력, 책세상, 2000 <참고문헌> 조효제, 인권의 풍경, 교양인, 2008 샌드라 프레드먼,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2009 미셸린 이샤이,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5 James W. Nickel, 인권의 좌표, 명인문화사, 2010 스탠리 코언, 잔인한 국가 외면하는 대중, 창비, 2009</p>		

	로버트 O. 팩스턴, 파시즘, 교양인, 2005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소개
2주	인권이란 무엇인가?
3주	인권의 문명사적 기원-주요 종교들의 인권관
4주	자유주의적 인권이론
5주	사회주의적 인권이론
6주	여성주의적 인권이론
7주	국가폭력과 인권: 극단적 국가폭력으로서 파시즘
8주	중간시험
9주	한국 현대사와 국가폭력
10주	자유권적 기본권의 쟁점들 I
11주	자유권적 기본권의 쟁점들 II
12주	범죄와 처벌: 사법(사법)적 인권의 쟁점들
13주	소수자 인권의 쟁점들 I
14주	소수자 인권의 쟁점들 II
15주	기말시험
16주	

인권/국제

전남대학교

교과목명	인권과 국제관계	개설형태	NGO협동과정 / 전공선택 / 3학점
수업개요	<p>탈냉전체제에서 인권에 관한 학계와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보편주의와 문화적 상대주의로 구분되는 국제정치적 그리고 철학적 개념에 기반하여, 최근에 대두되는 새로운 인권관련 이슈, 민주화와 연관되는 제3세계의 인권문제, 혹은 포괄적으로 아시아적 가치나 북한 탈북자의 인권문제 등을 논의한다.</p>		
수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관계(정치)이론의 이해를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인식과 분석 틀 확보 - 인권 개념과 주요 내용 및 인권논의의 발전 역사에 대한 이해 제고 - 국제관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체계적 이해와 분석능력 제고 - 인권문제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 제반 영역에 대한 토론을 통해 주요 국제문제에 대한 관점 정립 		
교재 및 참고자료	<p>국제정치 패러다임-현실주의·자유주의·구조주의 세계정치론 국제기구-글로벌 거버넌스의 정치학 인권의 문법 인권과 국제정치 : 국제인권의 현실과 가능성 및 한계 세계인권사상사 인권의 정치사상: 현대 인권 담론의 쟁점과 전망 인권: 이론과 실천 인권이란 무엇인가 국제인권법(이석용 외) 국제인권법(증보판) (토마스 버겐탈, 양건 외 역) 세계화와 인권 발전 동아시아 인권의 새로운 탐색</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오리엔테이션 및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		
2주	국제관계(정치)이론에 대한 이해1		
3주	국제관계(정치)이론에 대한 이해2		
4주	국제관계(정치)이론에 대한 이해3		
5주	국제관계(정치)이론에 대한 이해4		

6주	국제관계(정치)이론에 대한 종합검토
7주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1
8주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2
9주	인권문제에 대한 이해3
10주	국제관계에서 인권관련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1
11주	국제관계에서 인권관련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2
12주	인권의 주요 쟁점과 인권의 미래
13주	사회적 이슈와 인권
14주	인권과 국제관계
15주	기말고사
16주	

평화/전쟁/정치

충북대학교

교과목명	인권과 평화	개설형태	윤리교육과/ 전공선택 / 3학점
수업개요	이 과목은 2011 개정 교육과정 도덕과 인권과 평화를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교육하기 위한 과목이다. 오늘날 지구화 시대의 타자와 함께하는 평화의 방향을 탐색하며, 평화의 기본토대가 되는 인권의 사상사적 토대 및 역사적 발전과정을 탐구한다. 나아가 평화와 인권 사상의 윤리교육적 활용가능성을 모색한다.		
수업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글로벌 이슈로서 평화 윤리의 기초를 이해한다. 2.타자와 함께하는 평화의 기초로서 인권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3.인권의 개념과 사상적 토대를 설명할 수 있다. 4.인권사상의 발전과정을 이해한다. 5.타자의 권리를 위한 책임문제를 이해하고 책임윤리를 정립한다. 		
교재 및 참고자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주교재: 세계인권사상사, 미셸린 이샤이, 길, 2008 2.부교재: 글로벌 이슈, M. 스나르&N. 스나르, 명인문화사, 2006 3.부교재: 인권과 국제 정치, 잭 도널리, 오름, 2002 4.참고문헌: 2011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2011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오리엔테이션		
2주	계몽주의 시대와 인권- 종교의 자유와 의사표현의 자유		
3주	계몽주의 시대와 인권-생명권, 사유재산권, 국가와 정당한 전쟁 이론		
4주	계몽주의 시대와 인권-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5주	산업혁명 시대와 인권- 자유주의 인권관에 대한 도전		
6주	산업혁명 시대와 인권-경제적 및 사회적 권리, 교육과 사회적 권리		
7주	세계 대전과 인권- 인권보장의 제도화, 민족자결권		
8주	세계 대전과 인권-인권의 제도화, 누구를 위한 인권인가?		
9주	지구화와 인권-지구화 시대의 인권개념		
10주	지구화와 인권-안보 대 인권, 전지구적 시민권 권리와 인권문제		
11주	21세기와 인권-지구화와 국가		
12주	21세기와 인권-지구화와 시민사회 및 사적 영역		
13주	인권 세계관의 통합-지구화의 쟁점		
14주	인권 세계관의 통합-인권과 인도주의		
15주	종합토론 및 평가		
16주			

인권일반/사회

부산대학교

교과목명	인도주의: 인권과 해외개발원조 (HUMANITARIAN ISM: HUMAN RIGHTS AND OVERSEAS DEVELOPMENT AID)	개설형태	국제 학부/전필/3학점
수업개요	What are human rights? Are there universal rights or only culturally-specific ones? How have human rights been institutionalized? What is the best way to respond to violations? military force, sanctions, diplomacy, law-norms, modeling, shaming? What are the obligation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workers and residents in the Global South? Specific cases and countries will be considered. Regarding the closely-related topic of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what are the key international institutions for Global South development? What techniques have been used to further development (money, technical assistance, multilateral v. bilateral aid, conditionality, etc.)? What is the connection between aid and human rights?		
수업목표	In this course, we will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study human rights. Students will leave the class with a good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theories, along with knowledge of relevant institutions, treaties-norms, and other strategies to promote human rights. We will consider several real-world cases involving human rights. Students will also improve their analytical, debate, research, and writing skills. Because political and economic development is closely related to human rights, we will consider those topics toward the end of the course.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THE FOUNDATIONS: BASIC CONCEPTS AND A BRIEF HISTORY OF HUMAN RIGHTS. THE HUMAN RIGHTS GENERATIONS: POLITICAL-CIVIL TO ECONOMIC-SOCIAL-CULTURAL		
2주	THE FOUNDATIONS CONTINUED		
3주	NON-WESTERN TRADITIONS OF HUMAN RIGHTS		
4주	NON-WESTERN TRADITIONS CONTINUED		
5주	FEMINIST CRITIQUE OF HUMAN RIGHTS		
6주	MORAL RIGHTS FOR NON-HUMANS		
7주	MID-TERM EXAM		
8주	ENFORCEMENT: PART 1 ? THE PERSPECTIVES - UNIVERSALISM V. RELATIVISM		
9주	ENFORCEMENT: PART 2 - INTERNATIONAL AGENCIES		
10주	ENFORCEMENT: PART 3 - STATE ACTIONS		
11주	ENFORCEMENT: PART 4 ? COURTS/ OTHER APPROACHES		
12주	UNDERSTANDING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13주	HUMAN RIGHTS' CONNECTIONS TO ECONOMIC AND POLITICAL DEVELOPMENT		
14주	OVERSEAS DEVELOPMENT AID		
15주	OVERSEAS DEVELOPMENT AID		
16주	FINAL EXAM DAY OFF		

법/범죄

한양대학교

교과목명	국제인권법	개설형태	법학전문대학원 / 전공선택 / 3학점
수업개요	<p>본 과목은 국제인권법 개론 수업으로, 국제인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및 보편적, 지역적 인권기구 체제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이의 국내적 적용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학습한다. 아울러 인접분야인 국제난민법 및 관련 사례를 함께 학습함으로써, 국제화시대, 다문화시대의 변호사로서 국제인권법의 가치 및 국내외적 활용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한다.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국제인권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이의 국내적 및 국제적 활용방안을 학습하며, 영어 텍스트를 가지고 발표 및 토론에 임함으로써 국제인권법의 기본 내용을 한국어는 물론 영어로 체득한다. 또한 교수의 기본 강의와 함께 세미나식 수업을 병행함으로써 본인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 대응하는 방법도 함께 학습한다.</p>		
수업목표			
교재 및 참고자료	Daniel Moecli. International Human. Oxford University Press. Javaid Rehman. International Human. Longman.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강의소개		
2주	국제인권법개론(교재1장포함)		
3주	국제인권법의연원(교재5장)		
4주	국제인권법의무의성격(교재6장)		
5주	국제인권법의적용범위(교재7장)		
6주	국제인권의종류(교재8장)		
7주	보편적인권체제I-UN헌장체제(교재18장1,2,4)		
8주	보편적인권체제II-국제인권조약체제(교재18장5,3,6)		
9주	지역인권체제I-유럽인권체제(교재20장)		
10주	지역인권체제II-미주인권체제(교재19장)		
11주	지역인권체제III-아프리카인권체제(교재21장)		
12주	국제인권법의국내이행(교재22장)/한국에서의국제인권법실행		
13주	국제난민법I(부교재18장1,2,3)/국제난민법II(부교재18장4,5,6)		
14주	사례연구-재외탈북자문제(난민법및인권법적접근)		
15주	기말고사or기말페이퍼		
16주			

법/범죄

창원대학교

교과목명	범죄와 인권	개설형태	법학과 / 일반교양 / 3학점
수업개요	"인권"의 개념을 이해하고 사회현상으로서 범죄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범죄자와 피해자의 인권침해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현대사회 있어 인권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나아가 법학에 대한 기초지식을 함양하고자 한다.		
수업목표			
교재 및 참고자료	<p>교재: 범죄와 인권/이창호, 방상식/경상대학교 출판부/ 2008 법학 개론/ 형법/ 형사소송법</p> <p>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사례집(www.humanrights.go.kr) 대법원 판례집 (www.scourt.go.kr) 국회 전자도서관 학술지 및 정기간행물</p>		
주차별	수업 내용		
1주	인권이란 무엇인가?		
2주	인권의 역사/국제인권법 적용		
3주	범죄란 무엇인가? 범죄성립요건, 처벌조건, 소추조건		
4주	범죄처리절차의 이해(형사절차로서 수사, 공판, 형집행)		
5주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체포, 구속, 압수, 수색)		
6주	사형제도와 인권		
7주	신상공개제도, 위치추적전자장치, 성범죄자 약물치료법과 인권		
8주	중간고사		
9주	범죄피해자의 개념 및 법적지위		
10주	범죄피해자의 인권침해사례분석을 통한 보호 방안 모색		
11주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장		
12주	경찰과 인권(불심검문, 함정수사)		
13주	검찰과 인권(진술거부권, 미란다원칙)		
14주	수형자의 인권(교도소 처우 및 징계)		
15주	보강주		
16주	기말고사		

<부록 2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학생용 설문지>

ID						
----	--	--	--	--	--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학생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대학 및 대학원 등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수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학업과 연구에 바쁘시더라도 대학사회의 인권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본 조사의 질문에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있게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사의 응답자 및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조사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5월

조사담당자: 박병진 박사

연락처: 010-3791-5492

전자메일: eduhr@nhrc.go.kr

『통계법』 제 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I. 인권지식 및 의식/ 태도와 행동/침해 경험

※ 질문을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O 표시를 해주기 바랍니다.

- Q1 1. 귀하는 유엔(UN)이 제정하여 선포한 ‘세계인권선언’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1) 대부분 읽어 보았다 2) 부분적으로 읽어 보았다 3) 전혀 읽어보지 않았다

- Q2 2. 귀하는 한국의 헌법이 인권보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 매우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3) 잘 모르고 있다 4) 전혀 모르고 있다

3. 귀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각각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내용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모르고 있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
Q3-1	1)한국사회의 인권상황				
Q3-2	2)다른 나라나 국제 인권상황				
Q3-3	3)귀 대학의 인권상황				

- Q4 4. 귀하는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권리만을 주장하고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중간이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Q5 5. 귀하는 한국에서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매우 존중된다 2) 어느 정도 존중된다 3) 중간이다
4) 별로 존중되지 않는다 5) 전혀 존중되지 않다 8) 모르겠다

- Q6 6. 귀하는 귀하의 대학에서 인권이 얼마나 존중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1) 매우 존중된다 2) 어느 정도 존중된다 3) 중간이다
4) 별로 존중되지 않는다 5) 전혀 존중되지 않다 8) 모르겠다

7. 다음은 대학생할 중 인권 침해나 차별경험에 대하여 여쭙보겠습니다

(차별이란 특정한 차이를 이유로 불이익이나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귀하는 다음의 각 질문의 내용과 같은 경우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습니까?

	경험 여부	① 전혀 없다	② 한 두 번 정도	③ 세 네 번 정도	④ 다섯 번 이상
Q7-1	1) 가정배경에 따라 교수로부터 다른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Q7-2	2) 성별에 따라 교수로부터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Q7-3	3) 성적에 따라 교수로부터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Q7-4	4) 학생회 간부냐 아니냐에 따라 교수로부터 다르게 대우 받은 적이 있다.				
Q7-5	5) 외모에 따라 교수로부터 다르게 대우받은 적이 있다.				
Q7-6	6) 의견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적이 있다.				
Q7-7	7) 교수나 학교 측에 의견전달을 묵살당한 적이 있다.				
Q7-8	8) 학교 측에서 정한 종교행사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				
Q7-9	9) 동아리 활동에 제약을 받은 적이 있다.				
Q7-10	10) 외부 집회 참여에 제약을 받은 적이 있다.				
Q7-11	11) 개인신상정보를 공개당한 적이 있다.				
Q7-12	12) 교수에게 신체적 폭력(체벌)을 당한 적이 있다.				
Q7-13	13) 교수에게 아이디어나 논문(리포트) 내용을 도용 당한 적이 있다				
Q7-14	14) 교수에게 언어적 폭력(심한 꾸지람 혹은 욕이나 위협적인 언행)을 당한 적이 있다.				
Q7-15	15) 친구나 선·후배에게 신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Q7-16	16) 친구나 선·후배에게 아이디어나 논문(리포트) 내용을 도용당한 적이 있다				
Q7-17	17) 교수에게 사적인 심부름이나 노력 등을 강요받은 적이 있다.				
Q7-18	18)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Q7-19	19)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교수나 동료, 선배로부터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				
Q7-20	20) 교수로부터 성희롱(원치 않는 언어적, 시각적, 신체적 성적 접근)이나 성폭력(동의없는 성관계)을 당한 적이 있다.				
Q7-21	21) 선배나 동료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Q7-22	22) 직원으로부터 신체적 또는 언어적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				

II. 인권교육 경험

Q11 11. 현재 수강하고 있는 과목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인권관련 강의를 과목을 총 몇 과목이나 수강하였습니까?

총 _____ 과목

Q12 12. 본 인권 관련 강좌를 수강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 | | |
|-------------------|------------------------------------|-----------------|
| 1) 필수이기 때문에 | 2) 개인적으로 인권에 관심이 많아서 | 3) 수강신청의 편의 때문에 |
| 4) 선배나 동료의 권유에 의해 | 5) 장래 인권분야의 직업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서 | |
| 6) 교수님의 권고로 | 7 기타 | |

III. 인권 교육내용과 방법

※ 다음의 질문은 현재 수강 중이거나 가장 최근에 수강한 인권관련 강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13. 지금 수강하고 있는 인권과목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포함되는 내용 모두에 O 표시를 해주십시오.**

Q13-1	① 생명권 차별금지	Q13-2	② 자유와 개인의 안보	Q13-3	③ 고문금지
Q13-4	④ 법적구제	Q13-5	⑤ 법 앞의 평등	Q13-6	⑥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Q13-7	⑦ 공평한 재판권	Q13-8	⑧ 무죄추정원칙	Q13-9	⑨ 프라이버시 보호
Q13-10	⑩ 거주, 이전의 자유	Q13-11	⑪ 국적보장	Q13-12	⑫ 결혼 및 가족구성권
Q13-13	⑬ 가족의 보호 및 지원	Q13-14	⑭ 남녀 평등	Q13-15	⑮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Q13-16	⑯ 집회의 자유	Q13-17	⑰ 결사의 자유	Q13-18	⑱ 정부참여권리
Q13-19	⑲ 표현의 자유	Q13-20	⑳ 사회보장권	Q13-21	㉑ 근로3권
Q13-22	㉒ 교육권	Q13-23	㉓ 아동보호	Q13-24	㉔ 난민지위
Q13-25	㉕ 의무교육	Q13-26	㉖ 전쟁포로의 지위	Q13-27	㉗ 민주주의
Q13-28	㉘ 소수자의 권리	Q13-29	㉙ 사형금지	Q13-30	㉚ 생존권
Q13-31	㉛ 장애인의 권리	Q13-32	㉜ 사회적 약자 보호	Q13-33	㉝ 환경권
Q13-34	㉞ 기타()				

Q14 14. 강의 내용 중 인권 관련 내용의 비중은 어떻게 됩니까?
1) 1/4 미만 2) 1/4 ~ 1/2 3) 1/2 ~ 3/4 4) 거의 모두

Q15 15. 강의 내용은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많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6. 인권강의 내용 중 꼭 포함되기 바라는 내용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해당하는 내용 모두에 √ 표시해주시시오.**

Q13-1	① 생명권 차별금지	Q13-2	② 자유와 개인의 안보	Q13-3	③ 고문금지
Q13-4	④ 법적구제	Q13-5	⑤ 법 앞의 평등	Q13-6	⑥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Q13-7	⑦ 공평한 재판권	Q13-8	⑧ 무죄추정원칙	Q13-9	⑨ 프라이버시 보호
Q13-10	⑩ 거주, 이전의 자유	Q13-11	⑪ 국적보장	Q13-12	⑫ 결혼 및 가족구성권
Q13-13	⑬ 가족의 보호 및 지원	Q13-14	⑭ 남녀 평등	Q13-15	⑮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Q13-16	⑯ 집회의 자유	Q13-17	⑰ 결사의 자유	Q13-18	⑱ 정부참여권리
Q13-19	⑲ 표현의 자유	Q13-20	⑳ 사회보장권	Q13-21	㉑ 근로3권
Q13-22	㉒ 교육권	Q13-23	㉓ 아동보호	Q13-24	㉔ 난민지위
Q13-25	㉕ 의무교육	Q13-26	㉖ 전쟁포로의 지위	Q13-27	㉗ 민주주의
Q13-28	㉘ 소수자의 권리	Q13-29	㉙ 사형금지	Q13-30	㉚ 생존권
Q13-31	㉛ 장애인 권리	Q13-32	㉜ 사회적 약자 보호	Q13-33	㉝ 환경권
Q13-34	㉞ 기타()				

17. 강의 방법으로 사용되는(혹은 사용되었던) 것을 모두 고르세요.

Q17-1	1) 강의	Q17-2	2) 관련 동영상 시청	Q17-3	3) 현장학습
Q17-4	4) 팀프로젝트와 발표	Q17-5	5) 세미나식	Q17-6	6) 관련인물초청강의

**18. 인권 관련 강의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은 무엇
입니까?**

Q18	1) 강의	2) 관련 동영상 시청	3) 현장학습
	4) 팀프로젝트와 발표	5) 세미나식	6) 관련인물초청강의

19. 강의를 담당한 교강사는 모두 몇 분입니까?

Q19	1) 1명	2) 2명	3) 3명
	4) 4명	5) 5명	6) 6명 이상

Q20 20. 강의를 담당하는 교강사는 인권내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Q21 21. 인권 강의를 전달하는데 있어 강의 방법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Q22 22. 강의에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23. 강의의 평가방법은 어떠한 형식입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해주세요.

Q23-1	1) 중간/기말고사	Q23-2	2) 개인/팀프로젝트 및 발표	Q23-3	3) 보고서
Q23-4	4) 토론참여	Q23-5	5) 출석	Q23-6	6) 기타

IV. 교육효과

※ 다음의 질문은 현재 수강 중이거나 가장 최근에 수강한 인권관련 강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Q24 24. 인권 강의를 통하여 인권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습니까?
 1) 매우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Q25 25. 인권 강의를 통하여 인권의식이 향상되었다고 보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 Q26 26. 인권 강의를 통하여 보다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27. 인권강의 수강 후에 대학 내에서 또는 대학 밖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모두 골라주십시오.

- Q27-1 1) 인권단체 가입 혹은 활동
 Q27-2 2) 인권관련 서명운동 참여
 Q27-3 3) 인권관련 시위 참여
 Q27-4 4) 인권침해피해자를 위한 모금운동 참여
 Q27-5 5) 소수자나 장애인 등을 위한 직접적 도움주기
 Q27-6 6) 인권개선을 위한 연구에 참여
 Q27-7 7) 인권개선을 위한 법적/정책적 활동에 참여
 Q27-8 8) 기 타

- Q28 28. 대학에서 인권관련 강의가 대학의 인권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 Q29 29. 인권관련 강의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 1) 매우 만족한다 (문30로) 2) 상당히 만족한다 (문30로) 3) 보통이다 (문31으로)
 4) 약간 만족하지 않는다 (문31으로) 5)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문31으로)

- Q30 30. 만족하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으로 보십니까?
- 1) 교강사 2) 강의내용 3) 강의방법
 4) 수업활동 5) 기타 ()

V. 기타, 개선사항

- Q31 31. 인권관련 강좌의 수강 신청은 손쉽게 할 수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 Q32 32. 인권관련 강의를 수강할 계획이 있습니까?
- 1) 매우 그렇다 2) 상당히 그렇다 3) 보통이다
4) 약간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 Q33 33. 대학에서 교양강좌로 인권관련 강의의 수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1) 매우 동의 2) 상당히 동의 3) 반반이다
4) 약간 동의하지 않음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 Q34 34. 대학에서 전공강좌로 인권관련 강의의 수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1) 매우 동의 2) 상당히 동의 3) 반반이다
4) 약간 동의하지 않음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 Q35 35. 대학에서 정규교과 이외에 인권관련 강좌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1) 매우 동의 2) 상당히 동의 3) 반반이다
4) 약간 동의하지 않음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VI.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기본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해당번호에 O 표를 해주시거나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SQ1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남 2) 여

2. 귀하의 국적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대한민국 2) 아시아 3) 아프리카 4) 유럽 5) 북미 6) 중남미 7) 기타

3. 귀하는 몇 년 몇 월 생입니까?
 _____ 년 _____ 월

4. 귀하는 군대를 다녀왔습니까?
 1) 비해당 (여자인 경우) 2) 미필 3) 면제
 4) 현역제대 5) 방위산업체 근무 6) 공익근무나 보충역

5. 귀하는 현재 몇 학년 몇 학기에 재학 중입니까?
 학부 _____ 학년 _____ 학기
 대학원 _____ 학년 _____ 학기

6. 귀하의 전공계열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공학계열 2) 인문계열 3) 사회계열 4) 자연과학계열
 5) 교육/사범계열 6) 예체능계열 7) 의약/간호계열 8) 법학계열
 9) 경영계열 10) 신학계열 11) 예술계열 12) 기타()

7. 귀하의 전공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8. 귀하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1) 개신교 2) 불교 3) 가톨릭 4) 유교
 5) 원불교 6) 천도교 7) 이슬람교 8) 없음
 9) 기타 ()

SQ10 9. 귀하가 다니는 대학은 다음 중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도 9) 강원도 10) 충청북도 11) 충청남도 12) 전라북도
 13) 전라남도 14) 경상북도 15) 경상남도 16) 제주도

SQ10 10. 부모님의 직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1) 농·축·수산·광업 2) 판매·서비스직 3) 생산·기능·노무직
 4) 자영업 5) 사무직 6) 전문·관리·경영직
 7) 주부 8) 공무원/군인 9) 무직·퇴직
 10) 기타()

SQ11 11. 귀하의 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 1) 소득 없음 2) 150만원 미만 3) 150만원-300만원 미만
 4) 300만원-500만원 미만 5) 500만원-1,000만원 미만 6) 1,000만원-1,500만원 미만
 7) 1,500만원 이상 8) 모르겠다

<부록 3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교·강사용 설문지>

1	2	3	4	5	6
---	---	---	---	---	---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교강사용)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대학 및 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의 인권 교과목 강의담당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고자 합니다. 교육과 연구에 바쁘시더라도 대학사회의 인권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본 조사의 질문에 대하여 빠짐없이 솔직하고 성의 있게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설문의 응답자 및 응답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이 조사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조사 담당자에게 이메일이나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4년 5월

조사담당자: 김영중 박사

연락처: 010-8730-0221 전자메일: maxima1@snu.ac.kr

---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립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음은 인권과목 강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내용에 V 표시를 하시거나 직접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Q1 1. 교수님께서 최근 3년 내 인권관련 강의 경험은 몇 회 정도 되십니까?
(한 학기 내 동일 과목 중복 강의 포함)
() 1) 1회 () 2) 2회 () 3) 3회 () 4) 4회 이상

Q2 2. 교수님께서 최근 3년 내에 인권과 관련하여 개설하신 강의는 무엇이며, 인권관련 내용은 몇 주 포함되어 있습니까? 개설하신 강의를 모두 써주세요.

강의명	영역	인권관련 내용 포함 주일수
예) 인권과 국가	교양필수/선택, 진공필수/선택	5주

Q3 3. 교수님께서 최근 3년 내에 하신 인권관련 강의에는 어느 내용이 포함되었습니까? 있는 대로 표시해 주세요.

- () ① 생명권 차별금지 () ② 자유와 개인의 안보 () ③ 고문금지
 () ④ 법적구제 () ⑤ 법 앞의 평등 () ⑥ 국가기관의 인권침해
 () ⑦ 공정한 재판권 () ⑧ 무죄추정원칙 () ⑨ 프라이버시 보호
 () ⑩ 거주, 이전의 자유 () ⑪ 국적보장 () ⑫ 결혼 및 가족구성권
 () ⑬ 가족의 보호 및 지원 () ⑭ 남녀 평등 () ⑮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 | | | |
|------------------------------------|--------------------------------------|-----------------------------------|
| <input type="checkbox"/> ⑯ 집회의 자유 | <input type="checkbox"/> ⑰ 결사의 자유 | <input type="checkbox"/> ⑱ 정부참여권리 |
| <input type="checkbox"/> ⑲ 표현의 자유 | <input type="checkbox"/> ⑳ 사회보장권 | <input type="checkbox"/> ㉑ 근로3권 |
| <input type="checkbox"/> ㉒ 교육권 | <input type="checkbox"/> ㉓ 아동보호 | <input type="checkbox"/> ㉔ 난민지위 |
| <input type="checkbox"/> ㉕ 의무교육 | <input type="checkbox"/> ㉖ 전쟁포로의 지위 | <input type="checkbox"/> ㉗ 민주주의 |
| <input type="checkbox"/> ㉘ 소수자의 권리 | <input type="checkbox"/> ㉙ 사형금지 | <input type="checkbox"/> ㉚ 생존권 |
| <input type="checkbox"/> ㉛ 장애인의 권리 | <input type="checkbox"/> ㉜ 사회적 약자 보호 | <input type="checkbox"/> ㉝ 환경권 |
| <input type="checkbox"/> ㉞ 기타 () | | |

Q4 4. 교수님께서서는 인권관련 과목 강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있는 대로 답해 주세요.

- 1) 강의 2) 관련 동영상 시청 3) 현장학습
 4) 팀프로젝트와 발표 5) 세미나식 6) 관련인물초청강의
 7) 다른 방법이 있으시면 자세히 써주세요.
 ()

Q5 5. 교수님께서서는 인권관련 강의에 어떤 교재를 활용하십니까? 있는 대로
써 주십시오.

- 1) 저서및 논문 2) 정부자료 3) 국가인권위원회자료 4) 시민단체 자료
 5) 신문및 방송자료 6) 영화및 다큐멘터리 7) 소설등 문학작품
 8) 위에서 열거한 것 외의 자료가 있으시면 자세히 써주세요.
 ()

Q6 6. 교수님께서 인권관련 과목에서 주로 활용하신 문헌이나 자료명을 적어주십시오

Q7 7. 인권관련 과목의 평가는 어떠한 방식을 사용하셨습니까? 해당하는 모든
항목에 표시해주십시오.

- 1) 중간/기말고사 2) 개인/팀프로젝트 및 발표 3) 연구보고서
 4) 적극적 토론참여 5) 출석 6) 기타

sQ5

6. 현재 교수님께서 근무/강의하시는 학교는 어디에 소재하고 있나요?

- () 1) 서울 () 2) 부산 () 3) 대구 () 4) 인천
() 5) 광주 () 6) 대전 () 7) 울산 () 8) 경기도
() 9) 강원도 () 10) 충청북도 () 11) 충청남도 () 12) 전라북도
() 13) 전라남도 () 14) 경상북도 () 15) 경상남도 () 16) 제주도

설문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

인쇄일 / 2014년 10월 13일

발행일 / 2014년 10월 22일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주 소 / 100-842 서울시 중구 무교로 6 금세기 빌딩

<http://www.humanrights.go.kr>

전 화 / 인권교육기획과 02)2125-9700

F A X / 02)2125-9718

ISBN 978-89-6114-362-2 93370 비매품